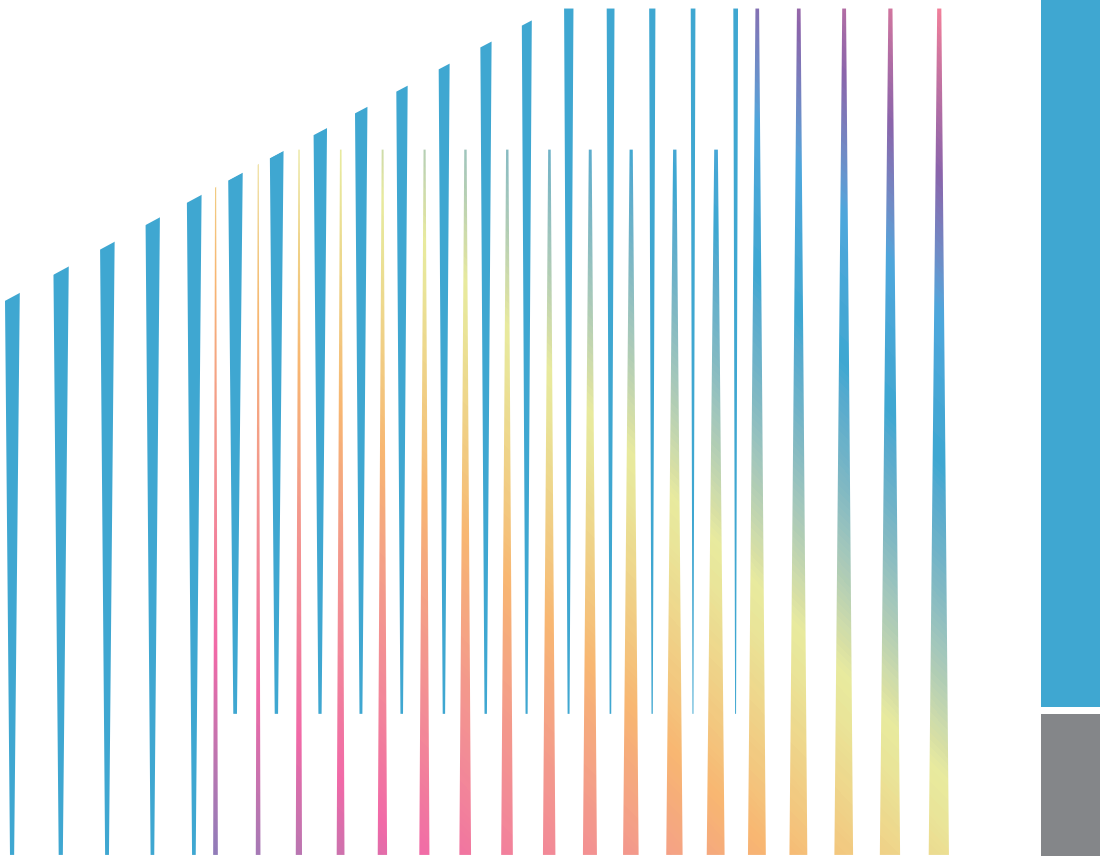


수시연구과제 2023-04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오종현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2023. 12.

오종현

서 언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는 큰 위기와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4차례,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2020~2022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그 횟수와 규모 면에서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2021년 이후 편성된 본예산의 규모보다 커졌고,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2020년 이후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과거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는 현재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본원이 공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19~2021년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제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도 포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제도들을 반영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을 추정하는 방법론에서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을 수정·발전시켰다.

「재정패널조사」는 표본조사이며 또한 많은 부분이 회상에 의한 응답에 기초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만약 소득, 자산, 복지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자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기초한 소비지출 자료 등으로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보완되거나, 이러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같은 수혜·부담 분석은 양질의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향후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종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먼저 본 연구의 착수 단계부터 최종 출판 단계까지 많은 검토와 조언을 주신 권성오, 권성준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동료 박사들과 외부의 여러 교수 및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린다. 최종 출판 단계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자료 수집, 정리, 분석 등에 도움을 주신 김신정, 김유현 선임연구원과 김영직, 오은혜, 임연빈 연구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 밖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나 입장이 아닌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공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가계에 귀착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한다. 재정수혜에서 조세부담을 차감한 순수혜를 소득분위별로 비교하고, 소득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소득분배 지표를 추정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 정책에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이 포함된다. 조세부담에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자동차, 유류, 주류, 담배에 대한 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수혜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이전 정책도 포함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가계와 직접 관련된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의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그 이후인 2020~2021년을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포괄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2019~2021년에 대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2020년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큰 규모의 조

세·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조세·재정정책이 가계의 소득에 미친 영향을 2019년과 2020년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가계에 귀착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는 방법에서도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많은 제도들로 인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관측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가 포괄하는 제도 중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은 자료를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방법론을 수정·발전시켰다. 특히 본 연구의 기초자료인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은 자료나 제도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추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박명호·정재호(2014), 오중현 외(2017)의 방법론을 따랐다. 하지만 산업연관표의 상품별 유효세율을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지출항목별 유효세율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는 상품별로 민간소비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상 상품별 민간소비지출 금액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상 상품별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앞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영세율 제도를 가능한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의료서비스 혜택을 추정하는 방법 또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정치하게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인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 오중현·김우현·권성오(2019)는 개별 가계의 의료서비스 추정 시 가계 구성원의 성별과 연령대만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혜택을 추정하였다. 한편 오중현 외(2017)도 의료서비스 혜택을 추정하였는데, 앞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가계 구성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는 대신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개별 가구의 의료비 지출 금액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오중현 외(2017)와 같이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의료비 지출 자료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 오중현·김우현·권성오(2019)와 같이 가계 구성원의 인적 특성도 반영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추정하였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개별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는 것이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가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재정정책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조세부담 중 소득세, 재산세 등의 직접세와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재정수혜 중에서는 국민연금급여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급여에 대한 정보는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보고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와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정보와 각 제도의 내용, 그리고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개별 가계에 대해 추정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이용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소득분위별로 평균적인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그리고 재정수혜에서 조세부담을 차감한 순수혜 규모를 비교한다. 그리고 제도의 반영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의 소득을 정의하여 각 소득의 분배지표를 비교한다. 가령 민간소득에 공적연금소득과 복지급여를 더하고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한 소득을 처분가능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만약 민간소득과 비교해 처분가능소득의 분배지표가 개선된다면 두 소득의 차이를 유발하는 조세·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 분배지표로는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수, 10분위 배수를 고려한다.

4.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

분석 대상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소득분위별 순수혜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와 순수혜 규모는 뚜렷한 역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모든 분석 대상 기간에서 소득 1~5분위는 순수혜 집단이고 소득 7~10분위는 순부담 집단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9분위와 10분위 간의 순부담 격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6분위 계층은 2019년에는 순부담 집단으로 나타났지만 2020~2021년에는 순수혜 집단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소득 6분위 계층의 순부담 또는 순수혜 규모는 크지 않았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수혜가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반면, 총부담은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조세부담보다 재정수혜에 포함된 제도들 중 교육서비스와 같이 정책 대상 선별에 있어 소득이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아니거나 소득의 반영 정도가 약한 제도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가계는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2019년에는 순부담하였지만 2020~2021년에는 순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혜, 부담 등을 2020년 소비자물가수준으로 실질화하고 가구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균등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의 순부담 규모는 56만원 정도였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만원과 23만원을 순수혜하였다. 이는 2019년에 없던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이 2020년과 2021년에 가계에 지급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과 2021년에 가계에 지급된 평균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은 각각 61만원과 51만원 정도였다.

2019년과 비교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1년의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수, 10분위 배수로 살펴본 모든 분배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대체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후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과 최종소득의 분배지표 개선 정도가 2019년과 비교해 2020~2021년에 더 커졌다. 이 또한 본 연구가 검토한 모든 소득 분배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처분가능소득과 최종소득의 절대적인 소득 분배지표 수준은 2019년보다 2020~2021년에 악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제도들 중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교육·보육서비스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분배지표 중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이용해 분석할 때 교육·보육서비스의 효과가 크게 측정되었다. 반면 5분위 배수와 10분

위 배수를 이용해 제도별 소득 분배지표 개선 효과를 측정하면 노인지원 복지급여(기초연금)와 의료서비스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와 소득 분배지표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분배지표 산출 시 지니계수는 전체 소득분포의 정보를 이용한다. 하지만 10분위 분배율은 소득분포 중 중간에 위치한 40%의 소득변화 정보를 반영하지 않으며, 5분위 배수와 10분위 배수 또한 각각 소득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60%와 80% 계층의 소득변화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위소득 계층의 소득변화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지니계수를 크게 개선시키지만, 소득분포의 양 끝단에 위치한 계층의 소득변화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들은 지니계수보다는 10분위 배수를 크게 개선시킨다. 교육·보육서비스는 대체로 영유아 또는 취학 자녀가 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제도로 해당 계층은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 해당한다. 반면 노인지원 복지급여의 수혜 대상은 노인이며 의료서비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의 이용 비중이 높는데, 은퇴 연령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에 분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로 측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10분위 배수로 측정하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초연금보다는 작지만 다른 현금성 복지급여보다는 대체로 크게 추정되었다. 다만 이 또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10분위 배수로 측정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보다 코로나19 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는 최저소득층에 지급된 반면 코로나19 지원금은 상당부분 넓은 소득계층에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제도들도 있다. 간접세인 소비세제와 직접세 중 재산세제이다. 소비세제와 재산세제의 과세기반은 소득이 아닌 각각 소비와 재산이다. 소비세는 비례세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소득에 역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재산 또한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은퇴연령계층의 경우 현재의 소득수준은 낮지만 과거의 소득으로 축적한 재산수준은 높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세제와 재산세제가 소득에 역진적이라도 해당 세제의 주된 목적이 소득재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세제와 재산세제를 직접적으

로 소득에 누진적이도록 개편하기보다는 복지제도 등 다른 제도들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다만 「재정패널조사」는 표본조사이며 또한 많은 부분이 회상에 의한 응답에 기초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만약 소득, 자산, 복지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자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기초한 소비지출 자료 등으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보완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같은 수혜·부담 분석은 양질의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향후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II. 선행연구	8
1. 국내 연구	8
가. 「가계동향조사」 기반 수혜·부담 분석	8
나. 「재정패널조사」 기반 수혜·부담 분석	10
다. 현물이전 추정	13
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	14
2. 해외 연구	15
가. 영국 통계청	15
나. 영국 재무부	16
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8
라. OECD	18
III.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관	20
1. 모형의 특징	20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22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25
IV.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추정	27
1. 간접세	27
가. 부가가치세	27
나.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	47
다. 주류에 대한 소비세	50
라.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53
마.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세	53

2. 사회적 현물이전	55
가. 교육·보육서비스	55
나. 의료서비스	58
다. 주거서비스	66
V. 수혜·부담 추정 결과	88
1.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88
2. 자료의 균등화 및 실질화	92
3.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92
가. 순수혜	92
나. 조세부담	101
다. 재정수혜	112
4. 단계별 소득	123
5. 소득 분배지표	132
6. 제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138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44
참고문헌	147

표목차

〈표 Ⅲ-1〉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26
〈표 Ⅳ-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품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33
〈표 Ⅳ-2〉 「재정패널조사」 지출항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44
〈표 Ⅳ-3〉 에너지 소비자가격	48
〈표 Ⅳ-4〉 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 소비	49
〈표 Ⅳ-5〉 유종별 유류세율 변화	49
〈표 Ⅳ-6〉 「산업연관표」의 주종별 유통마진율	51
〈표 Ⅳ-7〉 탁주와 맥주의 소비자가격	51
〈표 Ⅳ-8〉 「재정패널조사」 주류 소비지출금액 분해 비율	52
〈표 Ⅳ-9〉 주종별 주세율 변화	52
〈표 Ⅳ-10〉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53
〈표 Ⅳ-11〉 「산업연관표」의 자동차 유통마진율	54
〈표 Ⅳ-12〉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	55
〈표 Ⅳ-13〉 교육단계별·지역별 1인당 교육수혜 금액	57
〈표 Ⅳ-14〉 성별·연령대별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59
〈표 Ⅳ-15〉 성별·연령대별 건강보험보장률	62
〈표 Ⅳ-16〉 성별·연령대별 1인당 의료비지출액	63
〈표 Ⅳ-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인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5
〈표 Ⅳ-18〉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아파트)	68
〈표 Ⅳ-19〉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연립다세대)	69
〈표 Ⅳ-20〉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단독)	70
〈표 Ⅳ-21〉 임대료 결정모형 추정 결과(2019년)	72
〈표 Ⅳ-22〉 임대료 결정모형 추정 결과(2020년)	74
〈표 Ⅳ-23〉 임대료 결정모형 추정 결과(2021년)	76
〈표 Ⅳ-2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 및 편익 추정 결과의 기초통계량(2019년)	81

〈표 IV-25〉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 및 편익 추정 결과의 기초통계량(2020년)	82
〈표 IV-26〉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 및 편익 추정 결과의 기초통계량(2021년)	83
〈표 IV-27〉 「주거실태조사」와 「재정패널조사」 연결을 위한 주요 변수 비교	85
〈표 IV-28〉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및 민간 대비 공공임대료 비중 추정	86
〈표 V-1〉 분석대상 표본 수	89
〈표 V-2〉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91
〈표 V-3〉 소비자물가지수	92
〈표 V-4〉 소득분위별 소득, 수혜, 부담 금액(2019년)	96
〈표 V-5〉 소득분위별 소득, 수혜, 부담 금액(2020년)	97
〈표 V-6〉 소득분위별 소득, 수혜, 부담 금액(2021년)	98
〈표 V-7〉 연도별·소득분위별 순수혜 금액 비교	100
〈표 V-8〉 연도별·소득분위별 직접세	103
〈표 V-9〉 연도별·소득분위별 사회보장기여금	107
〈표 V-10〉 연도별·소득분위별 간접세	111
〈표 V-11〉 연도별·소득분위별 공적연금소득	114
〈표 V-12〉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 외 복지급여	117
〈표 V-13〉 연도별·소득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121
〈표 V-14〉 연도별·소득분위별 시장소득	124
〈표 V-15〉 연도별·소득분위별 민간소득	125
〈표 V-16〉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후소득	126
〈표 V-17〉 연도별·소득분위별 총소득	128
〈표 V-18〉 연도별·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129
〈표 V-19〉 연도별·소득분위별 세후소득	130
〈표 V-20〉 연도별·소득분위별 최종소득	131
〈표 V-21〉 연도별·소득단계별 지니계수	134
〈표 V-22〉 연도별·소득단계별 10분위 분배율	135
〈표 V-23〉 연도별·소득단계별 5분위 배수	136
〈표 V-24〉 연도별·소득단계별 10분위 배수	137
〈표 V-25〉 제도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	140

〈표 V-26〉 제도별 10분위 분배율 변화 효과	141
〈표 V-27〉 제도별 5분위 배수 변화 효과	142
〈표 V-28〉 제도별 10분위 배수 변화 효과	143

그림목차

[그림 Ⅰ-1]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2
[그림 Ⅰ-2] 민간소비의 형태별 구성의 최근 변화	3
[그림 Ⅰ-3] 주요 경제·사회 변수의 최근 변화	4
[그림 Ⅱ-1] 성명재·박기백(2008)의 수혜·부담 분석	9
[그림 Ⅱ-2]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의 수혜·부담 분석	10
[그림 Ⅱ-3] 오종현 외(2017)의 수혜·부담 분석	11
[그림 Ⅱ-4] 박연서 외(2022)의 수혜·부담 분석	12
[그림 Ⅱ-5] 영국 통계청의 소득계층별 수혜·부담 분석	15
[그림 Ⅱ-6] 영국 통계청의 연령대별 수혜·부담 분석	16
[그림 Ⅱ-7] 영국 재무부의 수혜·부담 분석	17
[그림 Ⅱ-8] 영국 재무부의 재정정책 효과 분석	17
[그림 Ⅱ-9] 유럽 집행위원회의 수혜·부담 분석	18
[그림 Ⅱ-10] OECD TaxBEN 모형의 한국에 대한 분석 예시	19
[그림 Ⅲ-1] 단계별 소득과 조세·재정정책과의 관계	23
[그림 Ⅳ-1]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2019년)	78
[그림 Ⅳ-2]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2020년)	79
[그림 Ⅳ-3]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2021년)	80
[그림 Ⅴ-1]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및 순수혜(2019년)	94
[그림 Ⅴ-2]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및 순수혜(2020년)	94
[그림 Ⅴ-3]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및 순수혜(2021년)	95
[그림 Ⅴ-4] 연도별·소득분위별 순수혜 금액 비교	100
[그림 Ⅴ-5] 연도별·소득분위별 직접세 세부 항목 금액	102

[그림 V-6] 연도별·소득분위별 직접세 세부 항목 비중	102
[그림 V-7] 연도별·소득분위별 사회보장기여금 세부 항목 금액	106
[그림 V-8] 연도별·소득분위별 사회보장기여금 세부 항목 비중	106
[그림 V-9] 연도별·소득분위별 간접세 세부 항목 금액	110
[그림 V-10] 연도별·소득분위별 간접세 세부 항목 비중	110
[그림 V-11] 연도별·소득분위별 공적연금소득 세부 항목 금액	113
[그림 V-12] 연도별·소득분위별 공적연금소득 세부 항목 비중	113
[그림 V-13]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 외 복지급여 세부 항목 금액	116
[그림 V-14]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 외 복지급여 세부 항목 비중	116
[그림 V-15] 연도별·소득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세부 항목 금액	120
[그림 V-16] 연도별·소득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세부 항목 비중	121
[그림 V-17] 연도별·소득분위별 시장소득	124
[그림 V-18] 연도별·소득분위별 민간소득	125
[그림 V-19]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후소득	126
[그림 V-20] 연도별·소득분위별 총소득	127
[그림 V-21] 연도별·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129
[그림 V-22] 연도별·소득분위별 세후소득	130
[그림 V-23] 연도별·소득분위별 최종소득	131
[그림 V-24] 연도별·소득단계별 지니계수	134
[그림 V-25] 연도별·소득단계별 10분위 분배율	135
[그림 V-26] 연도별·소득단계별 5분위 배수	136
[그림 V-27] 연도별·소득단계별 10분위 배수	137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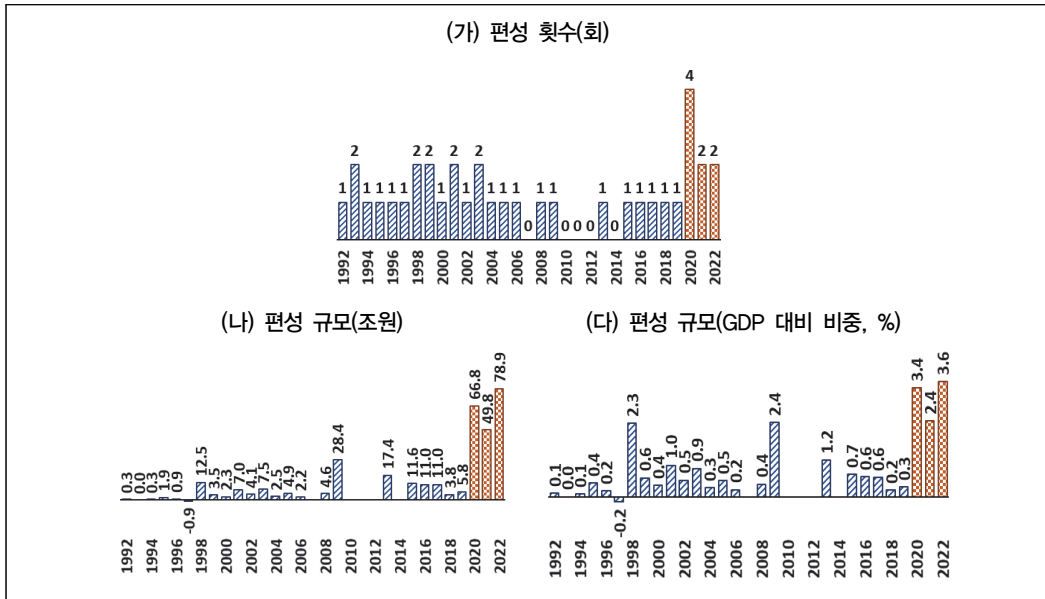
2020년 초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세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도 그중 하나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쳤다. 한국도 2020년에만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중앙정부 예산 기준 총 66.8조원에 달했다. 그간 연간 1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빈번하고,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e-나라지표의 통계로 확인되는 1992년 이후 기간만 살펴보면,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약 30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20년 이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 횟수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과거와 다르다. 2020~2022년 3년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95.5조원으로 1992~2019년 28년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인 142.6조원보다 컸다. 물론 지난 30여 년간 경제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2020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GDP의 3.4%로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의 2.3%와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의 2.4%보다도 약 1%p가량 높았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3년간 지속되었다는 점도 유례가 없었다. 2020~2022년 3년간 편성된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우리나라 1년 GDP의 약 9.5% 수준인데, 이는 두 번의 경제위기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1998~2009년 12년간의 연간 GDP 대비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인 9.4%와 유사한 수준이다.¹⁾

이처럼 2020년 이후 재정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이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2020년 모든 국민이 그리고 2021년 80%의 국민이 지급 대상이었던 재난지원금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가계의 재정수혜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 현금이전 정책이다.

1) 각 연도의 GDP 대비 추가경정예산 비중을 해당 기간 동안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1-1]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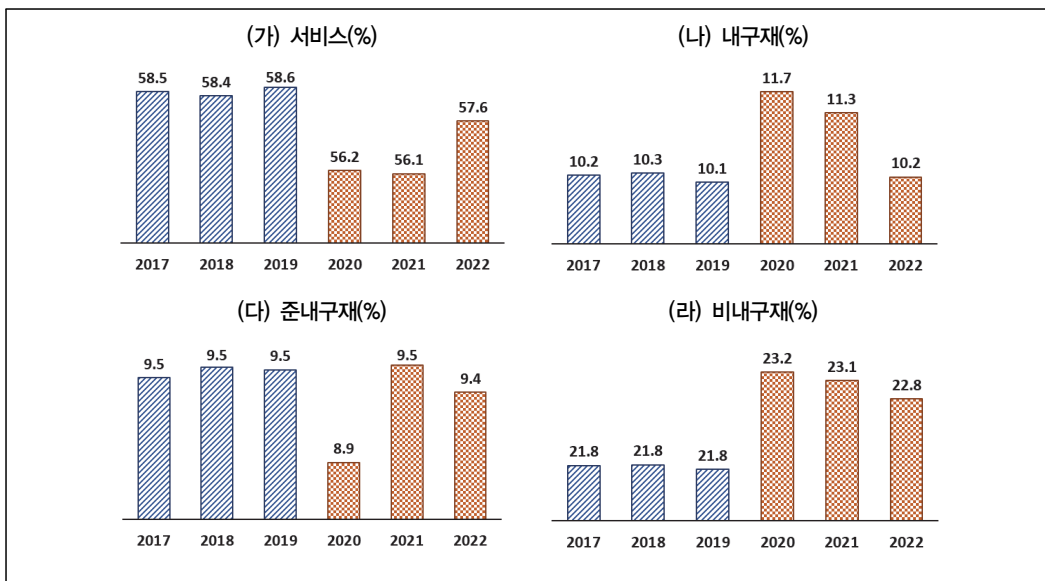
자료: 다음 자료들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e-나라지표, 「추경편성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6, 검색일자: 2023. 10. 10.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2.1.2.2.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코로나19의 확산은 재정정책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행태와 시장의 변화 등을 통해 가계의 재정수혜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자발적·정책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소비를 줄이고 대신 비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소비행태를 변화시켰다. [그림 1-2]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민간소비지출에서 서비스 소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의 비중이 증가한 모습이 관찰된다. 소비행태의 변화는 부가가치세와 각종 소비세의 가계에 대한 귀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자의 급증으로 전 세계의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제 공급망의 병목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국제 교역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3]의 (가)와 (나)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에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감소한 반면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가계의 시장소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영향이 소득수준별로 비대칭적이었다면, 2020년 이후 시장소득의 분포,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가 변하였을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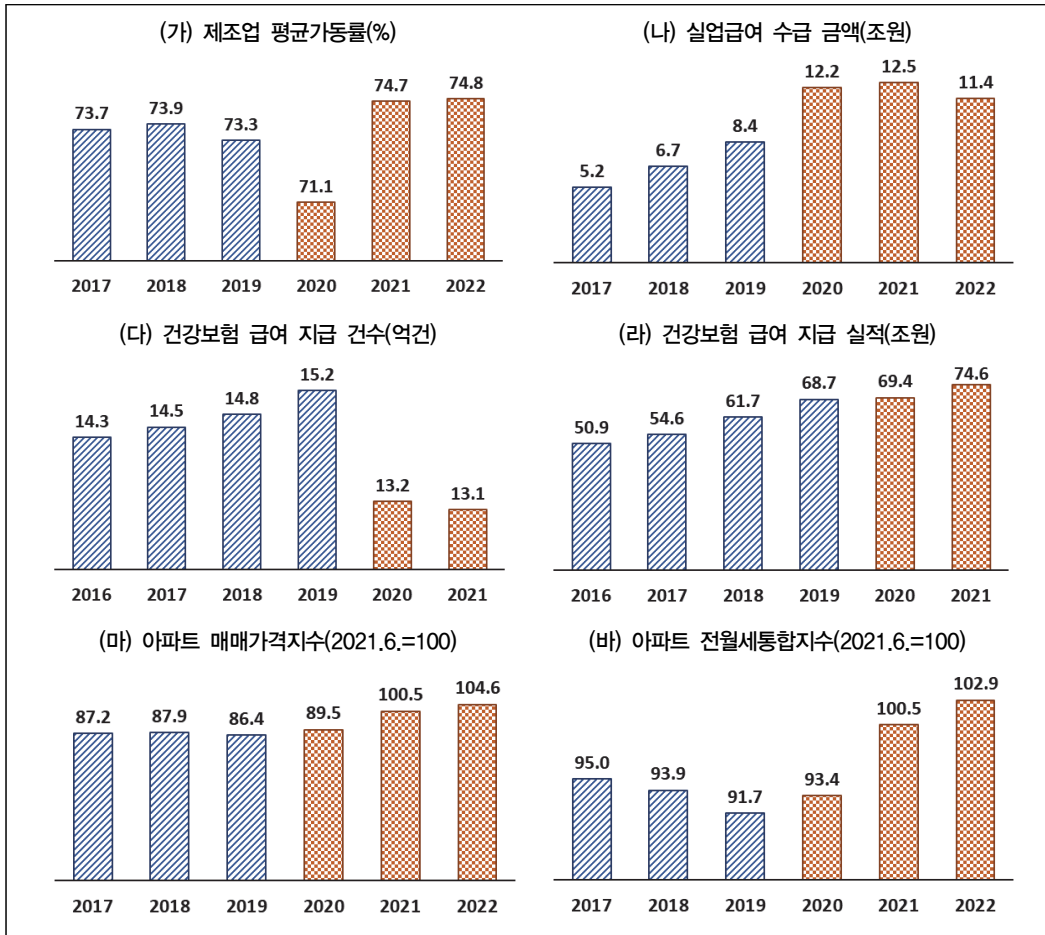
다. 소득분포의 변화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대규모의 예산 투입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2020년 이후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역활동 등으로 2020년 이후 경제주체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도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3]의 (다)와 (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보험 지급 건수가 2020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건강보험 지급 금액의 증가 추세가 2020년에는 주춤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가계에 귀착되는 의료서비스로 인한 재정수해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이후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였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주택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진다. 주택 임대료의 증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에 영향을 미쳐 주거서비스에 대한 재정수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 임대료의 급등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통해 조세·재정정책이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2] 민간소비의 형태별 구성의 최근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1.7.2.3.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그림 1-3] 주요 경제·사회 변수의 최근 변화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월세통합지수는 각 연도의 월평균

자료: 다음 자료들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34&conn_path=2, 검색일자: 2023. 10. 10.
2.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뷰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동향,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통합지수,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 검색일자: 2023. 4. 23.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8.3.7. 제조업 평균가동률」,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8.6.9. 실업급여수급실적」,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본 연구는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으로 가계에 귀착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한다. 분석 대상 정책에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이 포함된다. 조세부담에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

용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자동차, 유류, 주류, 담배에 대한 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수혜로는 앞에서 언급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그리고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이전 정책이 포함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가계와 직접 관련된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의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그 이후인 2020~2021년을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기 위해 미시자료에 기반을 둔 수혜·부담(Tax-Benefit) 분석 모형을 활용한다.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는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오종현 외(2017), 박연서 외(2022) 등이 있다.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과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은 「가계조사」(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기반을 둔 모형을 구축하였고, 오종현 외(2017)와 박연서 외(2022)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모형을 구축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 및 계산한 뒤 소득분위별로 순수혜 규모를 비교한다. 또한 각 제도로 인한 지니계수 등 소득 분배지표의 개선 정도를 추정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의 방법을 따르지만, 일부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의 추정 방법을 본 연구에 맞춰 수정 및 발전시킨다. 가령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 사회적 현물이전은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아 자료에서 관찰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야 하는데, 그 추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현물이전의 규모를 추정하지만 두 선행연구 모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재정패널조사」의 특성에 맞추어 방법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재정패널조사」는 의료비 지출,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도 존재하여 의료서비스 혜택 추정 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분석 범위를 건강보험 지원금과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까지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가지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또한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자료를 이용해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 방법 등 소비세 추정 방법을 재검토한다. 한편 저자가 아는 범위에서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 중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다. 최근의 연구인 박연서 외(2022)는 단년도 자료로 2019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19~2022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 기간 측면에서도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기준이 되는 분석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13~15차 연도 자료이다. 「재정패널조사」는 1년을 주기로 매년 조사되는 자료로 특정 해의 경제활동에 대해 그다음 연도에 조사를 진행하고, 그 후 다시 1년간의 추가적인 자료 정제(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13~15차 연도 자료는 2019~2021년의 경제활동에 대해 2020~2022년에 조사한 자료로 현재 14차 연도 자료까지는 일반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2021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인 15차 연도 자료는 2022년에 조사를 완료하였지만, 2023년에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에 공개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5차 연도 자료의 경우 2023년 5월까지 정제 작업을 진행한, 중간 정제된(베타버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²⁾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대한 기간으로 2019년만 분석에 포함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2019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인 13차 연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 표본을 확대하였다. 12차 연도 조사까지는 약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13차 연도 조사부터는 약 4,000가구의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연도의 대표성이 확보된 반복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하지만 표본 확대 이전인 12차 연도 이전 자료의 경우 패널의 노후화로 횡단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횡단면에 대한 대표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일반에 완전히 공개하기 전 약 1년간의 자료 정제 과정에서 사용자들과의 환류과정을 거치기 위해 4~5월경까지 중간 정제된 자료를 매년 개최하는 재정패널 학술대회 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

성이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13차 연도 조사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2019년 표본과 2020~2021년 표본의 조사 대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2021년에 대한 비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당초 13차 연도에 구축된 신규표본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도에 13차 연도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급변한 조사환경 등의 요인으로 신규패널 구성에 편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4차 연도에는 13차 연도에 구축된 신규표본을 추적조사하는 대신 신규표본을 재구축하였고, 14차 연도에 구축된 신규표본에 대해 15차 연도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2019년 표본과 2020~2021년 표본의 조사 대상이 일부 다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패널분석이 아닌 반복 횡단면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패널의 단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연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하면 반복 횡단면자료가 각 연도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한다.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다.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가 이용하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의 개관에 대해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수혜·부담 분석을 위해 추정이 필요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계산 또는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V장에서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통해 도출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1. 국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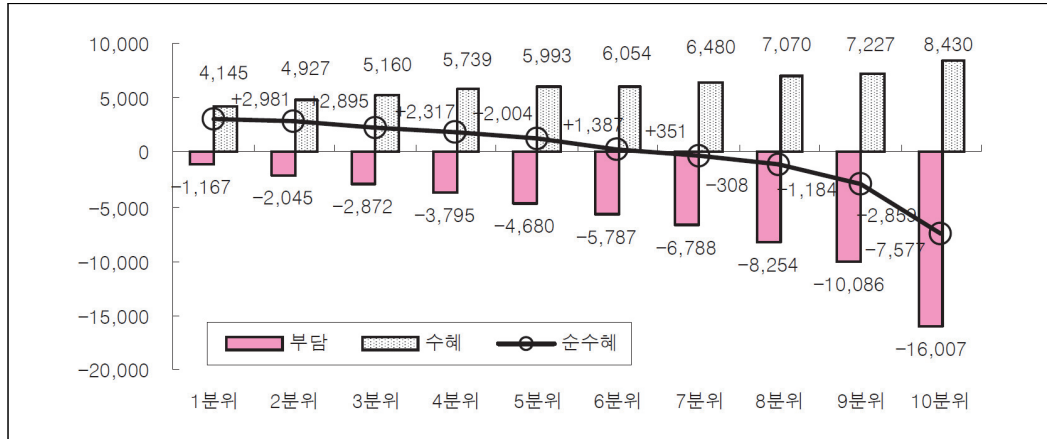
가. 「가계동향조사」 기반 수혜·부담 분석

우리나라에서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연구는 2000년 후반경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혜·부담 분석 연구는 미시자료에 기반을 두는데, 당시의 연구는 주로 통계청의 「가계조사」(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는 당시 「가계조사」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가장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는 미시자료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로는 성명재·박기백(2008),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등이 있다.

성명재·박기백(2008)은 2006년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수혜와 부담, 그리고 순수혜 규모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8)의 연구는 조세·재정정책의 수혜·부담 분석 시 간접세와 현물급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그림 II-1]과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와 부담 규모가 같이 증가하지만 부담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 순수혜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6분위는 수혜가 부담보다 큰 순수혜 계층이고 소득 7~10분위는 부담이 수혜보다 큰 순부담 계층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1] 성명재·박기백(2008)의 수혜·부담 분석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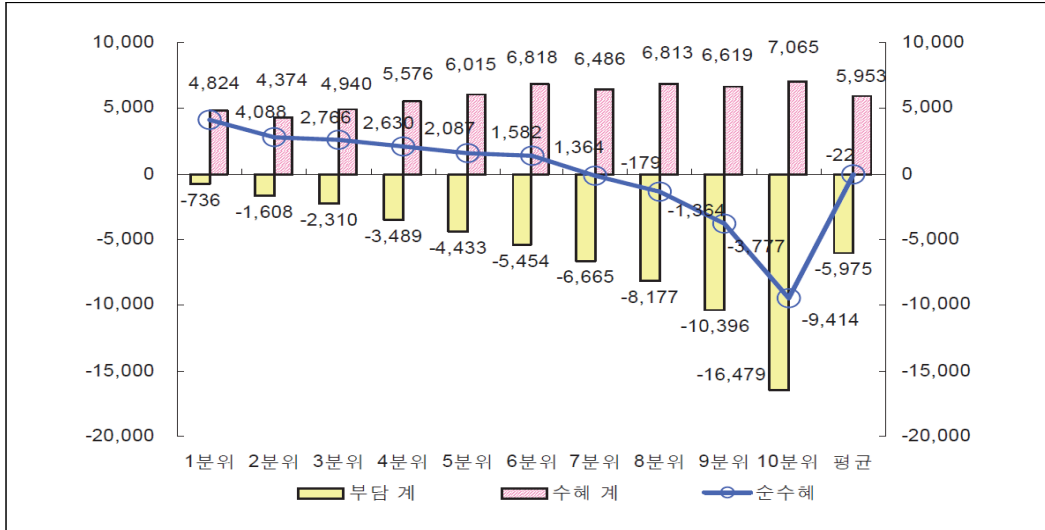


자료: 성명재·박기백(2008), p. 74. [그림 4]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과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은 조세·재정정책의 수혜·부담 분석을 위한 미시모의실험모형을 구축하였다. 미시모의실험모형은 과거에 시행된 제도로 인해 분석 자료에 반영된 현상뿐만 아니라 미래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가상의 정책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은 궁극적으로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의 미시모의실험모형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 모형에 제도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행태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었다.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은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이 구축한 모형의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였다. 소득세제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한계세율이 변할 때 외생적으로 결정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을 통해 노동공급이 변하도록 설계하였고, 소비세율 변화 역시 외생적인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통해 소비지출이 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II-2]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의 수혜·부담 분석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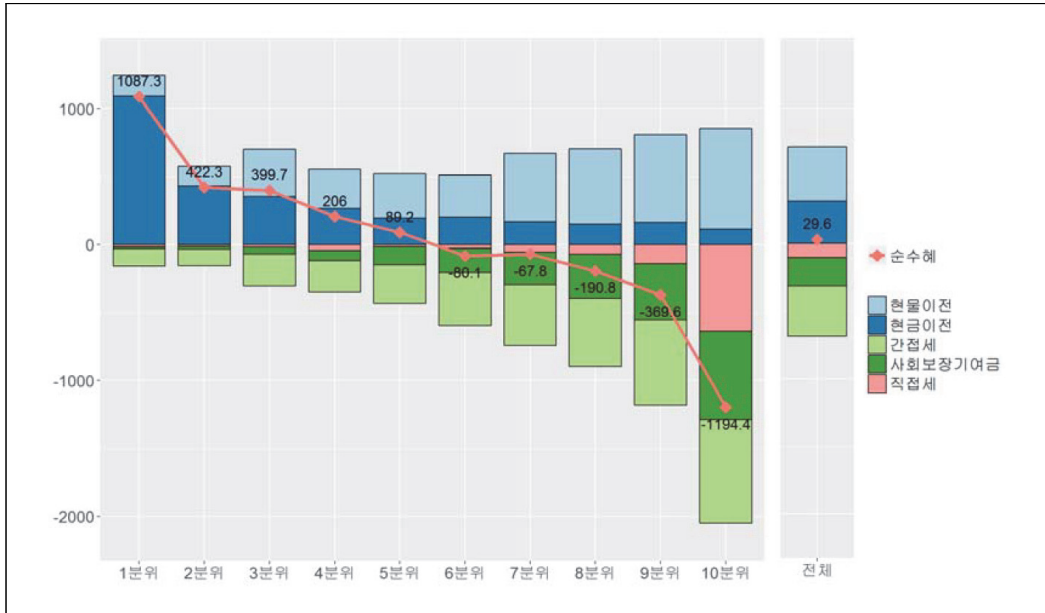
자료: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p. 83, [그림 IV-7]

나. 「재정패널조사」 기반 수혜·부담 분석

앞의 연구들과 달리 오종현 외(2017)는 수혜·부담 분석을 위한 미시자료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1차 조사 자료의 실제 이용은 자료 정제가 완료된 2010년부터 가능했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조세·재정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하는 정보 측면에서 앞의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구 「가계조사」)나 통계청의 다른 가계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다른 미시자료보다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연구에 활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정패널조사」는 소득세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서류와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등 과세 신고자료를 같이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오종현 외(2017)는 2015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인 9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제의 변화에 따른 가계의 노동공급 변화를 외생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림 II-3] 오종현 외(2017)의 수혜·부담 분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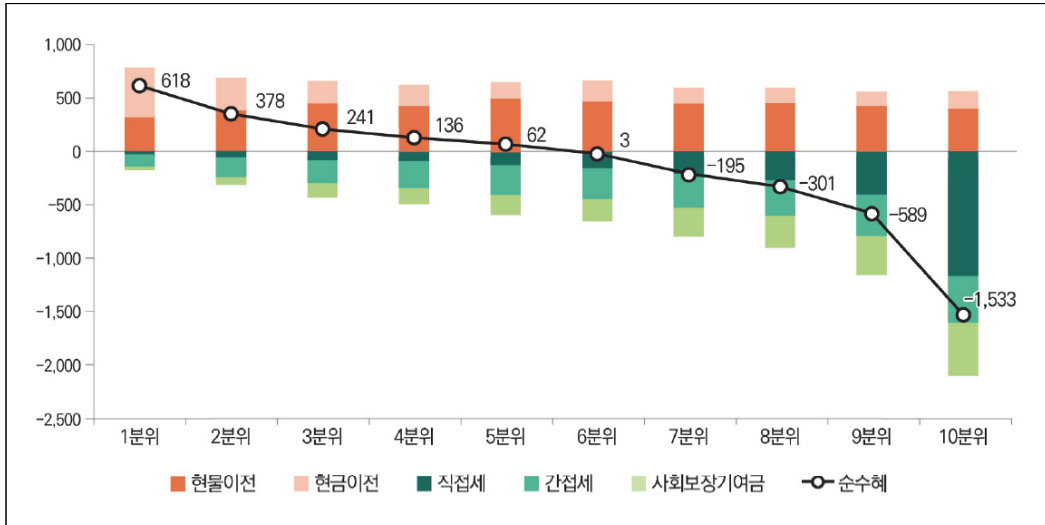


자료: 오종현 외(2017), p. 88, [그림 V-8]

박연서 외(2022)는 이 분야에서 최근에 수행한 연구로 판단된다. 박연서 외(2022) 또한 「재정패널조사」에 기반을 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13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오종현 외(2017)와 비교해 소득세 등 일부 모의실험을 위한 모형을 정치하게 발전시키고,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방법을 개선했다. 다만 박연서 외(2022)의 모형은 제도변화에도 경제주체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정태모형이다.

[그림 11-4] 박연서 외(2022)의 수혜·부담 분석

(단위: 만원)



자료: 박연서 외(2022), p. 162, [그림 17]

본 연구는 오종현 외(2017), 박연서 외(2022)와 마찬가지로 「재정패널조사」에 기반을 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한다. 이 두 연구를 비롯한 앞에서 언급한 다른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은 2019~2021년(13~15차 조사)의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그리고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모두 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포괄적으로 비교한 연구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연서 외(2022)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수혜·부담 분석에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과 오종현 외(2017)는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소비지출의 가격탄력성 등을 별도로 추정하여 그 값들을 모형에 외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었다. 현실적으로 수혜·부담 분석에는 상당히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고 각 제도마다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발하는 방식이 다르며, 동일한 제도라도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 경제주체의 특성에 따라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수혜·

부담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별도의 분석 없이 단순한 방식의 행태변화를 반영할 경우 오히려 분석 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가 변하더라도 경제주체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 현물이전 추정

조세·재정정책의 수혜·부담을 추정하려면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사회적 현물이전의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교육·보육, 의료, 주거 등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로 인한 가계의 편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혜 규모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별도로 추정한 뒤 가계의 특성 정보들을 이용하여 수혜·부담 분석의 기반 자료와 연결해야 한다.

가계에 대한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한 최근의 의미 있는 연구로는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와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가 있다. 두 연구 모두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가계에 대한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였다. 다만 추정에 이용한 별도의 자료에 차이가 있어 그 방법론이 다르다. 특히, 의료와 주거서비스를 추정하는 데 있어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는 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반면,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는 「한국의료패널」과 「주거실태조사」 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 방법은 앞의 선행연구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 다만 두 선행연구 간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의료서비스는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의 방법을 참고하고, 주거서비스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의 방법을 활용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경우 패널 개편으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단절이 발생해 2019~2021년이 분석대상 기간인 본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추정에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와 같이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에 차이점이 있다. 앞의 두 선행연구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분

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서비스로 인한 혜택을 추정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의료비 지출 항목이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항목을 이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재정패널조사」가 제공하는 항목이 없다. 주거서비스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로 인한 편익은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 오종현(2020)의 방법을 「재정패널조사」의 조사항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며, 주거급여를 현물급여에 포함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

간접세 또한 사회적 현물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간접세 중에서도 가계가 소비지출할 때 광범위하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추정이 중요하다. 국내 가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박명호·정재호(2014)와 정재호·정다운(2022)이 있다. 두 연구 모두 가계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한 미시자료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다. 박명호·정재호(2014)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론을 따라 「산업연관표」의 상품 간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해 상품별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추정하고, 이를 「가계동향조사」의 지출항목에 적용해 가계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정재호·정다운(2022)은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를 이용해 기존 박명호·정재호(2014)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박명호·정재호(2014)의 방법론을 이용해 가계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한다. 정재호·정다운(202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세자료를 활용한 경우와 「산업연관표」만을 활용한 경우 상품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과세자료를 활용할 경우 상품별 과면세 여부를 더 상세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방법론으로 추정된 평균적인 유효세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의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비교하는 데에는 박명호·정재호(2014)와 같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부 상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를 변경하는 정책 효과를 분석할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 연구

가. 영국 통계청

영국 정부는 조세·재정정책이 가계의 소득분포에 미친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영국의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은 매년 “Effect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영국 통계청은 수혜·부담 추정을 위한 자료로 HFS(Household Finances Survey)를 이용한다. HFS는 패널 조사인 SLC(Survey of Living Condition)와 횡단면 조사인 LCF(Living Costs and Food)를 결합한 자료로 소득과 지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등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 또한 추정을 통해 분석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수혜·부담을 소득계층별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닌 연령대 등 다른 기준으로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소득계층별로만 비교하는데, 향후 연령대별로 비교하거나 근로연령 계층에 한정된 표본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5] 영국 통계청의 소득계층별 수혜·부담 분석

(단위: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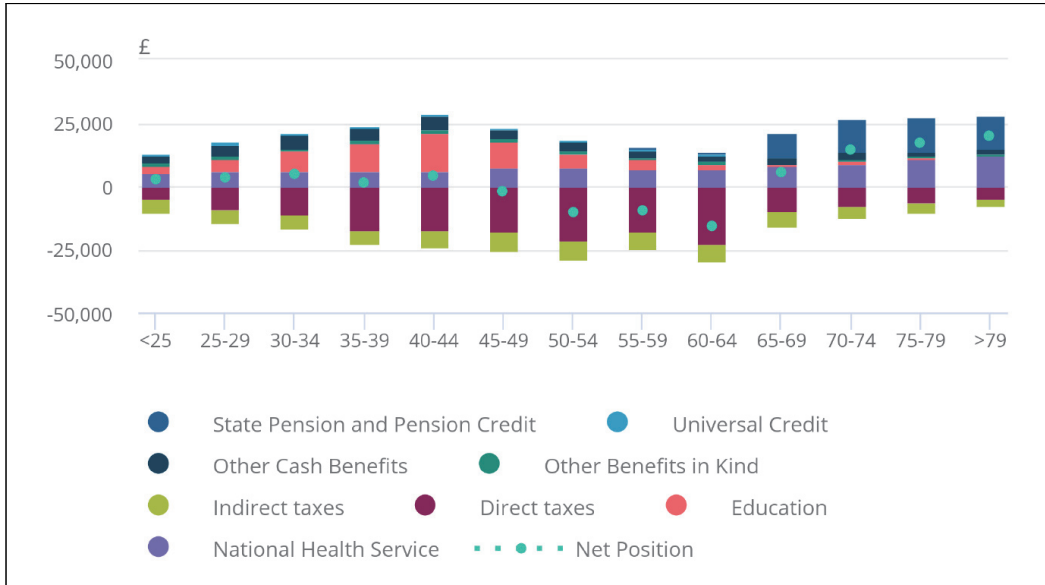


주: 2020-21회계연도 기준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2), p. 6, Figure 5

[그림 II-6] 영국 통계청의 연령대별 수혜·부담 분석

(단위: 파운드)



주: 2020-21회계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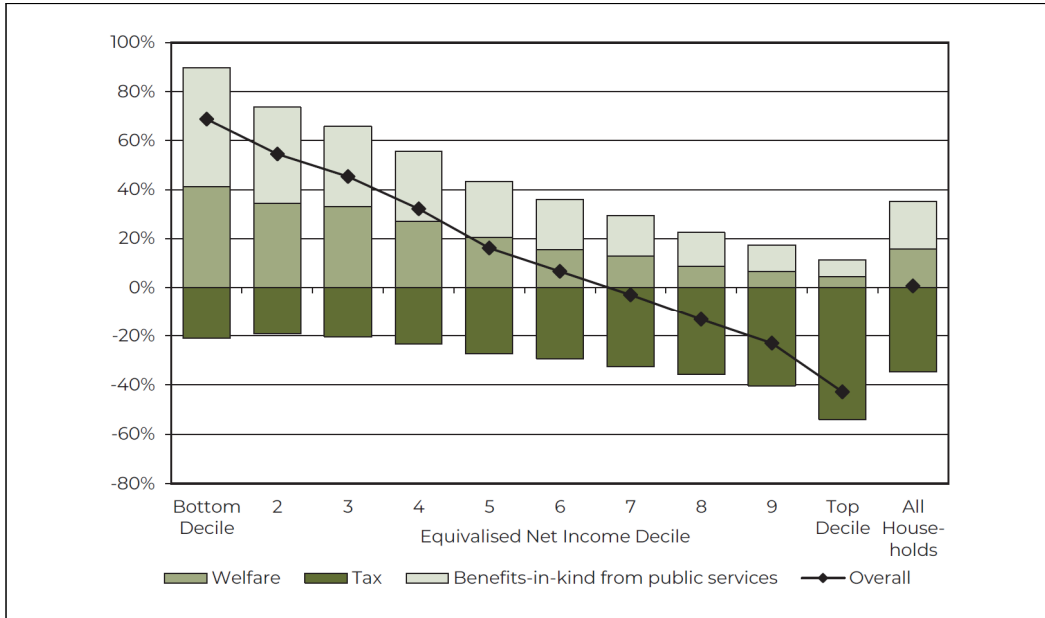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2), p. 8, Figure 7

나. 영국 재무부

영국 재무부는 매년 예산안이 발표되면 새로운 정책이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앞에서 살펴본 영국 통계청의 분석은 지난 회계연도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가계에 실제 귀착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영국 재무부의 분석은 최근 또는 향후 정책으로 인한 미래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Impact on households: distributional analysis to accompany Spring Budget 2023”이 발표되었는데, 예산안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림 II-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한 것이 아닌 다가올 회계연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였다. 또한 [그림 II-8]과 같이 최근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의 변화도 추정하였다.

[그림 II-7] 영국 재무부의 수혜·부담 분석

(단위: 순소득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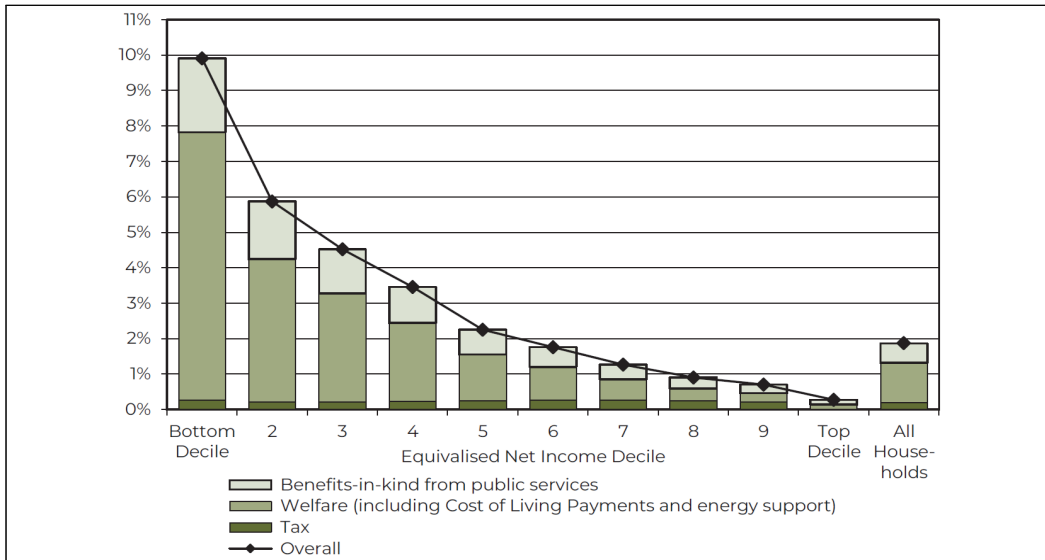


주: 2024-25회계연도 기준

자료: HM Treasury(2023), p. 9, Figure 1.A

[그림 II-8] 영국 재무부의 재정정책 효과 분석

(단위: 순소득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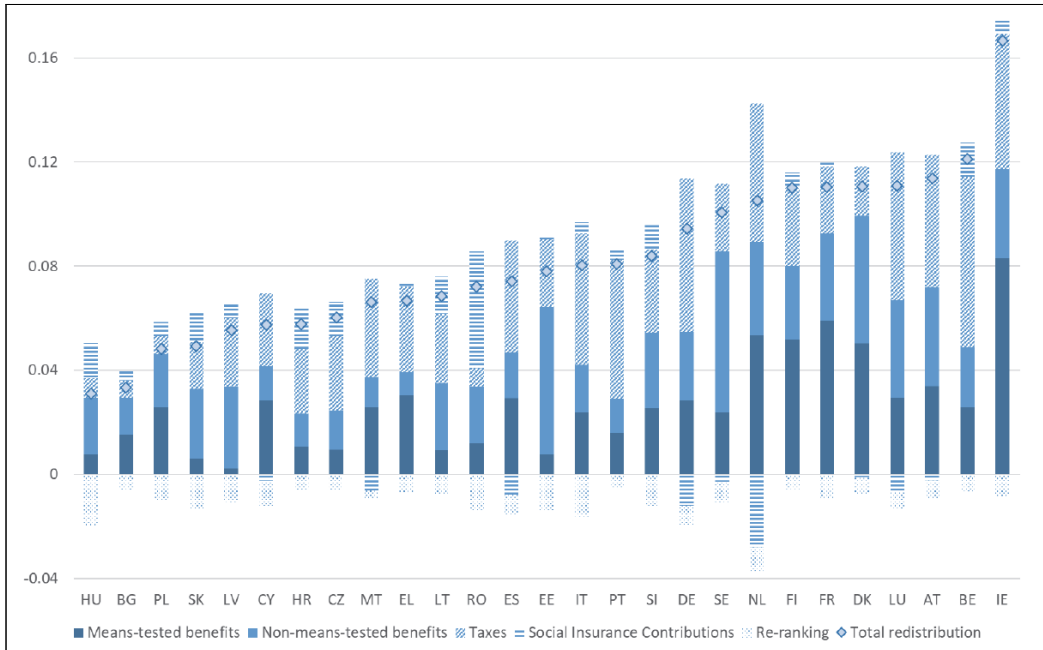
주: 2022년 가을 이후 발표된 재정정책이 2023-24회계연도의 가계의 수혜 및 부담에 미친 영향

자료: HM Treasury(2023), p. 10, Figure 1.B

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미시모의실험모형으로 EUROMOD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EUROMOD는 EU-SILC(European Union -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에 기반을 둔 모형이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분석 범위가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현금이전 등으로 앞의 선행연구들보다 한정적이며,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그림 II-9] 유럽 집행위원회의 수혜·부담 분석



자료: EC(2023), p. 14, 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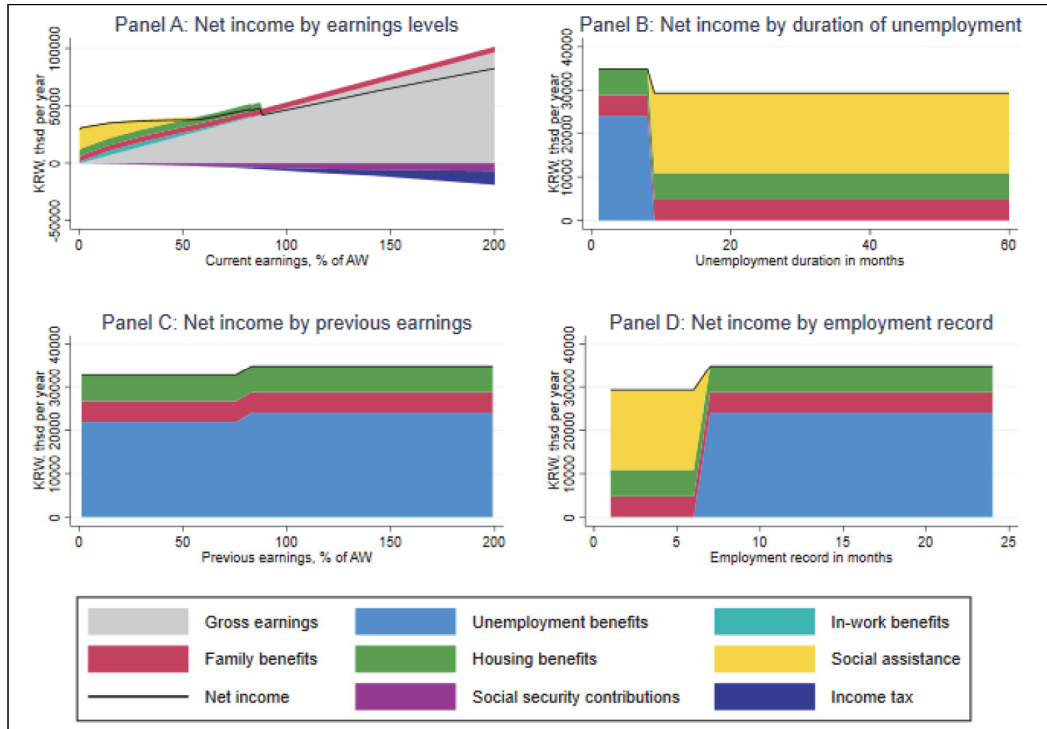
라. OECD

OECD는 근로연령계층에 대한 각 국가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비교하기 위한 TaxBEN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TaxBEN 모형은 앞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근로연령계층에 한정된 분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이 아닌 각 국가의 제도들을 모수화하여 가상의 다양한 가계에 대해 모의실험기법으로 분석한

다는 차이점이 있다. TaxBEN 모형은 소득세,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고용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이전 등을 분석에 포함하지만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은퇴연령계층이 대상인 연금과 같은 제도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재정정책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II-10] OECD TaxBEN 모형의 한국에 대한 분석 예시

(단위: 천원)



주: 2자녀 부부가구 기준

자료: OECD(2022), p. 30, Figure 1

Ⅲ.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관

1. 모형의 특징

본 연구가 구축하여 활용하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에 유용하다. 가계와 직접 관련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필연적으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발생시켜 가계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층, 은퇴연령가구, 아동, 장애인,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즉,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 따라 가계의 소득은 달라진다. 따라서 조세·재정정책이 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과 함께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기존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해 중요하다.

조세·재정정책의 수혜·부담 분석은 개별 정책으로 인해 각 가계에 귀착되는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측정한 뒤 이를 종합하여 가계별로 순수혜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서로 간 비교하는 것이다. 가계 간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수혜에서 부담을 차감한 순수혜 규모가 크고,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부담에서 수혜를 차감한 순부담 규모가 클수록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영국의 통계청이 연령대별로 순수혜 규모를 비교하는 것처럼 가계 간 비교를 소득계층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수혜·부담 분석 모형의 유용한 점은 주요 제도에 대해 현재 제도와 다른 가상적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하는 정책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혜·부담 분석 모형이 없더라도 해당 자료에 반영된 조세·재정정책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관찰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종합적인 수혜·부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접세나 사회적 현물이전과 같은

관찰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별도로 추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가상의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며, 미래에 시행하기 위한 보다 더 좋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다른 다양한 가상의 제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수혜·부담 분석 모형을 활용하면 관심 제도들에 대한 모수들을 통해 이와 같은 정책실험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수혜·부담 분석의 또 다른 특징은 소득을 단계별로 정의하여 각 단계별 소득분포를 비교한다는 점이다. 각 소득 단계는 소득에 반영된 정책의 포괄범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더 많은 정책이 반영된 소득 단계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 단계 간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만약 직전 단계의 소득과 비교해 현 단계 소득의 불평등도가 크게 개선된다면, 현 단계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들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단계별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수혜·부담 분석 모형은 미시자료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동 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가계의 경제상태에 대해 조사하는 다양한 미시자료가 있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혜·부담 분석 모형이 포괄하는 정책의 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한데, 「재정패널조사」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미시자료이다. 「재정패널조사」는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미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표 III-1〉의 제도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재정패널조사」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도 같이 수집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수혜·부담 분석은 정책 변화에도 경제주체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앞의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박연서 외(2022) 등은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오종현 외(2017) 등은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과 오종현 외(2017)가 고려한 방식의 행태변화가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더 높이는지, 아니면 현실을 오히려 더 왜곡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나 소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이 부정확하게 추정되거나 세부 집단 간의 차이가 잘 반영되지 못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추정된 주요 탄력성이 과거의 행태를 잘 설명하더라도 변화한 정책 환경에서는 탄력성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탄력성의 추정 과정에서 데이터와 모형에 대한 자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왜곡의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본 연구는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태적 분석을 실시한다.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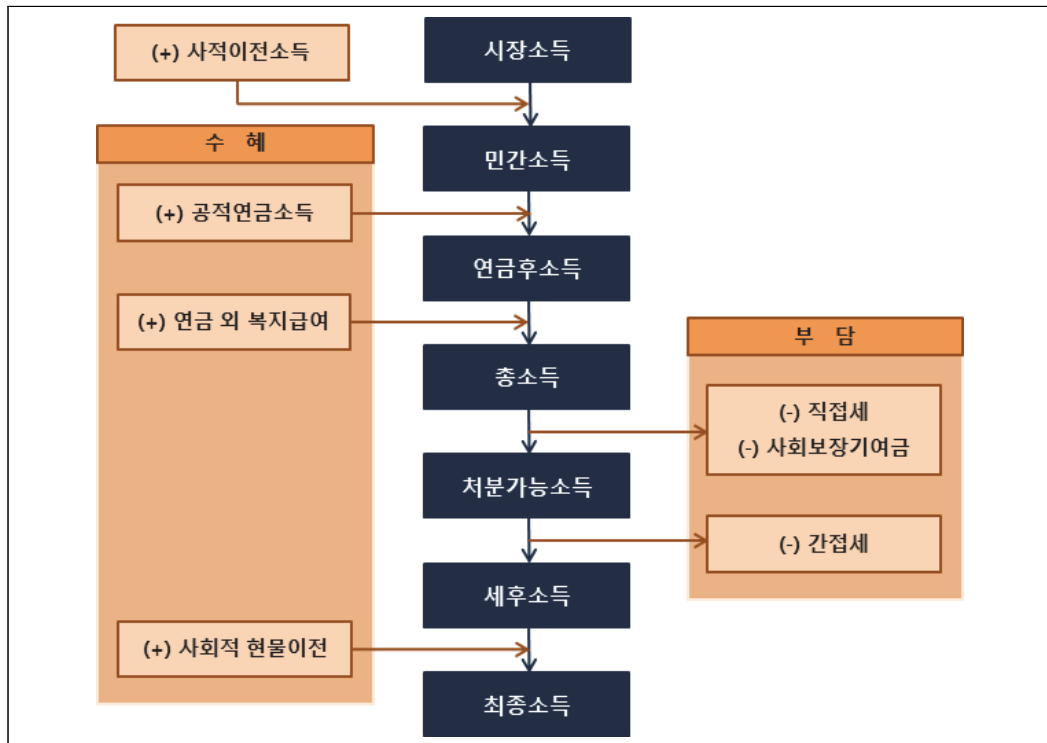
조세·재정정책의 수혜·부담 분석 중 중요한 부분이 소득을 단계별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분포를 추정하고 비교하는 분석이다. 각 소득 단계가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의 반영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제도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림 III-1]과 같이 소득을 7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조세·재정정책의 수혜·부담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각 소득의 단계를 정의한다. 특히, 오종현(2018)과 박연서 외(2022)는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을 정의하였다.³⁾ 다만, 그 이전의 국내 선행연구인 성명재·전병목·전병힐(2008), 성명재·송헌재·전병목(2010), 오종현 외(2017) 등은 연금후소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소득을 6단계로 정의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각 단계별 소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인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가계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민간소득은 시장소득에 민간보험금, 사적연금, 상속·증여 등의 사적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사적이전소득은

3)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본 연구의 연금후소득에 대한 용어를 오종현(2018)은 준총소득, 박연서 외(2022)는 조정 민간소득이란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각 연구 간 소득의 정의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본 연구는 연금후소득이 해당 소득의 정의를 준총소득이나 조정민간소득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순소득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인 연금후소득은 민간소득에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을 더한 소득이다. 네 번째 단계인 총소득은 연금후소득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연금 외 복지급여를 더한 소득으로 가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질 수 있는 최대 현금소득이다. 다섯 번째 단계인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한 소득이다. 여섯 번째 단계인 세후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계인 최종소득은 세후소득에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소득으로 정의한다. 소득의 단계 중 처음 두 단계인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가계의 소득이다. 반면 나머지 다섯 단계인 연금후소득부터 최종소득까지의 소득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소득이다.

[그림 Ⅲ-1] 단계별 소득과 조세·재정정책과의 관계



자료: 오종현 외(2017), p. 17, [그림 Ⅲ-1] 일부 수정

수혜·부담 분석을 위해서는 가계를 소득계층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하는 수혜·부담 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 가계를 소득계층(가령, 소득 10분위)으로 구분하여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재정수혜가 많고 조세부담이 적어 순수혜 규모가 크고,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재정수혜는 적고 조세부담은 많아 순부담 규모가 크다면 조세·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계를 소득계층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소득이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오종현(2018), 박연서 외(2022)와 같이 연금후소득을 기준으로 가계의 소득계층을 구분한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수혜·부담 분석에서 가계를 소득계층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 조세·재정정책이 각 계층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춰볼 때 가계의 소득계층은 조세·재정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직전 단계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 소득은 민간소득이다. 이에 성명재·박기백(2008), 오종현 외(2017) 등은 민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민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면 상당수의 은퇴연령가계가 저소득층(가령 소득 1~2분위)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적지 않은 가계에 높은 공적연금소득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민간소득보다 연금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소득계층이 실제 경제력 또는 구매력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연금 제도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오종현(2018)이 설명하듯 기본적으로 과거의 시장소득을 현재로 이전한 것으로 공적이전 소득보다는 시장소득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조세·재정정책 중 [그림 III-1]에서 연금 외 복지급여 이후 단계의 정책 효과 분석에 중점을 둘 경우 연금후소득이 소득계층 구분의 기준으로 더 적절하다.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본 연구의 수혜·부담 분석 모형은 상당 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을 포괄한다. 동 모형이 포괄하는 제도로 먼저 가계의 조세부담 측면을 살펴보면, 크게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간접세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직접세 중 가계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목은 소득세이며,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이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택 등을 보유할 경우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포함된다. 사회보장기여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보험료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가계의 부담에 포함된다. 간접세는 대체로 소비세인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 또는 사치재 등을 소비할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류 구매 시 납부하는 주세도 모형에 포함된다. 담배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다양한 제세부담금과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하는 등록세도 간접세에 포함된다. 그 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을 납부할 때 부가세로 함께 납부하는 교육세도 분석에 포함된다.

가계의 재정수혜 측면에서 모형에 포함되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크게 공적연금소득, 연금 외 현금성 복지급여,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급여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급여가 포함된다. 연금 외 현금성 복지급여에는 생계급여와 같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기초연금과 같이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아동수당과 같이 아동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보험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보훈급여, 장애급여, 근로·자녀장려금이 포함되며,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가계에 지급된 지원금도 포함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에는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로 인한 가계의 혜택이 포함되며, 그밖에 바우처, 식료품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물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제도들 중 일부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관찰이 가능하지만 다른 일부는 관찰이 불가능해 추정이 필요하다. 조세부담 측면에서는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재정수혜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소득 그리고 연금 외 현금성 복지급여는 「재정패널조사」가 설문을 통해 자료로 수집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간접세와 대부분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가계가 부담한 금액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간접세 전체와 사회적 현물이전의 대부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와 다른 자료를 활용해 추정해야만 한다. <표 Ⅲ-1>은 본 연구의 수혜·부담 분석에 포함된 주요 제도들을 보여준다. 이 중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들은 추정이 필요한데,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설명한다.

〈표 Ⅲ-1〉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구분		원자료 존재 여부	
부담	직접세	소득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자동차세	○
	사회보장 기여금	공적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간접세	부가가치세	추정
		유류 소비세	추정
		주류 소비세	추정
		담배 제세부담금	추정
자동차 소비세		추정	
수혜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급여	○
		특수직역연금급여	○
	연금 외 복지급여	생계급여	○
		노인지원(기초연금)	○
		아동지원	○
		고용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장애급여	○
		보훈급여	○
		근로·자녀장려금	○
	코로나19 지원금	○	
	사회적 현물이전	교육·보육서비스	추정
		의료서비스(의료급여 포함)	추정
		주거서비스(주거급여 포함)	추정
바우처 등 기타		○	

자료: 저자 작성

IV.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추정

1. 간접세

가. 부가가치세

가계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직접 관찰할 수 없어 「재정패널조사」의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패널조사」에 있는 각 지출항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가계 h 가 지출항목 i 에 지출한 금액인 $EX_{h,i}$ 와 해당 지출항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인 τ_i^{ev} 을 안다면, 이 항목으로 인해 해당 가계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VAT_{h,i}$ 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N 개의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합산하면 해당 가계가 부담한 총 부가가치세를 식 (IV-1)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재정패널조사」에는 항목별 지출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계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추정하는 것은 항목별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VAT_h = \sum_{i=1}^N VAT_{h,i} = \sum_{i=1}^N EX_{h,i} \left(\frac{\tau_i^{ev}}{1 + \tau_i^{ev}} \right) \quad \text{식 (IV-1)}$$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다르다. 만약 모든 품목에 부가가치세가 동일한 세율로 정상 과세되고 면세되는 품목이 없다면,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은 같다. 하지만 현실에는 면세제도로 인해 개별 품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달라진다. 특히 박명호·정재호(2014) 등의 선행연구들이 설명하듯이 최종재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중간재에 면세품이 있다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최종재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높아진다.

본 연구는 박명호·정재호(2014)와 같이 「재정패널조사」 지출항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한다. 첫 번째 단계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산업연관표」상의 상품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에는 전체 상품 간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관계가 행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중간재의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정된 상품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재정패널조사」의 지출항목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때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품목별 민간소비지출 금액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하였다. 이는 박명호·정재호(2014), 오중현 외(2017)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점이다.

1) 1단계: 「산업연관표」의 품목별 유효세율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상품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Gottfried and Wiegard (1991), 박명호·정재호(2014)의 방법을 따라 추정한다. 본 연구와 박명호·정재호(2014)의 차이점은,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각 상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뿐만 아니라 영세율 적용 여부도 같이 고려한다는 점이다.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면세와 영세는 가격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면세는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생산 중간 단계에 면세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전가된다. 하지만 영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와 같은 가격전가가 없다. 이에 영세는 완전면세, 면세는 부분면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정재호·정다운(2022)은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과세자료를 이용하지 못해 해당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정재호·정다운(2022)의 방법론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도 검토해볼 만하다.

「산업연관표」로는 2015년 실측표 중 기본부문에 대한 기초가격평가표 자료를 활용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산업연관표」 중 실측표로는 2015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 「산업연관표」는 상품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으로 분류한다. 이 중 본 연구는 상품을 가장 자세하게 분류한 기본부문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 2015년 실측 기준 「산업연관표」는 381개의 상품이 기본부문을 구성한다. 「산업연

관표」는 기초가격뿐만 아니라 생산자가격과 구매자가격 기준으로도 작성된다.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 생산물세에서 생산보조금을 차감한 순생산물세를 반영한 것이다. 구매자가격은 생산자가격에 도소매마진과 화물운임을 더한 것이다. 한국은행(2014, p. 20)은 “생산과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초가격평가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SNA에서도 기초가격 기준 「산업연관표」 작성을 권장”하고 우리나라 또한 “2010년부터 분석의 주지표를 기초가격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가격평가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면세품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상품 i 의 세전가격(즉, 부가가치세 부과 전 가격)인 s_i 는 식 (IV-2)와 같이 부가가치와 중간재 투입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 식의 우변에서 v_i 는 상품 i 의 부가가치, a_{ji} 는 1단위의 상품 i 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j 의 투입량, s_j 는 면세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품 j 의 세전가격이다. 한편 n 은 「산업연관표」의 상품 분류 개수로 본 연구에서는 381과 같다.

$$s_i = v_i + \sum_{j=1}^n a_{ji}s_j, \quad (i = 1, 2, \dots, n) \quad \text{식 (IV-2)}$$

하지만 면세품이 존재한다면 상품 i 의 세전가격은 달라진다. 면세가 존재할 때 상품 i 의 세전가격인 p_i 는 식 (IV-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의 우변에서 δ_i 는 상품 i 의 과면세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면 1, 면세면 0인 이항변수이다. 그리고 t_j 는 중간재로 투입된 상품 j 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는 정상 과세면 0.1, 면세 또는 영세면 0이다. 식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품 i 가 면세라면 중간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세부담이 가격 p_i 에 반영된다. 반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정상 과세를 하면 중간재의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p_i = v_i + \sum_{j=1}^n a_{ji} [p_j + (1 - \delta_i) t_j p_j], \quad (i = 1, 2, \dots, n) \quad \text{식 (IV-3)}$$

상품 i 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식 (IV-4)와 같이 정의된다. 이 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약 면세제도가 없다면 p_i 와 s_i 는 같아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인 τ_i^{ev} 는 명목세율인 t_i 와 같아진다. 하지만 면세제도로 인해 상품 i 의 세전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로 인한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높아진다.

$$\tau_i^{ev} = \frac{t_i p_i + (p_i - s_i)}{s_i} = t_i + \frac{t_i(p_i - s_i) + (p_i - s_i)}{s_i}, \quad (i = 1, 2, \dots, n) \quad \text{식 (IV-4)}$$

지금까지는 특정 상품의 유효세율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전체 상품의 유효세율을 행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렬 A , Δ , T , θ 를 식 (IV-5)~(IV-8)과 같이 정의하자. 각 행렬의 원소는 앞의 수식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이에 행렬 A 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에 해당되고, 행렬 Δ 는 각 상품의 과면세 여부로 구성된 대각행렬, 그리고 행렬 T 는 각 상품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로 구성된 대각행렬이다. 그리고 θ 는 면세제도가 없을 때를 가정한 각 상품의 가격으로 구성된 열벡터이다. 본 연구는 모든 s_i 가 1과 같다고 가정한다. 가상의 상황에 대한 각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없어 θ 를 실제 가격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산업연관표」가 물량단위가 아닌 금액단위로 작성되어 모든 s_i 가 1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산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I 는 대각의 원소가 1이고 나머지는 0인 단위행렬이다.

$$A = \begin{pmatrix} a_{11} & a_{12} & \cdots & a_{1n} \\ a_{21} & a_{22} & \cdots & a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n} \end{pmatrix} \quad \text{식 (IV-5)}$$

$$\Delta = \begin{pmatrix} \delta_1 & 0 & \cdots & 0 \\ 0 & \delta_2 & \cdots & 0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0 & 0 & \cdots & \delta_n \end{pmatrix} \quad \text{식 (IV-6)}$$

$$T = \begin{pmatrix} t_1 & 0 & \cdots & 0 \\ 0 & t_2 & \cdots & 0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0 & 0 & \cdots & t_n \end{pmatrix} \quad \text{식 (IV-7)}$$

$$\theta = \begin{pmatrix} s_1 \\ s_2 \\ \vdots \\ s_n \end{pmatrix} = \begin{pmatrix} 1 \\ 1 \\ \vdots \\ 1 \end{pmatrix} \quad \text{식 (IV-8)}$$

앞에서와 같이 행렬을 정의하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ϕ 는 식 (IV-11)과 같이 정의된다. 이 식에서 ϕ 는 τ_i^{ev} 를 원소로 갖는 열벡터이고, π 는 각 상품의 세전가격인 p_i 를 원소로 갖는 열벡터이며, 기호 \odot 는 앞 행렬의 원소를 뒤 행렬의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로 나누는 연산자이다. 식 (IV-9)~(IV-11)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면세품이 없을 경우 행렬 Δ 는 단위행렬 I 와 같아져 행렬 X 는 모든 원소가 0인 영행렬이 된다. 따라서 π 는 θ 와 같아지고, ϕ 의 모든 원소 τ_i^{ev} 는 t_i 와 같아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같아진다. 하지만 면세품이 존재하면 각 상품의 세전가격은 식 (IV-10)에서 $(I - XT)^{-1}$ 을 통해 조정되고,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로 인해 명목세율보다 $[T(\pi - \theta) + XT\pi] \odot \theta$ 만큼 커진다.⁴⁾

4) 식 (IV-9)~(IV-11)의 유도 과정은 박명호·정재호(2014, pp. 41~46)를 참조하기 바란다.

$$X = (I - A')^{-1}(I - \Delta)A' \quad \text{식 (IV-9)}$$

$$\pi = (I - XT)^{-1}\theta \quad \text{식 (IV-10)}$$

$$\phi = (I + X)T\pi \odot \theta = T + [T(\pi - \theta) + XT\pi] \odot \theta \quad \text{식 (IV-11)}$$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상품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을 정상 과세, 면세, 영세율 적용 여부로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연관표」의 상품 분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과면세 및 영세율 여부를 규정하는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박명호·정재호(2014)도 설명하듯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산업연관표」에서 이를 특정할 수 없다. 「산업연관표」는 상품 중 유류를 휘발유, 경유 등으로 구분하지만 동일한 상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 농·임·어업용 석유류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유류 소비에서 농·임·어업용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본 연구는 가계의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류를 모두 정상 과세로 가정하여 분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출품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산업연관표」의 상품 분류에서 수출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본 연구는 국내 가계의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가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경우 국내산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수입산은 정상 과세한다. 「산업연관표」는 각 상품의 국내산과 수입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데,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 중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투입산출표를 통해 해당 상품의 총수요에서 수출을 제외한 국내 수요 중 수입을 제외한 국내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 면세품으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에 따라 잎담배, 천연고무, 기타 비식용작물, 원목은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만 정상 과세품으로 분류한다. 그밖에 본 연구가 가정한 「산업연관표」의 상품별 면세 및 영세 여부와 그 근거는 <표 IV-1>에 정리되어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도출한 381개 상품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표 IV-1>과 같다. 정상 과세하는 상품들의 유효세율은 대체로 명목세율인 10%보다 높지만, 면세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품들의 유효세율은 10%보다 낮다. 특히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품들의 유효세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품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1	벼	1.27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2	맥류 및 잡곡	1.46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3	콩류	1.07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4	감자류	1.33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5	채소	1.47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6	과실	1.44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7	화훼작물	3.25	0		부가 제26조1항1호(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8	약용작물	0.71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9	잎담배	10.16			
10	천연고무	10.00			
11	종자	2.95	0		부가 제26조1항1호(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12	기타 식용작물	0.89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13	기타 비식용작물	10.69			
14	낙농	2.13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15	축우	2.13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16	양돈	2.01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17	가금	2.10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18	기타 축산	2.12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19	영림	1.61	0		부가 제26조1항1호(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20	원목	10.67			
21	식용 임산물	1.71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22	기타 임산물	1.98	0		부가 제26조1항1호(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23	수산어획	4.81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24	수산양식	4.77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25	농림어업 서비스	10.42			
26	무연탄	5.26	0		부가 제26조1항3호(연탄과 무연탄)
27	유연탄	10.00			
28	원유	10.37			
29	천연가스(LNG)	10.38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30	철광석	10.44			
31	기타 비철금속광석	10.71			
32	골재 및 석재	10.32			
33	석회석	10.25			
34	기타 비금속광물	10.77			
35	도축육	2.46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36	가금육	3.59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37	육가공품	11.25			
38	낙농품	11.07			
39	수산물 가공품	12.00			
40	수산동물 저장품	6.41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41	정곡	2.17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42	제분	3.30	0		부가 제26조1항1호(미가공 식료품)
43	원당	10.00			
44	정제당	10.10			
45	전분 및 당류	10.71			
46	떡, 빵 및 과자류	10.87			
47	면류	11.22			
48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10.81			
49	유지	10.92			
50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0.88			
51	커피 및 차류	10.65			
52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10.49			
53	기타 식료품	10.98			
54	사료	0.80		0	조특 제105조1항5호마목(사료)
55	주정	10.70			
56	소주	10.42			
57	맥주	10.39			
58	기타 주류	10.59			
59	비알콜음료 및 얼음	10.46			
60	담배	10.21			
61	천연 및 화학 섬유사	10.48			
62	기타 섬유사	10.32			
63	천연 및 화학 섬유직물	10.33			
64	기타 섬유직물	10.29			
65	편조원단	10.34			
66	섬유표백 및 염색 임가공	10.39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67	직물제품	10.35			
68	부직포 및 펠트	10.32			
69	기타 섬유제품	10.33			
70	봉제 의류	10.33			
71	편조의류	10.36			
72	가족의류	10.69			
73	모피의류 및 모피제품	11.00			
74	의복 관련 장신품	10.32			
75	가족	11.16			
76	모피	10.98			
77	가방 및 핸드백	10.38			
78	신발	10.47			
79	기타 가죽제품	10.56			
80	제재목	10.44			
81	합판	10.36			
82	강화 및 재생목재	10.35			
83	건축용 목제품	10.37			
84	목재 용기 및 적재판	10.36			
85	기타 목제품	10.42			
86	펄프	10.28			
87	인쇄용지	10.28			
88	기타 원지 및 판지	10.27			
89	골판지 및 골판지가공품	10.28			
90	종이용기	10.26			
91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0.27			
92	위생용 종이제품	10.26			
93	기타 종이제품	10.22			
9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0.28			
95	석탄코크스 및 석탄 관련제품	10.13			
96	연탄	6.59	0		부가 제26조1항3호(연탄과 무연탄)
97	나프타	10.33			
98	휘발유	10.33			
99	제트유	10.33			
100	등유	10.30			
101	경유	10.32			
102	중유	10.31			
103	액화석유가스	10.33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104	정제혼합용 원료유	10.38			
105	윤활유 및 그리스	10.32			
106	기타 석유정제제품	10.36			
107	지방족 기초유분	10.32			
108	방향족 기초유분	10.32			
109	석유화학중간제품	10.33			
11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0.32			
111	산업용 가스	10.25			
112	기초무기화합물	10.29			
113	염료, 안료 및 유연제	10.46			
114	합성수지	10.27			
115	합성고무	10.27			
116	화학섬유	10.28			
117	의약품	10.40			
1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0.31		○	조특 제105조1항5호가목(비료)
119	살충제 및 농약	0.31		○	조특 제105조1항5호나목(농약)
120	도료	10.30			
121	잉크	10.31			
122	비누, 세제 및 치약	10.38			
123	화장품	10.30			
124	접착제 및 젤라틴	10.43			
125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10.31			
126	기타 화학제품	10.25			
127	플라스틱 1차제품	10.23			
128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10.27			
129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10.26			
130	운송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10.25			
131	기타 플라스틱제품	10.26			
132	타이어 및 튜브	10.32			
133	산업용 고무제품	10.27			
134	기타 고무제품	10.31			
135	판유리 및 1차 유리제품	10.32			
136	전자기기용 유리제품	10.19			
137	산업용 유리제품(전자기기용 제외)	10.23			
138	기타 유리제품	10.24			
139	가정용 도자기	10.41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140	산업용 도자기	10.29			
141	내화요업제품	10.31			
142	건설용 비내화요업제품	10.34			
143	시멘트	10.70			
144	레미콘	10.49			
145	콘크리트 제품	10.37			
146	석회 및 석고제품	10.68			
147	석제품	10.33			
148	연마재	10.26			
149	아스콘 및 아스팔트 제품	10.46			
150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0.30			
151	선철	11.31			
152	합금철	10.59			
153	조강	10.93			
154	철근 및 봉강	10.67			
155	형강	10.39			
156	선재 및 귀조	10.44			
157	중후판(두께 3mm 이상)	10.44			
158	열연강판	10.44			
159	강선	10.45			
160	철강관	10.41			
161	냉간압연강재	10.48			
162	표면처리강재	10.41			
163	기타 철강1차제품	10.43			
16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0.66			
165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0.42			
166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0.59			
167	금은과	10.49			
168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0.44			
169	동 1차제품	10.54			
170	알루미늄 1차제품	10.37			
171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	10.41			
172	금속 주물	10.41			
173	건축용 금속제품	10.37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174	구조물용 금속제품	10.29			
175	금속제 탱크 및 압력용기	10.32			
176	산업용 보일러 및 증기 발생기	10.38			
177	금속 단조 및 아금제품	10.31			
178	금속압형제품	10.25			
179	금속처리	10.20			
180	금속처리 가공품	10.25			
181	가정용 금속제품	10.34			
182	부착용 금속제품	10.28			
183	공구류	10.24			
184	나사 및 철선 제품	10.29			
185	금속포장용기	10.28			
186	기타 금속제품	10.25			
187	개별소자	10.20			
188	집적회로	10.17			
189	LCD 평판 디스플레이	10.20			
190	기타 전자표시장치	10.20			
191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	10.25			
192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	10.27			
193	기타 전자부품	10.20			
194	컴퓨터	10.29			
195	컴퓨터 기억장치	10.26			
196	컴퓨터 주변기기	10.25			
197	유선통신기기	10.25			
198	이동전화기	10.24			
199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10.49			
200	TV	10.29			
201	영상기기	10.24			
202	오디오 및 음향기기	10.25			
203	의료용 기기	10.28			
204	측정 및 분석기기	10.23			
205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10.30			
206	사진기 및 영사기	10.25			
207	기타광학기기	10.22			
208	시계	10.34			
209	발전기 및 전동기	10.23			
210	변압기	10.28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211	전기변환장치	10.26			
212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10.26			
21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10.24			
214	전지	10.31			
215	전선 및 케이블	10.37			
216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10.30			
217	주방용 및 난방용 전기기기	10.43			
218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0.30			
219	전구 및 램프	10.37			
220	조명장치	10.26			
221	기타 전기장비	10.23			
222	내연기관 및 터빈	10.29			
223	펌프 및 압축기	10.33			
224	밸브	10.26			
225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10.25			
226	산업용 운반기계	10.30			
227	공기조절 장치 및 냉장 냉동 장비	10.35			
228	공기 및 액체 여과기	10.30			
229	사무용 기기	10.25			
230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10.26			
231	농업용 기계	0.28		○	조특 제105조1항5호다목(농업용 기계)
232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0.30			
233	금속가공용기계	10.35			
234	금형 및 주형	10.34			
235	반도체 제조용 기계	10.24			
236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10.26			
237	음식료품 가공기계	10.31			
238	섬유 및 의복가공 기계	10.29			
239	산업용 로봇	10.32			
240	제지 및 인쇄기계	10.26			
241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	10.28			
24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0.25			
243	승용차	10.29			
244	버스	10.28			
245	트럭	10.30			
246	특장차	10.28			
247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10.32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248	자동차용 엔진	10.30			
249	자동차 부분품	10.31			
250	강철제 선박	10.34			
251	기타 선박	10.30			
252	선박 수리 및 부분품	10.39			
253	철도차량	10.33			
254	항공기	10.29			
255	모터사이클	10.37			
256	기타 운수장비	10.29			
257	목재 가구	10.33			
258	금속 가구	10.34			
259	기타 가구	10.34			
260	장난감 및 오락용품	10.35			
261	운동 및 경기용품	10.37			
262	악기	10.39			
263	문구용품	10.32			
264	귀금속 및 보석	10.39			
265	모형 및 장식용품	10.31			
266	기타 제조업 제품	10.37			
267	제조임가공 서비스	10.28			
26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10.18			
269	수력	10.22			
270	화력	10.21			
271	원자력	10.16			
272	자가발전	10.22			
273	신재생에너지	10.18			
274	도시가스	10.34			
275	증기 및 온수 공급	10.18			
276	수도	3.25	○		부가 제26조1항2호(수돗물)
27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국공립)	3.33	○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27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산업)	10.16			
279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국공립)	3.63	○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280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	10.29			
281	자원재활용서비스	10.52			
282	주거용 건물	10.28			
283	비주거용 건물	10.30			
284	건축보수	10.27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285	도로시설	6.12	○		조특 제105조1항3의2호(사회기반시설)
286	철도시설	6.31	○		조특 제105조1항3의2호(사회기반시설)
287	항만시설	6.30	○		조특 제105조1항3의2호(사회기반시설)
288	하천사방	5.47	○		조특 제105조1항3의2호(사회기반시설)
289	상하수도시설	5.27	○		조특 제105조1항3의2호(사회기반시설)
290	농림수산토목	10.27			
291	도시토목	10.28			
292	환경정화시설	10.28			
293	통신시설	10.23			
294	전력시설	10.23			
295	산업플랜트	10.25			
296	기타 건설	10.43			
297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0.37			
298	철도운송서비스	2.78	○		부가 제26조1항7호(여객운송 용역)
299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3.49	○		부가 제26조1항7호(여객운송 용역)
300	도로화물 운송서비스	10.23			
301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서비스	5.36	○		부가 제26조1항7호(여객운송 용역)
302	외항운송서비스	0.28		○	부가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303	항공운송서비스	0.28		○	부가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304	육상운송보조서비스	10.21			
305	수상운송보조서비스	10.27			
306	항공운송보조서비스	10.15			
307	하역 서비스	10.32			
308	보관 및 창고 서비스	10.41			
309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10.37			
310	공영우편서비스	2.14	○		부가 제26조1항9호(우표 등)
311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	10.29			
312	일반음식점	11.10			
313	기타음식점	11.13			
314	주점	10.72			
315	비알콜음료점	10.48			
316	숙박	10.40			
317	유선통신서비스	10.34			
318	무선 및 위성 통신서비스	10.27			
319	통신 재판매 및 중개 서비스	10.30			
320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0.20			
321	지상파 방송서비스	4.23	○		부가 제26조1항8호(방송)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322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서비스	10.66			
323	정보제공서비스	10.44			
324	게임소프트웨어 출판	10.31			
325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10.17			
326	기타 IT서비스	10.20			
327	신문 및 출판	5.71	0		부가 제26조1항8호(도서·신문·잡지)
328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10.34			
329	영화상영	10.35			
330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1.52	0		부가 제26조1항11호(금융·보험 용역)
331	금융투자기관	2.11	0		부가 제26조1항11호(금융·보험 용역)
332	기타 금융중개기관	4.20	0		부가 제26조1항11호(금융·보험 용역)
333	생명보험	3.26	0		부가 제26조1항11호(금융·보험 용역)
334	연금기금	2.08	0		부가 제26조1항11호(금융·보험 용역)
335	비생명보험	3.98	0		부가 제26조1항11호(금융·보험 용역)
336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	2.61	0		부가 제26조1항11호(금융·보험 용역)
337	주거서비스	0.92	0		부가 제26조1항12호(주택 임대 용역)
338	비주거용 건물 임대	10.22			
339	부동산 개발 및 공급	10.32			
340	부동산 관련 서비스	10.19			
341	연구개발(국공립)	4.02	0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342	연구개발(비영리)	5.05	0		부가 제26조1항18호(학술 연구단체 공급 재화·용역)
343	연구개발(산업)	10.31			
344	기업내 연구개발	10.18			
345	법무 및 회계서비스	10.22			
346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10.55			
347	광고	11.96			
348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10.32			
349	공학 관련 서비스	10.27			
350	과학기술서비스	10.23			
351	기타 전문 서비스	10.29			
352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10.15			
353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조경서비스	10.16			
354	인력공급 및 알선	10.14			
355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10.22			
356	중앙정부	2.45	0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357	지방정부	0.79	0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표 IV-1〉의 계속

(단위: %)

부문 번호	기본부문 상품	유효 세율	면세 및 영세 구분		
			면세	영세	근거
358	사회보험(국공립)	3.36	○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359	교육서비스(국공립)	2.13	○		부가 제26조1항6호(교육 용역)
360	교육서비스(비영리)	2.60	○		부가 제26조1항6호(교육 용역)
361	교육서비스(산업)	4.30	○		부가 제26조1항6호(교육 용역)
362	의료 및 보건(국공립)	3.12	○		부가 제26조1항5호(의료보건 용역)
363	의료 및 보건(비영리)	4.04	○		부가 제26조1항5호(의료보건 용역)
364	의료 및 보건(산업)	4.69	○		부가 제26조1항5호(의료보건 용역)
365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2.79	○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366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2.78	○		부가 제26조1항18호(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367	문화서비스(국공립)	3.46	○		부가 제26조1항19호(국가 공급 재화·용역)
368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10.27			
369	기타 문화서비스	2.57	○		부가 제26조1항17호(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등)
370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10.42			
371	스포츠 서비스	10.28			
372	오락 서비스	10.52			
373	산업 및 전문가 단체	10.53			
374	기타 사회 단체	4.88	○		부가 제26조1항18호(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375	자동차 수리서비스	10.27			
376	전자통신기기 및 가정용품 수리서비스	10.23			
377	미용관련 서비스	10.36			
378	세탁	10.29			
379	가사서비스	10.00			
380	기타 개인 서비스	10.32			
381	기타	11.63			

주: 1.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경우 「산업연관표」 중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투입산출표에서 국내 수요(중수요계에서 수출 차감) 중 국내 공급(국내 수요에서 수입 차감)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면세품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임대배, 천연고무, 기타 비식용작물, 원목은 정상과세로 가정

2. 가사서비스는 2022년부터 면세(부가 제26조1항15호, 기타 인적 용역)로 분류되어 2019~2021년이 분석 대상 기간인 본 연구는 정상 과세로 분류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및 작성

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기초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부가가치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9. 1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부가가치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9. 1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9. 11.

2) 2단계: 「재정패널조사」의 항목별 유효세율

가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재정패널조사」의 지출항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표 IV-1>의 「산업연관표」상 상품별 유효세율을 이용해 「재정패널조사」의 지출항목별 유효세율을 도출한다. 다만 「산업연관표」의 상품과 「재정패널조사」의 지출항목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표 IV-2>와 같이 두 자료를 연결한다. 「재정패널조사」의 하나의 지출항목에 「산업연관표」의 여러 상품이 연결될 때에는 「산업연관표」중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투입산출표에서 각 상품의 민간소비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유효세율을 가중평균하여 「재정패널조사」의 지출항목에 대한 유효세율을 도출한다. 그 결과 또한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 「재정패널조사」 지출항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단위: %)
재정패널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상품	유효세율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 구입가격	승용차	10.29
	오토바이 구입가격	모터사이클	10.37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험료	비생명보험	3.98
수송용 유류	자동차 휘발유(자가)	휘발유	10.33
	자동차 경유(자가)	경유	10.32
	자동차 LPG(자가)	액화석유가스	10.33
	자동차 CNG(자가)	천연가스(LNG)	10.38
	오토바이 휘발유(자가)	휘발유	10.33
	급속충전시설 전기(자가)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10.20
	완속충전시설 전기(자가)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10.20
주거	전기료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10.20
	수도료	수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국공립);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산업)	3.38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	10.34
	지역난방비	증기 및 온수 공급	10.18
	난방용 유류비	등유	10.30
	연탄	연탄	6.59
	LPG	액화석유가스	10.33
	공동부과금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조정서비스	10.16
	기타 주거비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조정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10.31
	주택수리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10.32

〈표 IV-2〉의 계속

(단위: %)

재정패널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상품	유효세율
식료품 및 외식	식료품	맥류 및 잡곡; 콩류; 감자류; 채소; 과실; 약용작물; 기타 식용작물; 기금; 기타 축산; 식용 임산물; 수산어획; 수산양식; 도축육; 가공육; 육가공품; 낙농품; 수산물 가공품; 수산동물 저장품; 정곡; 제분; 정제당; 전분 및 당류; 떡, 빵 및 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유지;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커피 및 차류;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기타 식료품; 비알콜음료 및 얼음	6.63
	외식비	일반음식점; 기타음식점; 주점; 비알콜음료점	11.01
주류	맥주, 소주, 양주	소주; 맥주; 기타 주류	10.45
	와인	기타 주류	10.59
	막걸리 전통주 등 기타 주류	기타 주류	10.59
	담배	담배	10.21
교통	공공교통비	철도운송서비스;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서비스; 외항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2.82
	차량유지비	자동차 부분품; 자동차 수리서비스	10.27
	오토바이유지비	자동차 부분품; 자동차 수리서비스	10.27
통신	인터넷(복합상품 포함)	유선통신서비스	10.34
	유선전화(집전화)	유선통신서비스	10.34
	휴대폰	이동전화기; 무선 및 위성 통신서비스	10.25
	유료방송(케이블/IPTV) 시청료	지상파 방송서비스;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서비스	9.73
	기타 통신비	공영우편서비스;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2.34
문화, 체육, 반려동물	서적, 음반, DVD	신문 및 출판;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6.40
	박물관,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료 등	영화상영; 문화서비스(국공립);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기타 문화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8.95
	경륜, 경정, 경마권 등	오락 서비스	10.52
	복권구입	문화서비스(국공립)	3.46
	신문, 잡지 정기 구독	신문 및 출판	5.71
	체육활동비(수강료, 동호회비 등)	스포츠 서비스	10.28
	음악, 문화활동비(수강료, 동호회비 등)	문화서비스(국공립);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기타 문화서비스; 오락 서비스	9.02
	반려동물	사료; 의료 및 보건(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	5.60
가전제품	TV	TV	10.29
	냉장고, 김치냉장고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10.30
	세탁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0.30
	에어컨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0.30
	카메라	사진기 및 영상기	10.25
	공기청정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0.30
	기타 가전제품	영상기기; 오디오 및 음향기기; 주방용 및 난방용 전기기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0.34
	가전제품 렌탈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10.15

〈표 IV-2〉의 계속

(단위: %)

재정패널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상품	유효세율
통신장비	휴대폰	이동전화기	10.24
	컴퓨터(태블릿PC, 스마트패드, 노트북, 데스크톱 등)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주변기기	10.28
	기타장비(스마트워치, 프린터, 공유기 등)	컴퓨터 주변기기; 유선통신기기;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10.39
가구, 약기, 스포츠 레저 장비	가구	목재 가구; 금속 가구; 기타 가구	10.33
	가구 구입(인테리어 비용 포함된 경우) 및 인테리어 비용	목재 가구; 금속 가구; 기타 가구; 모형 및 장식용품;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10.33
	약기	약기	10.39
	스포츠레저장비(스키, 골프용품 등)	운동 및 경기용품	10.37
의류, 잡화 및 장신구	의류	봉제 의류; 편조의류; 가죽의류; 모피의류 및 모피제품; 세탁	10.35
	잡화	의복 관련 장신품; 가방 및 핸드백; 신발; 기타 가죽제품	10.41
	장신구	시계; 귀금속 및 보석	10.35
화장품 및 이미용	화장품	화장품	10.30
	이미용	미용관련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10.34
여행(신혼 여행 제외)	국내여행	항공운송서비스; 숙박; 기타 문화서비스;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오락 서비스	8.84
	국외여행	항공운송서비스; 숙박; 기타 문화서비스;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오락 서비스	8.84
보육, 교육	공교육 수업료	교육서비스(국공립); 교육서비스(비영리)	2.47
	공교육 급식비	일반음식점	11.10
	공교육 기타	봉제 의류; 문구용품; 신문 및 출판	9.79
	사교육비	신문 및 출판; 교육서비스(산업)	4.40
	비가구원 공교육비	봉제 의류; 문구용품; 일반음식점; 신문 및 출판; 교육서비스(국공립); 교육서비스(비영리)	7.83
	비가구원 사교육비	신문 및 출판; 교육서비스(산업)	4.40
보건의료	한약재	의약품	10.40
	성형수술	의료 및 보건(국공립);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	5.22
	치과진료	의료 및 보건(국공립);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4.47
	입원진료	의료 및 보건(국공립);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4.47
	외래진료	의료 및 보건(국공립);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4.47
	약제	의약품	10.40
	건강검진비	의료 및 보건(국공립);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4.47

〈표 IV-2〉의 계속

(단위: %)

재정패널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상품	유효세율
혼인, 장례, 이사	예식, 예단, 폐백, 폐물, 신혼여행 비용 등	시계; 귀금속 및 보석; 항공운송서비스; 일반음식점; 숙박; 기타 문화서비스;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오락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10.14
	혼인을 위한 가구	목재 가구; 금속 가구; 기타 가구	10.33
	혼인을 위한 가전	TV;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주방용 및 난방용 전기기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10.32
	장례	기타 개인 서비스	10.32
	이사	도로화물 운송서비스; 보관 및 창고 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10.20
가사 도우미 서비스	간병 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가사서비스	3.65
	가사 도우미	가사서비스	10.00
	육아 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가사서비스	3.65
보험	민간보험료	생명보험; 연금기금; 비생명보험	3.44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및 작성

1. 〈표 IV-1〉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기초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5차 연도 재정패널 통합 설문지」 2023.

나.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

가계는 유류 등의 다양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에너지세를 납부한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에너지 소비지출 금액을 조사하는데, 이 조사 항목에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지출과 가정의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등유, LPG,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재정패널조사」에 나타난 지출금액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의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지출금액에 포함된 가계의 에너지세 부담을 추정한다.

가계의 에너지세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의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세가 종가세가 아닌 사용량에 부과하는 종량세이기 때문이다. 「재정패널조사」에는 가계가 에너지 사용에 지출한 금액 정보만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이 금액을 〈표 IV-3〉에 나타난 연평균 에너지 가격으로 나누어 사용량을 추정한다. 한편 가정용 LPG의 경우 「재정패널조사」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조사하지만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또한 이를 구분하여 과

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표 IV-4>에 나타난 가정이 소비한 프로판과 부탄의 비중을 이용해 이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도시가스 또한 취사용과 주택난방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재정패널조사」는 이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에는 두 요금이 같으며 개별소비세 또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아 본 연구는 취사용과 주택난방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가계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세 부담은 앞의 방법으로 추정된 에너지 사용량에 <표 IV-5>의 세목별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본 연구가 고려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부담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분이 포함된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연중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연중 시기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가계의 세부담도 달라진다. 하지만 「재정패널조사」를 통해서도 각 가계의 연중 시기별 에너지 사용량을 알 수 없어 본 연구는 각 가계의 에너지 소비량이 연중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연간 세율을 일할 가중평균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부담을 추정한다.

<표 IV-3> 에너지 소비자가격

(단위: 원/L, 원/kg)

구분	무연보통 휘발유 (원/L)	자동차용 경유 (원/L)	실내등유 (원/L)	프로판 (원/kg)	부탄		도시가스	
					일반용 (원/kg)	자동차용 (원/L)	취사 (원/kg)	주택난방 (원/kg)
재정패널 분류	수송용 휘발유	수송용 경유	난방용 유류비	가정용 LPG	수송용 LPG	도시가스요금		
2019년	1,472.44	1,340.52	961.66	1,869.92	2,140.36	806.27	855.01	855.01
2020년	1,381.39	1,189.65	853.80	1,851.15	2,148.04	790.79	824.59	824.59
2021년	1,590.56	1,391.40	946.82	2,092.30	2,415.08	932.24	778.07	778.07

주: 1. 휘발유, 경유, 등유는 주유소 판매가격

2. 프로판과 일반용 부탄은 판매소 판매가격

3. 자동차용 부탄은 충전소 판매가격

4. 도시가스 가격은 1kg=54.7MJ를 이용하여 환산하며, 서울시 기준 일할 가중평균 가격임

자료: 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내석유통계」, <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검색일자: 2023. 4. 25.

2.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요금표」, <http://www.citygas.or.kr/index.jsp>, 검색일자: 2023. 4. 25.

〈표 IV-4〉 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 소비

(단위: 천배럴, TJ, %)

구분	가정 부문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도시가스(LNG)		
	프로판	부탄	프로판 비중	취사	주택난방	취사 비중
2019년	7,106	187	97.44	76,462	362,278	17.43
2020년	7,000	162	97.74	67,023	389,350	14.69
2021년	5,882	120	98.00	66,397	398,489	14.28

자료: 1. 산업통산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에너지통계연보』, 2020, p. 115, 제2장 3-5
 2. 산업통산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에너지통계연보』, 2021, p. 133, 제2장 3-5
 3. 산업통산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에너지통계연보』, 2022, p. 69, 제3장 4; p. 116, 제4장 4-5

〈표 IV-5〉 유종별 유류세율 변화

유종	시행일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주행분	합계
휘발유(원/L)	2018. 11. 6.	450.00	-	67.50	117.00	634.50
	2019. 5. 7.	492.00	-	73.80	127.92	693.72
	2019. 9. 1.	529.00	-	79.35	137.54	745.89
	2021. 11. 12.	423.00	-	63.45	109.98	596.43
경유(원/L)	2018. 11. 6.	319.00	-	47.85	82.94	449.79
	2019. 5. 7.	349.00	-	52.35	90.74	492.09
	2019. 9. 1.	375.00	-	56.25	97.50	528.75
	2021. 11. 12.	300.00	-	45.00	78.00	423.00
등유(원/L)	2014. 7. 1.	-	63.00	9.45	-	72.45
프로판(원/kg)	2014. 7. 1.	-	14.00	-	-	14.00
부탄 (원/kg)	2018. 11. 6.	-	234.00	35.10	-	269.10
	2019. 5. 7.	-	256.00	38.40	-	294.40
	2019. 9. 1.	-	275.00	41.25	-	316.25
	2021. 11. 12.	-	220.00	33.00	-	253.00
수송용 (원/L)	2018. 11. 6.	-	136.66	20.50	-	157.16
	2019. 5. 7.	-	149.50	22.43	-	171.93
	2019. 9. 1.	-	160.60	24.09	-	184.69
	2021. 11. 12.	-	128.48	19.27	-	147.75
발전용 외 천연가스(원/kg)	2014. 7. 1.	-	42.00	-	-	42.00

주: 1.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기준
 2.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유류분(프로판과 천연가스 제외)의 15%
 3.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조정세율 기준)
 4. 수송용 부탄은 1L=0.584kg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개별소비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교육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교통에너지환경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지방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다. 주류에 대한 소비세

주류에 대한 소비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정해야 한다. 2019년까지는 모든 주류의 주세가 종가세로 부과되었지만 2020년부터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는 종량세로 부과되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류의 과세표준 추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주세가 종가세로 부과될 때 해당 주류의 과세표준은 해당 주류의 출고가격이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주류에 대한 소비지출 금액 정보가 있는데, 이는 소매가격에 해당한다. 소매가격에는 유통마진과 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가계가 소비한 주류의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주류 소비지출 금액에서 식 (IV-12)를 통해 유통마진과 세금을 제거해야 한다. 이 식에서 $C_{h,i}$ 는 주류 i 에 대한 가계 h 의 과세표준이고, $EX_{h,i}$ 는 해당 가계의 해당 주류에 대해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 τ_i 는 주류 i 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 π_i 는 유통마진율, η_i 는 주세율, μ_i 는 부가세인 교육세율을 의미한다.

$$C_{h,i} = \frac{EX_{h,i}}{(1 + \tau_i)[1 + \pi_i + \eta_i(1 + \mu_i)]} \quad \text{식 (IV-12)}$$

위 식을 통해 과세표준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통마진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유통마진은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한다. 「산업연관표」는 기본부문에서 주류를 소주, 맥주, 기타 주류로 분류한다. 각 주종별 유통마진은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 투입산출표의 도소매마진과 화물운임의 합으로 정의하며, 유통마진율은 이렇게 계산된 유통마진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투입산출표의 총공급계로 나누어 도출한다. 이렇게 추정한 주종별 유통마진율은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6〉 「산업연관표」의 주종별 유통마진율

(단위: %)

상품	유통마진율
소주	50.11
맥주	50.78
기타 주류	52.01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구매자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기초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는 2020년부터 종량세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은 「재정패널조사」의 소비지출 금액을 소비자가격으로 나누어 도출한다. 다만 탁주와 맥주 또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연중 가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탁주와 맥주 중 가정에서 소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나타난 매년 7월 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정한다.

〈표 IV-7〉 탁주와 맥주의 소비자가격

(단위: L, 원)

구분		탁주	맥주
		서울장수생막걸리	카스 프레쉬 6캔
용량(L)		0.75	2.13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2020년 7월 3일	1,388	9,823
	2021년 7월 2일	1,715	9,815
1L당 금액	2020년	1,851	4,612
	2021년	2,287	4,608

자료: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https://www.price.go.kr/tprice/portal/main/main.do>, 검색일자: 2023. 5. 13.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앞에서 논의한 방법으로 추정한 과세표준에 〈표 IV-9〉의 세율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주류에 대한 소비세에는 주세와 함께 주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도 포함된다. 연중 세율에 변화가 발생해 세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일할 가중평균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재정패널조사」는 주류를 맥주·소주·양주, 와인, 막걸리·전통주 등 기타 주류 등 세 가지로 조사하여 「산업연관표」 및 주세의 주종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상의 주류별 출고금액, 주세와 교육세 정보에 <표 IV-6>의 유통마진율과 부가가치세 명목세율 10%를 적용하여 주종별 소비금액을 추정 후 이를 기준으로 맥주·소주·양주는 맥주, 소주, 양주로, 그리고 막걸리·전통 등 기타 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때 「재정패널조사」의 주류 소비지출금액을 분해한 비율은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8> 「재정패널조사」 주류 소비지출금액 분해 비율

(단위: %)

「재정패널조사」 지출항목	세부 구분	구성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맥주·소주·양주	맥주	49,34	47,88	49,36
	소주	50,34	51,84	50,18
	양주	0,32	0,27	0,47
막걸리·전통주 등 기타 주류	탁주	70,05	72,55	71,92
	약주	10,83	9,13	10,02
	청주	19,11	18,32	18,07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1. <표 IV-6>
2. 국세청, 「국세통계」, 10.1.1 주세 신고 현황[200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188&conn_path=2, 검색일자: 2023. 9. 15.

<표 IV-9> 주종별 주세율 변화

주종	시행일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합계
탁주	2004. 1. 1.	출고가	5%	-	5%
	2020. 1. 1.	출고량(1KL당)	41,700원	-	41,700원
	2021. 3. 1.	출고량(1KL당)	41,900원	-	41,900원
맥주	2004. 1. 1.	출고가	72%	21,6%	93,6%
	2020. 1. 1.	출고량(1KL당)	830,300원	249,090원	1,079,390원
	2021. 3. 1.	출고량(1KL당)	834,400원	250,320원	1,084,720원
약주	2004. 1. 1.	출고가	30%	-	30%
과실주·청주	2004. 1. 1.	출고가	30%	3%	33%
증류주	2004. 1. 1.	출고가	72%	21,6%	93,6%

주: 탁주와 약주의 교육세는 비과세, 과실주와 청주의 교육세는 주세의 10%, 맥주와 증류주의 교육세는 주세의 30%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교육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주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주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라.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담배 중 껴련과 껴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가계의 부담에 포함하여 분석한다.⁵⁾ 담배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소비량을 추정해야 한다. 「재정패널조사」는 담배 소비지출 금액과 함께 주로 구입한 담배의 단위당(1갑당) 가격도 조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가계의 담배 소비량을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담배의 소비량에 <표 IV-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계가 담배를 소비하면서 부담한 제세부담금을 추정한다.

<표 IV-10>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단위: 원)

구분	개별 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업연초 부담금	합계
껴련 (20개비당)	594	1,007	443	841	24.4	5	2,914.40
전자담배	껴련형 (20개비당)	529	897	395	750	-	2,595.40
	액상형 (니코틴 용액 1mL당)	370	628	276	525	-	1,799

주: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개별소비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지방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국민건강증진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자원의%20절약과%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담배사업법%20시행규칙#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마.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세

가계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자동차

5) 「재정패널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지출액도 조사하나 관측치가 거의 없고 니코틴 용액 함량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없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입에 대한 세금은 증가세로 주류 중 증가세에 대한 세부담 추정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먼저 추정해야 한다.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식 (IV-13)과 (IV-14)와 같이 도출되는데, 이는 주세의 출고가격을 도출하는 식 (IV-12)와 매우 유사하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 (IV-13)과 (IV-14)에서 우변의 분모에 취득세율을 의미하는 θ_i 가 추가되어 있다. 식 (IV-13)과 (IV-14)에서 우변의 다른 항들은 식 (IV-12)와 정의가 같다. 한편 식 (IV-13)과 (IV-14)에서 $D_{h,i}^d$ 와 $D_{h,i}^f$ 는 각각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이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의 차이는 유통마진의 포함 여부로 구분된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에는 유통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식 (IV-13)의 자동차 구입금액에서 유통마진을 제거하지 않지만, 수입차의 과세표준에는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 (IV-14)와 같이 유통마진율을 적용하여 구입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제거한다. 자동차의 유통마진율은 앞에서 살펴본 주류의 유통마진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되는데, 그 결과는 <표 IV-11>에 제시되어 있다.

$$D_{h,i}^d = \frac{EX_{h,i}}{(1 + \tau_i)[1 + \eta_i(1 + \mu_i) + \theta_i]} \quad \text{식 (IV-13)}$$

$$D_{h,i}^f = \frac{EX_{h,i}}{(1 + \tau_i)[1 + \pi_i + \eta_i(1 + \mu_i) + \theta_i]} \quad \text{식 (IV-14)}$$

<표 IV-11> 「산업연관표」의 자동차 유통마진율

(단위: %)

상품	유통마진율
승용차	4.96
모터사이클	27.58

자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구매자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기초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계가 부담한 세금은 앞에서 도출한 과세표준에 <표 IV-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재정패널조사」는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과 함

계 이륜차 여부 및 배기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 구입 시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추정한다.

〈표 IV-12〉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

구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승용	비승용	
자동차	1,000cc 초과	5%	1.5%	7%	5%
	1,000cc 이하	-	-	4%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5%	1.5%	5%	
	125cc 이하	-	-	2%	

- 주: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는 기본세율이며 소비세 도출 시 탄력세율 반영
 2.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 인하율은 2019년 30%, 2020년 1~2월 0%, 2020년 3~6월 70% 및 감면한도 100만원, 2020년 7~12월 30%, 2021년 30% 및 감면한도 100만원을 각각 적용
 3. 상기 자동차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자동차의 취득세율은 2%임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abMenuId=93&query=개별소비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3. 23,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17073,20200323\)](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17073,20200323)), 검색일자: 2023. 8. 1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교육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지방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2. 사회적 현물이전

가. 교육·보육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교육·보육서비스에는 영아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와 누리과정 및 초·중등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보육서비스로 인해 가계가 받는 혜택을 추정한다. 추정 방법은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와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의 방법을 따른다.⁶⁾ 이는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등을 토대로 추정한 학교급별·지역별 1인당 교육·보육혜택 금액을 해당 특성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6) 이하의 교육·보육서비스 혜택 추정 방법은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 제3장, pp. 31~65)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영아(만 0~2세)의 1인당 보육혜택은 보육예산을 어린이집 영아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보육예산은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지원’의 합으로 정의하며 어린이집 영아 수와 함께 『보육통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다. 이렇게 추정된 영아 1인당 보육수혜 또한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의 만 0~2세 아동에게 할당한다.

유아(만 3~5세)의 1인당 교육혜택 또한 지역별로 총 교육비를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동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총 교육비는 누리과정 예산액과 국공립 유치원 교원인건비의 합이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인건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인건비 추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누리과정 예산액은 각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 지원’ 사업의 세출예산액 자료를 활용한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동 수는 각 교육청 『교육통계연보』의 ‘연령별 원아 수’와 『보육통계』의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추정된 유아 1인당 교육혜택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의 만 3~5세 아동에게 할당한다.

초·중·고등학교의 1인당 교육혜택은 지역별로 각 교육청의 학교급별 교육지출비와 교원인건비의 합을 학생 수로 나누어 추정한다. 교육지출비는 17개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에서 ‘국(공)립학교 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출합계 자료를 이용한다. 교원인건비는 동일한 『교육통계연보』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교육지출비는 학교급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교원인건비는 그렇지 않아 이를 학교급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원인건비는 학교급별 교원 호봉 비율을 이용해 안분한다. 교원 호봉 비율은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에서 ‘호봉별 교원 수’ 자료와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액 자료를 이용해 도출한다. 학교급별 국공립 학생 수는 각 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1인당 교육혜택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적용할 때는 국공립 학생 수의 비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대학 및 대학원 1인당 교육혜택은 1인당 교육비에서 1인당 등록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교육비와 등록금, 재학생 수에 대한 정보는 대학알리미의 공시 정보를 통해 확보한다. 교육비는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의 합으로 계산한다.

〈표 IV-13〉 교육단계별·지역별 1인당 교육수혜 금액

(단위: 만원)

지역	영아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2019년	2021년
서울특별시	426.3	467.2	498.0	883.1	819.1	879.4	822.0	777.8	801.2	326.7	426.8	481.8
부산광역시	386.9	439.9	450.2	906.0	906.0	983.7	928.2	870.7	933.9	576.0	634.6	773.9
대구광역시	390.6	428.8	467.1	895.2	837.2	950.8	811.2	769.5	846.3	450.1	540.3	676.2
인천광역시	386.9	434.1	469.2	859.3	816.4	770.1	914.4	845.8	733.7	831.4	933.4	817.4
광주광역시	414.0	457.4	488.9	857.9	801.2	884.7	758.6	709.5	760.1	356.7	414.7	536.9
대전광역시	398.6	454.4	472.7	938.1	891.6	975.7	902.1	849.1	875.4	600.6	625.4	752.2
울산광역시	395.2	455.8	486.6	917.7	810.5	935.6	1,021.4	899.7	1,004.9	918.9	918.8	1,126.2
세종특별자치시	516.1	564.3	619.6	882.5	797.6	837.4	1,084.4	968.9	982.7	1,281.6	1,172.8	1,222.6
경기도	526.3	616.9	654.0	388.0	444.3	499.3	792.7	779.6	777.7	786.6	759.7	788.4
강원도	468.7	504.9	552.5	1,297.3	1,264.1	1,483.6	1,326.9	1,222.5	1,335.5	1,210.9	1,256.4	1,487.0
충청북도	456.8	508.9	564.1	1,114.0	991.8	1,094.9	1,165.7	1,055.5	1,101.7	929.5	930.2	1,070.5
충청남도	470.1	538.9	566.6	1,005.5	1,000.8	1,087.4	964.4	920.5	922.0	918.5	1,006.9	1,033.8
전라북도	480.4	531.2	578.7	1,192.1	1,176.2	1,263.3	1,011.5	985.6	1,011.5	600.9	679.7	763.6
전라남도	520.8	580.9	617.7	1,254.8	1,285.2	1,382.0	1,367.8	1,343.2	1,374.2	1,054.7	1,186.5	1,329.1
경상북도	443.6	484.8	542.1	1,182.2	1,137.6	1,250.0	1,065.4	1,023.6	1,070.6	682.2	765.7	900.9
경상남도	435.6	487.5	509.6	1,011.0	977.8	1,030.0	906.9	866.5	854.8	725.1	787.6	858.2
제주특별자치도	435.1	466.2	505.6	1,089.9	1,026.1	1,061.0	1,064.9	948.6	962.3	752.0	809.0	919.5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9/2020/2021』, 2019~2021.
2. 교육부, 『2020/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21~2022.
3. 교육청(각 지방자치단체), 『2019/2020/2021 교육통계연보』, 2019~2021.
4.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교육부)』, 2020.
5.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년/2020년/2021년 12월 말 기준』, 2020~202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공무원%20보수규정#undefined>, 검색일자: 2023. 6. 26.
7. 대학일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lang=ko>, 검색일자: 2023. 6. 26.
8.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교육재정, 결산공시, 누리과정지원, <https://eduinfo.go.kr/portal/mng/mngInTCoCisgPage.do>, 검색일자: 2023. 6. 26.

나. 의료서비스

본 연구에 포함된 의료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공단부담금,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지원이다. 오중현 외(2017)는 의료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지원만 의료혜택에 포함하였고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와 오중현·김우현·권성오(2019)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선행연구보다 확장하여 분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의료서비스 혜택 추정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 의료급여

가계가 받은 의료급여 혜택은 매년 발행되는 『의료급여통계』와 「재정패널조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의료급여통계』는 성별·연령대별로 입내원 일수와 기금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입내원 1일당 기금부담금을 산출한다. 「재정패널조사」는 의료급여 대상 가구원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연간 횟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가계가 의료급여를 통해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의 가치는 「재정패널조사」에 나타난 의료급여 대상자의 연간 치료 목적 병원 방문 횟수에 해당 가구원들의 성별·연령대별 입내원 1일당 기금부담금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재정패널조사」에서 의료급여 대상 가구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간 치료 목적 병원 방문 횟수를 어떤 가구원에 며칠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에 나타난 연간 치료 목적 방문 횟수를 『의료급여통계』에 나타난 성별·연령대별 입내원 일수를 가중치로 각 가구원에 안분하여 추정한다. 향후 「재정패널조사」에서 의료급여 대상 가구원과 해당 가구원의 연간 치료 목적 방문 횟수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의료급여 추정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4〉 성별·연령대별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단위: 일, 억원, 만원)

구분	입내원일수(일)			기금부담금(억원)			입내원 1일당 기금부담금(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0세	남성	40,143	26,329	19,773	40.4	36.8	25.9	10.1	14.0	13.1
	여성	34,168	22,630	16,863	38.6	28.4	30.2	11.3	12.5	17.9
1~4세	남성	516,667	292,065	255,495	153.1	100.4	97.4	3.0	3.4	3.8
	여성	455,003	251,130	219,635	130.1	83.5	77.6	2.9	3.3	3.5
5~9세	남성	699,057	470,168	394,409	234.2	179.2	172.1	3.4	3.8	4.4
	여성	634,858	416,499	347,155	193.9	145.5	134.6	3.1	3.5	3.9
10~14세	남성	703,592	521,427	520,245	272.3	243.8	280.1	3.9	4.7	5.4
	여성	648,675	461,592	454,935	222.7	193.6	205.5	3.4	4.2	4.5
15~19세	남성	1,013,549	750,304	708,678	431.5	369.9	362.5	4.3	4.9	5.1
	여성	1,095,999	802,993	756,716	393.8	343.8	343.6	3.6	4.3	4.5
20~24세	남성	793,495	719,383	662,469	412.6	415.6	405.9	5.2	5.8	6.1
	여성	944,959	854,832	823,220	395.3	404.2	433.3	4.2	4.7	5.3
25~29세	남성	569,043	549,977	548,307	339.6	360.2	386.2	6.0	6.5	7.0
	여성	551,564	533,725	526,450	276.6	298.7	322.2	5.0	5.6	6.1
30~34세	남성	640,123	609,501	603,987	428.1	433.8	470.1	6.7	7.1	7.8
	여성	660,243	607,928	598,062	374.2	379.0	409.0	5.7	6.2	6.8
35~39세	남성	1,226,101	1,119,557	1,027,642	875.5	859.6	844.5	7.1	7.7	8.2
	여성	1,278,946	1,149,308	1,038,976	748.4	745.2	734.8	5.9	6.5	7.1
40~44세	남성	2,086,693	1,962,895	1,886,810	1,515.5	1,527.0	1,561.3	7.3	7.8	8.3
	여성	2,041,232	1,871,828	1,810,433	1,192.4	1,212.1	1,286.4	5.8	6.5	7.1
45~49세	남성	4,243,218	3,882,085	3,495,284	3,063.9	2,999.0	2,934.6	7.2	7.7	8.4
	여성	3,651,958	3,303,935	3,038,624	2,134.8	2,135.2	2,134.7	5.8	6.5	7.0
50~54세	남성	6,716,221	6,431,151	6,274,868	4,910.9	5,046.7	5,260.5	7.3	7.8	8.4
	여성	4,894,293	4,702,710	4,704,308	2,875.9	3,032.7	3,253.3	5.9	6.4	6.9
55~59세	남성	8,993,246	8,602,004	8,325,082	6,597.6	6,747.6	6,979.0	7.3	7.8	8.4
	여성	5,838,057	5,533,954	5,380,011	3,525.2	3,628.3	3,793.1	6.0	6.6	7.1
60~64세	남성	8,961,220	9,462,440	10,093,555	6,733.1	7,561.0	8,501.1	7.5	8.0	8.4
	여성	6,484,291	6,544,422	6,893,161	4,016.6	4,399.3	4,940.2	6.2	6.7	7.2
65~69세	남성	6,240,338	6,913,823	7,706,302	4,837.1	5,742.1	6,867.4	7.8	8.3	8.9
	여성	6,142,366	6,326,329	6,818,097	4,000.9	4,510.3	5,200.4	6.5	7.1	7.6
70~74세	남성	4,784,816	5,026,738	5,252,131	3,726.2	4,205.0	4,681.3	7.8	8.4	8.9
	여성	6,698,717	6,474,406	6,458,929	4,499.3	4,685.6	5,003.1	6.7	7.2	7.7
75~79세	남성	4,090,184	3,981,627	3,919,000	3,214.2	3,386.0	3,568.5	7.9	8.5	9.1
	여성	8,165,065	7,360,893	6,922,940	5,690.1	5,561.0	5,611.7	7.0	7.6	8.1
80~84세	남성	2,625,181	2,660,027	2,786,637	2,104.9	2,280.8	2,555.4	8.0	8.6	9.2
	여성	7,682,444	7,143,573	7,117,112	5,566.0	5,570.8	5,938.7	7.2	7.8	8.3
85~89세	남성	1,273,875	1,275,122	1,306,006	1,033.2	1,110.5	1,204.4	8.1	8.7	9.2
	여성	5,283,557	5,265,625	5,402,856	3,962.2	4,281.5	4,624.7	7.5	8.1	8.6
90~94세	남성	387,473	418,498	441,071	322.9	370.9	426.8	8.3	8.9	9.7
	여성	2,319,554	2,454,117	2,599,198	1,775.5	2,021.4	2,222.1	7.7	8.2	8.5
95~99세	남성	68,829	66,217	69,450	56.4	56.1	65.8	8.2	8.5	9.5
	여성	605,230	641,414	683,888	462.0	512.2	570.6	7.6	8.0	8.3
100세 이상	남성	9,379	7,680	10,209	6.8	6.5	7.7	7.3	8.4	7.5
	여성	96,305	98,504	113,228	70.7	79.4	93.1	7.3	8.1	8.2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의료급여통계』, 제IV편 제9표 연령별 성별 진료형태별 진료실적 (계), 2020, pp. 400~401
 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의료급여통계』, 제IV편 제9표 연령별 성별 진료형태별 진료실적 (계), 2021, pp. 400~401
 3.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의료급여통계』, 제IV편 제9표 연령별 성별 진료형태별 진료실적 (계), 2022, pp. 400~401

2) 국민건강보험

본 연구는 가계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사회적 현물이전에 포함한다. 가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및 「건강보험통계」 자료와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의료비와 약제비 관련 지출금액 정보를 이용한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입원, 외래, 약국 이용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건강보험보장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 입원, 외래, 약국 이용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건강보험보장률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가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재정패널조사」는 각 가계가 지출한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재정패널조사」는 보건의료비 항목으로 치과진료비와 성형수술비, 한약재, 건강검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에 나타난 보건의료비는 가계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의 합이라고 가정한다. 다만 본 연구는 입원치료비와 외래진료비, 약제비와 함께 치과진료비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있고, 성형수술비와 한약재, 건강검진비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가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규모는 식 (IV-15)로 추정된다. 이 식에서 MB_h 는 가계 h 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이다. 이 식의 우변에서 하첨자 g 는 성별, a 는 연령대, i 는 보건의료비 지출 항목을 의미하며, $MEX_{h,i,a,g}$ 는 해당 성별 및 연령대에 속한 가구원이 해당 보건의료비 항목에 지출한 금액이고, $\alpha_{i,a,g}$ 는 이에 대응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적용한 건강보험보장률의 값은 〈표 IV-15〉에 제시되어 있다. 입원, 외래,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보장률 정보는 성별 및 연령대별로 존재하지만, 치과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보장률 정보는 그렇지 않아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MB_h = \sum_{i=1}^N \sum_{a=1}^M \sum_{g=1}^L MEX_{h,i,a,g} \left(\frac{\alpha_{i,a,g}}{1 - \alpha_{i,a,g}} \right) \quad \text{식 (IV-15)}$$

「재정패널조사」는 보건의료비 지출금액을 가구원이 아닌 가구단위에서 조사한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보장률이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지출에 대해서는 성별 및 연령대별 지출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표 IV-16>의 성별 및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금액을 가구원에게 안분한다. <표 IV-16>은 『건강보험통계』의 급여비 통계와 해당 항목의 건강보험보장률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부담한 성별 및 연령대별 의료비 지출금액을 추정하고,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에 나타난 인구수를 적용해 산출한 성별 및 연령대별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혜택 규모의 추정 방법은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오종현 외(2017)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재정패널조사」의 보건의료비 지출금액을 이용하여 가계의 의료혜택 규모를 추정하였지만 성별 및 연령대별 의료비 지출금액과 건강보험보장률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 동일한 건강보험보장률을 적용하였다. 유경준·김서영·홍경희(2018)는 성별과 연령대별 건강보험보장금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혜택 규모를 추정하였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혜택 규모를 추정하다 보니 가구의 의료비 지출금액 정보가 없어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보장금을 할당하여 의료혜택을 추정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금액 정보와 함께 성별 및 연령대별 건강보험보장률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의료혜택 규모를 추정하여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다만 본 연구의 방법론 때문에 의료혜택 규모가 작게 추정되는 한계도 존재한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실제로 조사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의료혜택을 추정하다 보니 표본선택에 따른 편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재정패널조사」에 응답한 가구는 대체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가구원 중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재정패널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매우 높은 가구는 「재정패널조사」의 표본에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 나타난 보건의료비를 이용해 의료혜택 규모를 추정할 경우 실제 의료혜택 규모보다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뒤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15〉 성별·연령대별 건강보험보장률

(단위: %)

구분	연령구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0~5세	74.9	80.3	80.0	75.8	80.1	79.6	5.4	5.1	4.8	5.0	4.8	4.5	19.7	14.6	15.2	19.2	15.1	15.9
	6~18세	73.6	72.2	74.1	739	748	75.6	11.3	12.5	12.4	11.3	11.9	11.8	15.1	15.3	13.5	14.8	13.3	12.6
	19~44세	62.4	62.4	63.1	61.9	62.9	63.7	18.0	18.7	17.6	14.4	15.6	15.6	19.6	18.9	19.3	23.7	21.5	20.7
	45~64세	65.7	67.1	65.9	55.6	58.8	56.2	15.3	16.0	15.0	14.7	15.8	14.6	19.0	16.9	19.1	29.7	25.4	29.2
	65~74세	72.9	73.2	73.2	68.2	67.8	67.1	15.6	15.8	15.2	16.8	16.8	16.2	11.5	11.0	11.6	15.0	15.4	16.7
	75~84세	75.0	75.2	76.8	72.3	72.7	73.4	17.1	16.5	16.1	18.8	18.5	18.0	7.9	8.3	7.1	8.9	8.8	8.6
	85세 이상	73.6	74.0	75.6	72.3	72.7	73.4	18.5	18.4	18.3	21.2	19.8	20.1	7.9	7.6	6.1	6.5	7.5	6.5
	외래	60.2	57.7	58.4	62.4	58.9	60.5	17.7	16.4	16.3	18.2	16.5	16.4	22.1	25.9	25.3	19.4	24.6	23.1
약국	0~5세	50.9	47.6	48.7	48.3	45.1	45.4	25.1	25.0	25.7	24.8	25.6	25.7	24.0	27.4	25.6	26.9	29.3	28.9
	6~18세	46.3	47.2	45.5	44.1	47.2	45.6	22.3	22.8	22.3	20.6	21.7	22.4	31.4	30.0	32.2	35.3	31.1	32.0
	19~44세	49.8	50.6	49.9	46.9	48.6	48.3	22.7	22.5	23.2	21.5	22.0	22.7	27.5	26.9	26.9	31.6	29.4	29.0
	45~64세	61.5	61.0	57.9	58.5	57.8	55.7	21.6	21.6	21.3	21.4	21.7	21.5	16.9	17.4	20.8	20.1	20.5	22.8
	65~74세	65.6	64.8	63.6	61.9	61.5	60.8	21.9	21.2	21.1	22.4	22.1	22.0	12.5	14.0	15.3	15.7	16.4	17.2
	75~84세	66.5	65.4	65.6	62.8	63.1	63.3	22.4	22.7	22.7	24.7	23.8	24.1	11.1	11.9	11.7	12.5	13.1	12.6
	85세 이상	73.9	75.9	75.0	74.0	76.2	75.0	24.9	22.8	23.1	25.0	22.7	23.0	1.2	1.3	1.9	1.0	1.1	2.0
	약국	67.6	66.7	67.1	67.2	65.9	67.1	29.7	31.1	29.1	29.8	31.6	29.6	2.7	2.2	3.8	3.0	2.5	3.3
치과의원	0~5세	67.4	68.0	66.9	65.3	68.8	65.8	28.7	28.1	28.7	28.0	27.1	28.1	3.9	3.9	4.4	6.7	4.1	6.1
	6~18세	68.7	68.7	67.6	69.0	69.6	68.4	29.0	28.4	29.0	28.6	27.9	28.8	2.3	2.9	3.4	2.4	2.5	2.8
	19~44세	70.1	69.9	69.2	70.1	70.5	69.7	28.2	27.7	28.0	28.7	27.9	28.5	1.7	2.4	2.8	1.2	1.6	1.8
	45~64세	70.3	70.9	70.4	70.2	70.6	69.9	28.1	27.3	27.6	28.4	28.0	28.5	1.6	1.8	2.0	1.4	1.4	1.6
	65~74세	70.0	70.6	70.4	69.9	69.8	69.9	28.3	27.8	27.8	28.7	28.6	28.3	1.7	1.6	1.8	1.4	1.6	1.8
	75~84세	36.9	36.0	33.2	36.9	36.0	33.2	15.0	14.7	13.6	15.0	14.7	13.6	48.1	49.3	53.2	48.1	49.3	53.2
	85세 이상	36.9	36.0	33.2	36.9	36.0	33.2	15.0	14.7	13.6	15.0	14.7	13.6	48.1	49.3	53.2	48.1	49.3	53.2
	치과의원	36.9	36.0	33.2	36.9	36.0	33.2	15.0	14.7	13.6	15.0	14.7	13.6	48.1	49.3	53.2	48.1	49.3	53.2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0, 〈표 4-2〉~〈표 4-4〉, pp. 137~139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1, 〈표 5-2〉~〈표 5-4〉, pp. 147~149
 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3, 〈표 3-9〉, p. 64.; 〈표 3-40〉~〈표 3-42〉, pp. 147~149

〈표 IV-16〉 성별·연령대별 1인당 의료비지출액

(단위: 만원)

연령구간	입원						외래						약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0~4세	22.5	14.2	17.3	18.6	12.5	15.1	30.0	21.9	27.7	24.9	18.5	22.7	8.4	4.0	5.1	7.7	3.6	4.6
5~9세	5.6	4.0	3.7	4.8	3.2	3.2	35.3	31.0	34.5	38.3	34.6	40.2	7.2	4.5	4.6	6.6	4.0	4.0
10~14세	4.0	3.6	3.9	3.1	2.6	2.9	25.9	23.6	28.0	26.2	24.3	30.3	3.7	2.8	3.1	3.3	2.3	2.5
15~19세	4.7	4.8	5.0	3.2	3.0	3.4	19.3	20.2	23.6	19.3	20.6	25.2	2.9	2.4	2.8	2.8	2.4	2.6
20~24세	7.3	7.5	7.9	6.5	6.4	6.8	20.6	20.7	25.9	28.3	27.3	33.8	2.3	2.2	2.5	3.3	2.6	3.2
25~29세	7.1	7.4	7.9	10.6	10.4	10.6	24.7	25.0	30.0	39.4	38.2	45.7	2.8	2.6	2.9	4.1	3.3	3.9
30~34세	8.2	8.2	9.0	18.8	17.9	18.8	28.3	28.5	34.9	54.3	51.3	62.8	3.5	3.3	3.7	4.9	3.7	4.5
35~39세	10.0	10.1	10.7	17.1	16.7	17.9	31.5	31.5	38.0	53.2	49.4	61.1	4.8	4.6	5.1	5.7	4.4	5.3
40~44세	13.1	13.0	13.6	15.0	14.8	15.7	36.5	35.7	42.9	51.3	47.0	59.3	6.7	6.5	7.2	6.8	5.4	6.6
45~49세	14.2	13.5	15.4	22.9	21.0	25.6	34.6	34.1	39.5	49.0	47.4	55.7	8.2	8.4	9.5	7.2	6.9	7.8
50~54세	19.8	18.9	20.9	29.8	26.5	31.2	40.9	40.4	45.7	60.4	56.8	65.2	10.8	11.0	12.2	10.3	10.0	11.1
55~59세	28.4	26.9	29.8	38.2	33.9	39.6	49.9	48.8	54.4	70.8	65.8	73.6	14.6	14.8	16.2	14.5	14.1	15.5
60~64세	40.8	38.6	42.3	50.4	44.5	51.7	64.7	63.1	69.2	84.2	77.4	86.1	20.1	20.2	21.8	19.3	18.7	20.5
65~69세	40.1	40.2	42.0	39.7	40.6	43.9	65.6	66.5	80.3	78.9	78.2	92.0	25.1	25.8	27.5	24.3	23.9	25.7
70~74세	54.7	54.5	57.2	54.4	55.2	60.2	78.2	78.9	94.0	88.2	86.5	100.3	28.8	30.2	32.6	29.1	29.1	31.3
75~79세	64.6	64.6	61.8	65.0	62.1	61.9	69.7	71.3	80.8	76.6	73.4	81.5	34.0	33.6	35.4	32.7	32.7	35.4
80~84세	85.8	84.4	80.0	92.4	89.3	86.3	68.2	70.1	79.7	65.3	63.6	72.0	38.3	38.4	41.1	33.1	33.7	37.1
85세 이상	132.9	129.2	118.7	139.4	135.5	129.0	55.2	57.7	62.0	40.5	38.1	41.9	35.8	37.1	40.3	28.1	30.0	32.4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표 IV-15〉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약국 소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9&conn_path=2, 검색일자: 2023. 6. 17.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외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8&conn_path=2, 검색일자: 2023. 6. 17.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입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7&conn_path=2, 검색일자: 2023. 6. 17.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 이후),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2, 검색일자: 2023. 6. 17.

3)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의료혜택 또한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표 IV-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성별 및 연령대별, 그리고 의료급여 등의 자격조건과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와 같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1인당 의료혜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재정패널조사」는 가구원과 부모, 조부모 등의 비가구원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기간(개월 수), 해당 가구원 및 비가구원의 성별과 연령(출생연도), 특별현금급여 수급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가구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존재의 여부에 대한 정보도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표 IV-17>의 정보를 적용하여 해당 가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받은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자료의 불완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의료혜택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의료혜택 규모가 다른데 「재정패널조사」의 정보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구원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의 대상자인지는 식별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가구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본 연구는 비가구원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비가구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유사한 규모의 부담이 해당 가구에 발생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때 비가구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의 수급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모두 일반 급여자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표 IV-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인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단위: 만원)

연령대	성별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65세 미만	남자	344.3	362.5	361.6	999.6	1,147.2	1,128.6	400.1	393.0	419.6	1,742.6	2,034.3	2,024.9	511.2	537.7	555.3	1,793.7	1,975.0	2,071.3
	여자	436.5	464.8	454.0	1,177.3	1,298.7	1,324.8	526.4	570.6	395.2	1,613.3	1,768.0	1,001.0	527.7	564.9	578.0	1,905.0	2,087.9	2,114.5
65~69세	남자	361.3	385.1	375.4	1,033.4	1,170.1	1,188.2	428.1	444.5	511.5	1,297.3	1,303.5	1,563.7	490.6	528.7	543.8	1,732.5	1,903.4	1,964.8
	여자	399.9	422.0	411.8	1,240.5	1,329.2	1,297.0	492.0	484.0	456.1	1,966.5	1,899.9	1,445.1	521.7	549.2	553.2	1,869.5	2,024.3	2,046.4
70~74세	남자	370.0	400.3	398.8	1,068.5	1,144.8	1,128.0	403.2	456.9	449.9	1,505.0	1,588.6	1,711.7	503.3	533.9	546.9	1,730.8	1,863.8	1,890.6
	여자	405.7	425.3	417.4	1,234.7	1,319.8	1,323.6	466.8	486.3	493.6	1,639.4	1,863.1	1,535.3	510.7	541.7	559.0	1,868.0	2,006.3	2,026.7
75~79세	남자	365.1	390.9	388.5	1,037.2	1,125.0	1,127.1	405.7	398.5	441.6	1,326.6	1,562.9	1,450.1	476.1	512.9	538.4	1,667.4	1,815.3	1,893.7
	여자	402.9	421.7	419.6	1,211.1	1,308.7	1,314.7	468.9	469.6	491.7	1,519.0	1,669.4	1,644.4	497.9	535.6	548.7	1,827.8	1,923.7	1,974.3
80~84세	남자	354.6	378.9	383.8	1,003.7	1,096.7	1,102.0	362.4	397.1	463.4	1,426.5	1,342.6	1,311.5	457.9	497.1	512.5	1,550.0	1,643.7	1,734.5
	여자	404.2	425.8	424.9	1,195.2	1,273.4	1,300.5	472.1	485.4	501.9	1,608.7	1,686.1	1,666.5	496.3	534.6	551.9	1,769.3	1,920.8	1,947.4
85세 이상	남자	361.9	387.3	393.4	991.6	1,076.4	1,095.7	414.4	440.6	459.8	1,354.0	1,339.6	1,420.3	453.2	488.8	508.6	1,465.5	1,661.9	1,665.9
	여자	397.7	419.6	425.5	1,177.7	1,266.8	1,313.2	443.6	469.5	492.8	1,628.3	1,689.1	1,724.6	490.7	528.4	545.0	1,763.4	1,891.4	1,941.3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차 계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Ⅲ-3표 연령별 자각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2020, pp. 700~729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Ⅲ-3표 연령별 자각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2021, pp. 700~729
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Ⅲ-3표 연령별 자각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2022, pp. 700~729

다. 주거서비스

가계가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주거서비스 혜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편익으로 추정한다. 임대료 편익은 동일한 환경의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저렴할 경우 그 차이를 의미한다. 「재정패널조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 뒤 그 결과를 유사한 특성의 「재정패널조사」 가구에 연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는 오종현·김우현·권성오(2019)와 유사한 방법인데, 차이점은 그 연구는 최종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가구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최종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에 차이가 있다. 한편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한 연구로는 유승동·김주영(2017), 오종현(2020)이 있다.

1) 1단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임대료 편익 추정

「주거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5만가구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표본의 크기와 제공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9~2021년도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2019년에는 약 6만여가구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2020~2021년에는 5만여가구를 조사해 표본의 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른 표본조사와 비교해 표본의 크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표본이 아닌 임대주택 거주자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제 분석에 활용된 표본 수는 2019년 18,626가구, 2020년 16,060가구, 2021년 14,821가구이다.

임대료 편익은 임대료 결정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지불하는 월간 임대료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종속변수인 월간 임대료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금에 따라 월간 임대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전세 계약

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존재하고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 (IV-16)과 같이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 또한 월간 임대료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이 식에서 $Rent_h$ 는 보증금까지 고려한 가계 h 의 월환산 임대료이며, 우변에서 D_h 는 해당 가계의 전월세 보증금, CR 은 전월세 전환율, M_h 은 실제 해당 가계가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월세 전환율은 <표 IV-18>~<표 IV-20>에 제시되어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과 거주주택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다르다.

$$Rent_h = \frac{D_h \times CR}{12} + M_h \quad \text{식 (IV-16)}$$

본 연구가 설정한 임대료 결정모형은 식 (IV-17)과 같다. 이 식에서 좌변에 있는 $Rent_h$ 는 식 (IV-16)을 통해 계산한 월환산 임대료이다. X_h 는 가계 h 가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며, $D_{h,i}$ 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의미하는 가변수이다. $D_{h,i}$ 는 가계 h 가 유형 i 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유형이 핵심 변수이다. 임대주택 유형으로는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는 다시 분양전환 가능 여부로 구분된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타임대로 구분한다. 즉, 본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총 네 가지를 고려한다. 그 외 임대료를 결정하는 요인인 X_h 에는 가계 h 가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과 유형, 건축연한, 주거환경, 지역 등이 포함된다.

$$\log(Rent_h) = \beta X_h + \sum_{i=1}^N \gamma_i (X_h \times D_{h,i}) + \varepsilon_h, \quad \varepsilon_h \sim N(0, \sigma^2) \quad \text{식 (IV-17)}$$

〈표 IV-18〉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이파트)

(단위: %)

지역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5,1500	4,9667	4,8667	4,3500	4,1833	4,1000	4,2750	4,1417
서울특별시	4,2750	4,1833	4,2167	3,8250	3,7333	3,8417	3,9667	3,8833	3,9333
부산광역시	5,1250	4,9917	4,9083	4,2750	4,1333	3,9250	4,2000	4,1167	4,0000
대구광역시	5,0417	4,7083	4,3667	4,1750	4,0333	4,0833	4,1417	4,0500	4,1833
인천광역시	5,2167	4,9750	4,8000	4,6583	4,5667	4,4167	4,7083	4,5000	4,5333
광주광역시	5,5250	5,4333	5,3000	4,5917	4,2917	4,1167	4,2417	3,8583	3,8500
대전광역시	6,0000	5,7667	5,2083	4,2333	4,0167	3,8333	4,1000	3,7083	3,7417
울산광역시	5,4333	5,2750	4,9833	4,3750	4,0167	3,6583	4,1417	4,1167	3,7000
세종특별자치시	5,0750	4,8083	4,4583	4,6000	4,2917	3,9167	4,5583	4,2583	3,9917
경기도	5,0083	4,7583	4,6917	4,4667	4,2750	4,1500	4,3833	4,2917	4,1500
강원도	7,0750	6,5583	6,3250	5,1417	5,0250	4,8000	4,9250	4,6500	4,5250
충청북도	6,5750	6,5167	6,3917	4,9083	4,7083	4,2833	4,6250	4,4083	4,3750
충청남도	6,8500	6,6667	6,6417	4,7667	4,8667	4,6083	4,9000	4,7500	4,4500
전라북도	6,4750	6,7583	6,4167	5,0167	4,6583	4,6250	4,5250	4,2167	4,5833
전라남도	8,7583	8,2667	8,3500	5,0333	4,6583	4,6917	4,0667	3,9417	3,9250
경상북도	6,3667	6,1417	6,1667	4,7000	4,5250	4,4667	4,3750	4,3583	4,2167
경상남도	5,6000	5,4667	5,2250	4,5833	4,4333	4,1500	4,3917	4,1417	3,9333
제주특별자치도	5,0583	4,9583	4,8917	4,7000	4,7917	4,7417	4,5333	4,4750	4,3750

주: 각 연도별 월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뷰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 https://www.reb.or.k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 검색일자: 2023. 6. 21.

〈표 IV-19〉 지역별 · 규모별 전월세 전환율(연립다세대)

(단위: %)

지역	30㎡ 이하			30㎡ 초과 60㎡ 이하			60㎡ 초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6.4250	5.7583	5.4083	5.5250	5.0583	4.7500	4.9083	4.7167
서울특별시	4.6750	4.2333	4.0250	4.4083	4.0667	3.9000	4.1833	3.9917	3.7333
부산광역시	9.2667	8.6000	7.9917	6.2000	5.8333	5.6917	4.7250	4.9667	4.8333
대구광역시	10.6917	9.9833	8.3333	7.5417	7.3750	6.1333	5.4083	5.7583	5.1667
인천광역시	10.8333	10.7750	9.2333	7.3917	6.6250	6.0667	5.6250	4.9583	4.5417
광주광역시	8.6917	8.1417	9.0667	6.6250	6.4500	6.0917	4.1083	4.8333	4.1917
대전광역시	9.4833	9.2750	8.7000	8.5417	7.9750	7.2417	8.3250	6.1000	5.0083
울산광역시	9.6833	8.6750	8.1250	7.9917	7.8833	7.2750	5.2167	5.5167	4.9083
세종특별자치시	9.9250	6.5750	5.9000	9.8000	9.6417	7.6583	9.1167	12.3500	5.7167
경기도	8.9750	8.1583	8.0500	6.4417	5.8917	5.4417	5.5250	5.2083	4.6167
강원도	11.0500	9.9333	9.6333	8.8667	7.1750	8.0917	6.1250	5.9250	5.9333
충청북도	12.4750	11.6083	11.6583	9.8417	9.2417	9.5833	7.3083	7.1417	6.8500
충청남도	10.0250	9.9417	10.2000	8.1750	8.6583	7.7833	7.3833	7.6583	7.4333
전라북도	11.6417	11.4167	10.9333	8.5417	8.2000	7.2250	6.6750	5.2833	4.8583
전라남도	10.7750	11.0750	9.1333	9.5167	9.5417	9.3000	7.2750	6.2917	5.7000
경상북도	11.3417	9.5167	11.7167	7.8250	8.4750	8.4083	6.7750	6.2750	6.2833
경상남도	10.8417	11.4667	9.9333	7.2250	6.7833	7.1167	5.8000	6.3000	5.8250
제주특별자치도	7.6917	6.5500	6.5833	5.1583	4.8583	5.3333	4.9250	4.7750	4.9417

주: 각 연도별 월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뷰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 검색일자: 2023. 6. 21.

〈표 IV-20〉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단독)

(단위: %)

지역	30㎡ 이하			30㎡ 초과 60㎡ 이하			60㎡ 초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8,800	8,358	7,967	7,317	6,917	6,683	5,467	5,358
서울특별시	7,047	6,583	6,075	5,847	5,533	5,300	4,325	4,225	3,967
부산광역시	9,133	8,847	8,383	7,697	7,875	7,575	5,867	6,175	5,867
대구광역시	11,058	10,408	9,683	8,800	8,600	7,847	6,125	5,767	5,425
인천광역시	10,317	10,283	10,117	9,650	9,000	8,847	6,783	6,525	6,283
광주광역시	10,758	10,617	9,317	9,633	9,150	8,833	7,067	6,917	6,167
대전광역시	9,125	8,575	7,775	7,697	7,108	6,400	6,017	5,658	5,383
울산광역시	10,583	9,175	9,483	9,233	8,700	8,775	6,000	6,525	5,917
세종특별자치시	9,733	9,667	9,475	10,075	9,233	9,108	8,958	6,125	5,367
경기도	9,700	9,547	9,150	7,317	6,967	6,747	5,083	5,408	5,267
강원도	9,833	9,417	9,133	8,625	8,525	8,367	6,533	6,450	6,383
충청북도	12,100	11,600	11,147	10,617	10,267	9,733	7,833	7,500	7,497
충청남도	11,483	10,933	10,597	9,475	9,333	9,058	7,117	6,725	6,700
전라북도	11,633	11,350	10,450	10,167	9,925	9,333	7,017	7,083	6,883
전라남도	10,547	10,497	9,967	10,117	9,808	9,758	7,683	7,400	7,075
경상북도	12,347	12,047	11,597	11,258	10,517	10,097	7,750	7,250	7,383
경상남도	10,697	10,058	10,333	9,247	9,083	8,900	5,675	5,750	6,017
제주특별자치도	8,750	8,217	7,958	6,833	6,575	6,347	6,117	5,608	5,508

주: 각 연도별 월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부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 https://www.reb.or.k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 검색일자: 2023. 6. 21.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의 목적은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이하 임대료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재정패널조사」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 임대료 비중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편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결정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면 임대료 비중은 식 (IV-18)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에서 $\hat{\gamma}_i$ 는 식 (IV-17)의 추정치이다. 그리고 식 (IV-18)의 결과를 이용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편익은 식 (IV-19)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하에서 <표 IV-21>~<표 IV-23>은 임대료 결정모형의 추정결과이며, [그림 IV-1]~[그림 IV-3]은 경상소득과 임대료 비중의 추정 결과 간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 IV-24>~<표 IV-26>에서는 임대료 비중과 편익의 추정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RentRatio_h = e^{\sum_{i=1}^N \hat{\gamma}_i (X_h \times D_{h,i})} \quad \text{식 (IV-18)}$$

$$RB_h = Rent_h \times \left(\frac{1 - RentRatio_h}{RentRatio_h} \right) \quad \text{식 (IV-19)}$$

〈표 IV-21〉 임대료 결정모형 추정 결과(2019년)

구분	단독항	공공임대주택더미와의 교차항				
		분양미전환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영구	국민	기타		
상수항	2.561*** (0.042)	-3.523*** (0.281)	-1.766*** (0.165)	-2.131*** (0.249)	-0.117 (0.599)	
ln(면적(m ²))	0.423*** (0.007)	0.790*** (0.061)	0.336*** (0.039)	0.428*** (0.058)	0.126 (0.141)	
주거환경 만족도	상업시설	0.022*** (0.008)	-0.099*** (0.036)	-0.038 (0.026)	-0.005 (0.049)	-0.124** (0.058)
	의료시설	0.037*** (0.008)	0.084** (0.035)	-0.053** (0.025)	-0.073 (0.050)	-0.056 (0.055)
	문화시설	0.047*** (0.006)	-0.009 (0.026)	0.008 (0.019)	-0.046 (0.037)	0.011 (0.044)
	대중교통	0.040*** (0.007)	-0.052 (0.032)	-0.053*** (0.021)	-0.062 (0.040)	0.024 (0.041)
	교육환경	0.014* (0.007)	-0.001 (0.035)	-0.004 (0.025)	0.042 (0.045)	-0.029 (0.049)
주택유형더미 (아파트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0.331*** (0.012)	-0.150 (0.184)	-0.134** (0.058)	-0.020 (0.070)	-1.224*** (0.461)
	단독주택	-0.305*** (0.010)	-	-	0.027 (0.075)	-
	기타주택	-0.129*** (0.014)	-	-	-	-
건축연한더미 (3년 미만 기준)	3~5년	0.049*** (0.018)	-0.648*** (0.112)	0.206*** (0.057)	-0.171 (0.104)	-0.360*** (0.080)
	6~10년	-0.044** (0.018)	-0.625*** (0.130)	0.060 (0.056)	-0.159* (0.087)	-0.150* (0.089)
	11~15년	-0.118*** (0.018)	-0.600*** (0.114)	-0.040 (0.057)	-0.129 (0.102)	-0.597 (0.429)
	16~20년	-0.257*** (0.018)	-0.432*** (0.120)	-0.320*** (0.062)	-0.128 (0.112)	-0.052 (0.169)
	21~25년	-0.353*** (0.018)	-0.583*** (0.115)	0.006 (0.072)	0.068 (0.113)	-0.698*** (0.242)
	26~30년	-0.476*** (0.018)	-0.493*** (0.120)	-0.133 (0.096)	0.382*** (0.105)	-0.043 (0.439)
	30년 초과	-0.572*** (0.018)	-0.121 (0.144)	0.736*** (0.125)	0.680*** (0.117)	1.165** (0.464)

〈표 IV-21〉의 계속

구분	단독항	공공임대주택더미와의 교차항				
		분양미전환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영구	국민	기타		
지역더미 (경기도 기준)	서울특별시	-0.600*** (0.015)	-0.331*** (0.064)	-0.156*** (0.050)	-0.020 (0.067)	-0.242 (0.147)
	부산광역시	-0.564*** (0.016)	0.169** (0.073)	0.200*** (0.045)	0.067 (0.111)	0.003 (0.118)
	대구광역시	-0.380*** (0.016)	0.286*** (0.075)	0.007 (0.053)	0.230** (0.117)	0.148 (0.138)
	인천광역시	-0.643*** (0.022)	0.230** (0.094)	0.033 (0.051)	-0.131 (0.084)	0.038 (0.113)
	광주광역시	-0.675*** (0.017)	0.149* (0.089)	0.067 (0.066)	0.271** (0.120)	-0.004 (0.093)
	대전광역시	-0.595*** (0.021)	0.378*** (0.092)	0.129** (0.056)	0.211** (0.092)	-
	울산광역시	-0.726*** (0.029)	0.198** (0.088)	0.101 (0.086)	0.406*** (0.144)	-
	세종특별자치시	-0.286*** (0.011)	-0.161 (0.163)	-0.136** (0.063)	-	0.385*** (0.085)
	강원도	-0.711*** (0.022)	0.385*** (0.083)	0.180*** (0.050)	0.389*** (0.110)	0.117 (0.096)
	충청북도	-0.824*** (0.023)	0.535*** (0.097)	0.296*** (0.054)	0.019 (0.154)	-0.253 (0.159)
	충청남도	-0.683*** (0.018)	0.452** (0.212)	0.124** (0.062)	0.374** (0.157)	-0.201* (0.116)
	전라북도	-0.778*** (0.021)	0.388*** (0.092)	0.081 (0.060)	-0.063 (0.257)	-0.105 (0.212)
	전라남도	-0.853*** (0.023)	0.675*** (0.089)	0.441*** (0.055)	0.733*** (0.153)	0.717*** (0.116)
	경상북도	-0.781*** (0.018)	0.447*** (0.107)	-0.023 (0.059)	0.665*** (0.159)	0.151 (0.145)
	경상남도	-0.709*** (0.020)	0.312*** (0.114)	0.041 (0.052)	0.300*** (0.116)	0.324** (0.151)
	제주특별자치도	-0.498*** (0.023)	0.147 (0.098)	-0.088 (0.069)	-0.270 (0.433)	-0.007 (0.110)
관측치		18,626				
결정계수(R ²)		0.645				

주: 1. 종속변수는 ln(월간 임대료)

2. 괄호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2〉 임대료 결정모형 추정 결과(2020년)

구분	단독항	공공임대주택더미와의 교차항				
		분양미전환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영구	국민	기타		
상수항	2.548*** (0.045)	-2.187*** (0.288)	-2.311*** (0.214)	-1.309*** (0.259)	-0.332 (0.629)	
ln(면적(m ²))	0.424*** (0.008)	0.238*** (0.064)	0.524*** (0.047)	0.155** (0.062)	0.115 (0.140)	
주거환경 만족도	상업시설	0.037*** (0.008)	0.052 (0.036)	-0.019 (0.026)	-0.079* (0.044)	-0.064 (0.058)
	의료시설	0.042*** (0.008)	-0.026 (0.035)	-0.052* (0.027)	0.050 (0.041)	0.001 (0.066)
	문화시설	0.056*** (0.006)	-0.105*** (0.026)	-0.029 (0.019)	-0.017 (0.033)	-0.122*** (0.038)
	대중교통	0.011 (0.007)	-0.000 (0.031)	-0.041** (0.020)	-0.067* (0.038)	0.023 (0.052)
	교육환경	0.023*** (0.007)	-0.010 (0.037)	-0.056** (0.025)	0.076* (0.041)	0.001 (0.057)
주택유형더미 (아파트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0.356*** (0.013)	1.886*** (0.234)	0.204*** (0.068)	-0.078 (0.073)	0.434 (0.429)
	단독주택	-0.287*** (0.010)	-	-	-0.066 (0.069)	-
	기타주택	-0.070*** (0.014)	-	-	-0.470*** (0.175)	-
건축연한더미 (3년 미만 기준)	3~5년	0.001 (0.018)	-0.025 (0.117)	-0.082 (0.056)	0.076 (0.075)	-0.090 (0.079)
	6~10년	-0.046*** (0.018)	0.222* (0.117)	-0.068 (0.055)	0.075 (0.094)	-0.382*** (0.114)
	11~15년	-0.162*** (0.019)	0.466*** (0.111)	-0.052 (0.056)	-0.061 (0.094)	-0.348*** (0.106)
	16~20년	-0.269*** (0.018)	0.364*** (0.107)	-0.220*** (0.060)	0.117 (0.105)	0.194 (0.146)
	21~25년	-0.359*** (0.018)	0.179* (0.105)	-0.100 (0.080)	-0.004 (0.104)	-0.614*** (0.147)
	26~30년	-0.460*** (0.018)	-0.073 (0.097)	-0.233** (0.115)	0.417*** (0.108)	0.160 (0.317)
	30년 초과	-0.586*** (0.017)	2.367*** (0.443)	0.447*** (0.103)	0.504*** (0.107)	-0.269 (0.206)

〈표 IV-22〉의 계속

구분	단독항	공공임대주택데미와의 교차항				
		분양미전환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영구	국민	기타		
지역데미 (경기도 기준)	서울특별시	-0.624*** (0.016)	-0.309*** (0.072)	-0.328*** (0.046)	-0.112* (0.064)	0.218 (0.521)
	부산광역시	-0.577*** (0.017)	0.343*** (0.081)	0.152*** (0.053)	-0.020 (0.095)	0.249 (0.155)
	대구광역시	-0.313*** (0.017)	0.147* (0.085)	0.281*** (0.052)	0.160 (0.132)	0.192 (0.174)
	인천광역시	-0.645*** (0.020)	0.135 (0.101)	0.031 (0.057)	-0.127 (0.078)	0.037 (0.118)
	광주광역시	-0.586*** (0.019)	0.310*** (0.084)	0.079 (0.054)	0.059 (0.106)	0.201 (0.229)
	대전광역시	-0.660*** (0.023)	0.333*** (0.101)	0.346*** (0.068)	-0.201** (0.094)	-
	울산광역시	-0.676*** (0.025)	0.450*** (0.102)	0.150* (0.084)	-0.067 (0.131)	-
	세종특별자치시	-0.253*** (0.012)	-	0.483*** (0.073)	-0.224 (0.147)	0.307*** (0.118)
	강원도	-0.708*** (0.025)	0.582*** (0.086)	0.125** (0.064)	0.278*** (0.099)	0.352*** (0.092)
	충청북도	-0.717*** (0.023)	0.586*** (0.097)	0.302*** (0.058)	0.152 (0.135)	-0.119 (0.174)
	충청남도	-0.636*** (0.021)	0.832*** (0.145)	0.414*** (0.085)	0.003 (0.102)	-0.104 (0.153)
	전라북도	-0.830*** (0.022)	0.398*** (0.082)	0.061 (0.071)	0.001 (0.187)	0.206* (0.108)
	전라남도	-0.768*** (0.024)	1.014*** (0.159)	0.069 (0.063)	0.143 (0.152)	0.011 (0.128)
	경상북도	-0.745*** (0.020)	0.335*** (0.120)	0.050 (0.074)	0.234** (0.094)	-0.155* (0.091)
	경상남도	-0.644*** (0.020)	-0.992*** (0.120)	-0.007 (0.068)	0.226 (0.152)	0.310*** (0.120)
제주특별자치도	-0.496*** (0.025)	0.209** (0.098)	-0.120 (0.079)	-0.676*** (0.128)	0.509*** (0.172)	
관측치		16,060				
결정계수(R ²)		0.652				

주: 1. 종속변수는 ln(월간 임대료)

2. 괄호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1)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3〉 임대료 결정모형 추정 결과(2021년)

구분	단독항	공공임대주택더미와의 교차항				분양전환 공공임대
		분양미전환 공공임대			기타	
		영구	국민	기타		
상수항	2.523*** (0.048)	-3.920*** (0.296)	-2.727*** (0.205)	-1.620*** (0.199)	1.008 (0.976)	
ln(면적(m ²))	0.454*** (0.008)	0.460*** (0.080)	0.606*** (0.049)	0.272*** (0.046)	-0.196 (0.220)	
주거환경 만족도	상업시설	0.011 (0.009)	-0.036 (0.039)	0.008 (0.031)	-0.001 (0.039)	-0.009 (0.085)
	의료시설	0.049*** (0.009)	0.000 (0.039)	-0.092*** (0.032)	-0.072* (0.038)	-0.038 (0.077)
	문화시설	0.053*** (0.006)	0.057** (0.028)	-0.020 (0.021)	0.014 (0.026)	-0.072 (0.073)
	대중교통	0.028*** (0.008)	-0.042 (0.033)	-0.082*** (0.026)	-0.005 (0.033)	-0.024 (0.060)
	교육환경	0.051*** (0.008)	-0.002 (0.038)	-0.023 (0.027)	-0.039 (0.034)	-0.011 (0.077)
주택유형더미 (아파트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0.415*** (0.014)	0.303 (0.445)	0.486*** (0.074)	0.044 (0.058)	1.491*** (0.184)
	단독주택	-0.350*** (0.011)	-	-	-0.041 (0.062)	-
	기타주택	-0.113*** (0.015)	-	-	0.039 (0.113)	-
건축연한더미 (3년 미만 기준)	3~5년	0.029 (0.021)	0.618*** (0.119)	-0.115* (0.065)	-0.245*** (0.066)	-0.227** (0.113)
	6~10년	-0.066*** (0.020)	0.762*** (0.110)	0.088 (0.065)	-0.113 (0.071)	-0.149 (0.142)
	11~15년	-0.099*** (0.022)	0.743*** (0.111)	-0.124** (0.063)	-0.118 (0.078)	0.122 (0.461)
	16~20년	-0.267*** (0.020)	0.930*** (0.131)	-0.072 (0.071)	-0.060 (0.084)	-1.106 (0.748)
	21~25년	-0.338*** (0.021)	0.522*** (0.112)	0.118 (0.073)	-0.596*** (0.116)	-0.568 (0.553)
	26~30년	-0.477*** (0.020)	0.649*** (0.097)	0.384*** (0.086)	0.126 (0.084)	-0.538** (0.226)
	30년 초과	-0.535*** (0.020)	0.707*** (0.105)	0.178* (0.093)	0.546*** (0.091)	-0.321 (0.242)

〈표 IV-23〉의 계속

구분	단독항	공공임대주택데미와의 교차항				
		분양미전환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영구	국민	기타		
지역데미 (경기도 기준)	서울특별시	-0.662*** (0.017)	0.003 (0.089)	-0.478*** (0.047)	0.013 (0.061)	-
	부산광역시	-0.624*** (0.020)	0.161* (0.089)	0.291*** (0.078)	-0.051 (0.086)	-0.177 (0.175)
	대구광역시	-0.427*** (0.018)	0.209* (0.108)	0.168*** (0.057)	0.181 (0.174)	0.129 (0.114)
	인천광역시	-0.783*** (0.023)	0.275** (0.125)	0.129 (0.079)	0.095 (0.063)	-0.223 (0.448)
	광주광역시	-0.706*** (0.019)	0.492*** (0.098)	0.040 (0.061)	0.346*** (0.076)	-
	대전광역시	-0.710*** (0.026)	0.430*** (0.088)	0.237*** (0.074)	0.527*** (0.092)	0.216 (0.146)
	울산광역시	-0.655*** (0.026)	0.495*** (0.116)	0.165** (0.079)	0.394*** (0.144)	-
	세종특별자치시	-0.306*** (0.013)	-	0.400*** (0.110)	-0.189 (0.153)	0.208 (0.133)
	강원도	-0.862*** (0.024)	0.993*** (0.123)	0.205*** (0.066)	-0.688*** (0.188)	-0.007 (0.485)
	충청북도	-0.859*** (0.023)	0.726*** (0.115)	0.215*** (0.061)	0.301*** (0.091)	-0.029 (0.192)
	충청남도	-0.760*** (0.021)	0.827*** (0.123)	0.467*** (0.092)	0.057 (0.126)	-
	전라북도	-0.960*** (0.025)	0.635*** (0.133)	0.039 (0.068)	1.101** (0.442)	0.534*** (0.128)
	전라남도	-0.975*** (0.027)	0.783*** (0.152)	0.480*** (0.066)	-	-
	경상북도	-0.866*** (0.023)	0.300* (0.164)	0.189** (0.087)	0.651*** (0.151)	0.330 (0.852)
	경상남도	-0.879*** (0.021)	0.258* (0.139)	0.317*** (0.062)	0.236*** (0.087)	0.281** (0.127)
제주특별자치도	-0.655*** (0.028)	0.531*** (0.172)	-0.069 (0.071)	0.051 (0.105)	-0.069 (0.637)	
관측치		14,821				
결정계수(R ²)		0.699				

주: 1. 종속변수는 ln(월간 임대료)

2. 괄호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2)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1]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2019년)



자료: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2]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2020년)



자료: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1)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그림 IV-3]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2021년)



자료: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2)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 및 편익 추정 결과의 기초통계량(2019년)

(단위: 만원)

구분	관측치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				공공임대 임대료 편익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3,553	0.45	0.19	0.11	1.00	33.7	26.0	0.0	532.7	
공공 임대주택 유형	영구임대주택	916	0.28	0.12	0.11	0.81	39.3	35.3	4.8	532.7
	국민임대주택	1,788	0.47	0.12	0.17	1.00	34.0	20.3	0.0	303.8
	기타공공임대주택	467	0.46	0.16	0.21	1.00	34.2	26.1	0.0	133.4
	분양전환임대주택	382	0.78	0.16	0.24	1.00	18.2	15.8	0.0	92.1
주택유형	아파트	3,204	0.45	0.19	0.11	1.00	34.1	26.1	0.0	532.7
	연립다세대주택	197	0.41	0.15	0.17	1.00	36.7	28.9	0.0	157.1
	단독주택	152	0.50	0.18	0.21	1.00	21.6	16.8	0.0	107.1
	기타주택	0	-	-	-	-	-	-	-	-
건축연한	3년 미만	292	0.56	0.23	0.25	1.00	30.3	22.6	0.0	99.7
	3~5년	716	0.57	0.19	0.13	1.00	31.7	21.3	0.0	149.1
	6~10년	813	0.48	0.15	0.11	1.00	36.0	25.4	0.0	303.8
	11~15년	612	0.43	0.10	0.18	0.85	33.7	17.1	6.2	151.9
	16~20년	327	0.32	0.13	0.12	1.00	44.8	28.4	0.0	157.1
	21~25년	335	0.35	0.14	0.12	0.79	32.5	37.0	3.6	532.7
	26~30년	391	0.29	0.13	0.11	1.00	30.6	32.7	0.0	363.4
30년 초과	67	0.72	0.23	0.28	1.00	11.3	11.1	0.0	51.1	
지역	서울특별시	456	0.29	0.15	0.11	1.00	63.3	44.3	0.0	532.7
	부산광역시	271	0.43	0.16	0.17	0.95	28.4	11.3	3.4	68.0
	대구광역시	222	0.43	0.16	0.22	1.00	27.2	12.3	0.0	70.6
	인천광역시	224	0.43	0.15	0.20	0.91	34.7	19.8	1.4	156.7
	광주광역시	154	0.51	0.21	0.20	1.00	21.7	12.5	0.0	88.0
	대전광역시	160	0.49	0.16	0.26	1.00	23.1	15.8	0.0	128.1
	울산광역시	79	0.43	0.13	0.18	0.79	29.8	18.5	3.6	84.8
	세종특별자치시	130	0.59	0.30	0.14	1.00	28.5	26.8	0.0	99.7
	경기도	722	0.44	0.17	0.13	1.00	41.5	21.5	0.0	156.9
	강원도	222	0.52	0.16	0.24	1.00	24.9	14.0	0.0	74.6
	충청북도	152	0.54	0.14	0.27	1.00	20.0	12.8	0.0	151.9
	충청남도	97	0.52	0.10	0.36	0.73	25.1	13.3	3.8	127.6
	전라북도	121	0.39	0.10	0.22	0.65	23.6	7.8	6.6	60.4
	전라남도	162	0.70	0.17	0.35	1.00	11.7	7.0	0.0	28.3
	경상북도	122	0.47	0.18	0.27	1.00	22.1	10.4	0.0	45.9
	경상남도	153	0.46	0.13	0.25	1.00	27.0	13.4	0.2	69.0
제주특별자치도	106	0.45	0.17	0.27	0.87	34.9	17.6	8.4	116.9	

자료: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5〉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 및 편익 추정 결과의 기초통계량(2020년)

(단위: 만원)

구분	관측치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				공공임대 임대료 편익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3,203	0.45	0.19	0.09	1.00	33.7	24.6	0.0	209.9	
공공 임대주택 유형	영구임대주택	846	0.31	0.13	0.09	1.00	38.6	29.6	0.0	209.9
	국민임대주택	1,444	0.45	0.13	0.14	0.97	35.6	20.9	0.5	147.7
	기타공공임대주택	529	0.46	0.11	0.18	0.96	33.2	25.9	0.9	178.4
	분양전환임대주택	384	0.76	0.17	0.31	1.00	16.4	13.5	0.0	75.3
주택유형	아파트	2,867	0.45	0.19	0.09	1.00	34.5	24.9	0.0	209.9
	연립다세대주택	154	0.49	0.17	0.21	1.00	28.5	19.6	0.0	102.7
	단독주택	175	0.47	0.12	0.20	0.91	24.7	20.1	1.5	108.9
	기타주택	7	0.27	0.05	0.22	0.34	50.8	41.1	13.8	134.5
건축연한	3년 미만	449	0.60	0.21	0.15	1.00	28.8	24.3	0.0	178.4
	3~5년	506	0.51	0.21	0.09	1.00	34.5	25.7	0.0	139.7
	6~10년	637	0.44	0.12	0.23	1.00	38.3	22.8	0.0	147.7
	11~15년	591	0.45	0.11	0.13	0.80	35.6	25.7	4.9	186.6
	16~20년	292	0.43	0.18	0.18	1.00	31.7	20.1	0.0	128.5
	21~25년	217	0.36	0.11	0.16	0.63	32.3	23.5	3.1	172.3
	26~30년	445	0.28	0.13	0.12	1.00	33.9	26.6	0.0	209.9
30년 초과	66	0.71	0.12	0.42	0.97	11.1	8.1	0.5	42.1	
지역	서울특별시	404	0.28	0.14	0.12	0.98	63.2	33.0	1.0	209.9
	부산광역시	228	0.44	0.15	0.23	1.00	25.3	12.7	0.0	94.2
	대구광역시	215	0.46	0.21	0.19	1.00	25.4	11.8	0.0	60.8
	인천광역시	183	0.45	0.19	0.23	1.00	34.3	19.5	0.0	114.7
	광주광역시	198	0.42	0.13	0.24	1.00	27.6	12.0	0.0	66.6
	대전광역시	120	0.42	0.13	0.25	0.69	28.3	18.1	2.2	108.9
	울산광역시	75	0.43	0.06	0.34	0.68	29.5	14.3	4.0	67.3
	세종특별자치시	99	0.67	0.16	0.37	0.93	18.5	9.4	4.3	37.0
	경기도	594	0.44	0.16	0.18	1.00	43.6	22.5	0.0	148.3
	강원도	219	0.57	0.21	0.28	1.00	20.0	12.8	0.0	68.4
	충청북도	149	0.50	0.14	0.27	0.89	23.2	10.8	6.4	63.4
	충청남도	83	0.58	0.15	0.35	0.87	19.7	9.9	4.2	62.4
	전라북도	154	0.49	0.17	0.28	1.00	22.4	11.8	0.0	55.5
	전라남도	125	0.57	0.13	0.37	0.93	21.6	9.3	2.6	52.2
	경상북도	138	0.50	0.15	0.24	0.96	21.0	8.1	0.9	45.8
	경상남도	100	0.48	0.28	0.09	1.00	34.7	45.0	0.0	186.6
제주특별자치도	119	0.40	0.22	0.18	1.00	34.3	22.5	0.0	107.1	

자료: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1)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6〉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중 및 편익 추정 결과의 기초통계량(2021년)

(단위: 만원)

구분	관측치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 임대료 비중				공공임대 임대료 편익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2,974	0.40	0.18	0.08	1.00	40.0	30.7	0.0	326.2	
공공 임대주택 유형	영구임대주택	760	0.26	0.12	0.08	0.70	39.1	26.5	6.3	189.9
	국민임대주택	1,310	0.40	0.14	0.12	1.00	43.3	28.7	0.0	188.3
	기타공공임대주택	672	0.44	0.13	0.17	1.00	41.5	39.2	0.0	326.2
	분양전환임대주택	232	0.75	0.15	0.30	1.00	20.3	14.4	0.0	69.1
주택유형	아파트	2,598	0.39	0.18	0.08	1.00	41.9	31.3	0.0	326.2
	연립다세대주택	190	0.50	0.19	0.23	1.00	30.3	23.4	0.0	120.8
	단독주택	167	0.49	0.17	0.18	1.00	22.3	18.2	0.0	128.9
	기타주택	19	0.42	0.16	0.24	0.83	41.4	23.1	4.4	79.7
건축연한	3년 미만	395	0.44	0.20	0.08	1.00	39.2	24.5	0.0	141.8
	3~5년	490	0.46	0.20	0.17	1.00	43.6	34.2	0.0	262.2
	6~10년	474	0.41	0.15	0.12	1.00	50.2	35.7	0.0	188.3
	11~15년	570	0.39	0.10	0.18	0.89	43.4	33.2	3.0	326.2
	16~20년	241	0.44	0.11	0.23	0.82	31.5	21.1	1.1	155.3
	21~25년	174	0.29	0.15	0.14	1.00	48.0	28.8	0.0	139.4
	26~30년	480	0.31	0.19	0.14	1.00	30.7	24.3	0.0	189.9
	30년 초과	150	0.51	0.24	0.17	1.00	19.5	13.4	0.0	83.3
지역	서울특별시	456	0.27	0.11	0.12	0.72	78.3	44.5	5.0	326.2
	부산광역시	234	0.32	0.17	0.18	1.00	32.3	19.9	0.0	113.8
	대구광역시	182	0.39	0.16	0.17	0.76	34.5	16.1	8.6	90.2
	인천광역시	175	0.40	0.13	0.20	0.84	35.4	19.2	2.1	94.9
	광주광역시	202	0.40	0.12	0.23	1.00	28.0	14.6	0.0	94.3
	대전광역시	175	0.42	0.21	0.11	0.84	27.2	16.6	3.0	127.3
	울산광역시	83	0.41	0.12	0.25	1.00	27.8	11.4	0.0	52.6
	세종특별자치시	51	0.53	0.18	0.30	0.76	29.4	9.5	11.8	54.7
	경기도	566	0.39	0.18	0.08	1.00	49.6	25.0	0.0	128.9
	강원도	107	0.51	0.09	0.17	0.70	24.4	21.7	4.2	212.2
	충청북도	151	0.42	0.11	0.27	1.00	25.3	9.0	0.0	52.6
	충청남도	74	0.48	0.08	0.35	0.87	24.9	11.1	5.1	60.0
	전라북도	129	0.59	0.26	0.28	1.00	20.6	15.9	0.0	55.6
	전라남도	97	0.57	0.14	0.29	0.91	17.4	8.7	3.2	42.6
	경상북도	53	0.54	0.26	0.20	1.00	19.8	14.0	0.0	63.4
	경상남도	144	0.53	0.18	0.21	1.00	23.1	14.1	0.0	75.8
	제주특별자치도	95	0.32	0.08	0.17	0.72	42.2	17.8	18.9	94.5

자료: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2)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2) 2단계: 「주거실태조사」와 「재정패널조사」 연결

「재정패널조사」 가구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와 「주거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가구의 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 결과를 「재정패널조사」 가구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료의 공통 변수를 이용한 두 가지 추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임대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확률에 대한 추정이다. 「재정패널조사」에는 각 가구의 임대주택 거주 여부만 알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 임대 유형이 공공임대일 확률을 추정한다. 이때 추정 방법은 로짓(logit)모형을 이용하였고, 분석 표본은 점유유형이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에 해당되는 거주자에 한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역시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표본에 한정하여 앞의 1단계에서 추정한 민간임대 대비 공공임대의 임대료 비중과 공통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이 두 가지의 추정 결과를 「재정패널조사」 가구에 적용하면 각 가구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의 추정 결과를 「재정패널조사」에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가 고려한 공통 변수들은 <표 IV-27>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원 수, 가구주 성별,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등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거주주택의 면적, 임대료, 주택유형, 점유유형, 지역 변수 등을 고려한다. 임대료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한 월환산 임대료를 변수로 활용한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기타주택으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산에서 월환산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증금을 제외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IV-2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7〉 「주거실태조사」와 「재정패널조사」 연결을 위한 주요 변수 비교

구분	「주거실태조사」	「재정패널조사」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수 • 가구주 성별 • 가구 경상소득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수 • 가구주 성별 • 가구 경상소득 •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 월세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주택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단독주택 • 다가구단독주택 • 영업겸용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 •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 • 오피스텔 •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 원룸 • 기타
점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사글세 또는 연세 • 일세 • 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세 • 무보증 월세 • 무상거주 • 기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파일설계서, 2019~2021년도 일반가구 조사에 대한 엑셀자료, 통계청 MDIS 다운로드서비스, 요청일: 2023. 6. 21.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통합코드북, 엑셀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제공, 제공일: 2023. 4. 29.

〈표 IV-28〉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및 민간 대비 공공임대료 비중 추정

구분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민간 대비 공공임대료 비중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ln(임대료)	-7.701*** (0.259)	-7.045*** (0.265)	-7.047*** (0.271)	0.402*** (0.017)	0.462*** (0.018)	0.356*** (0.018)	
ln(면적(m ²))	-2.241*** (0.134)	-2.419*** (0.145)	-2.556*** (0.148)	0.291*** (0.009)	0.289*** (0.010)	0.241*** (0.010)	
ln(전년도 경상소득)	-0.452*** (0.082)	-0.525*** (0.091)	-0.298*** (0.101)	0.012** (0.006)	-0.003 (0.007)	0.011 (0.007)	
ln(보증금 제외 자산)	-0.029*** (0.011)	-0.041*** (0.013)	-0.080*** (0.015)	0.001 (0.001)	0.002** (0.001)	0.004*** (0.001)	
ln(부채)	0.044*** (0.010)	0.056*** (0.011)	0.053*** (0.012)	0.002** (0.001)	-0.000 (0.001)	0.002** (0.001)	
가구주 성별 (남성=0, 여성=1)	0.174* (0.100)	0.153 (0.106)	0.195* (0.111)	0.008 (0.006)	0.013* (0.007)	-0.002 (0.007)	
가구원 수 (1인 기준)	2인	0.822*** (0.120)	0.994*** (0.129)	0.625*** (0.128)	-0.015* (0.008)	-0.011 (0.009)	-0.024*** (0.008)
		1.295*** (0.131)	1.311*** (0.140)	0.758*** (0.149)	-0.014 (0.009)	-0.002 (0.009)	-0.028*** (0.010)
	3인	1.110*** (0.140)	1.568*** (0.153)	0.910*** (0.161)	-0.021** (0.010)	-0.011 (0.010)	-0.016 (0.011)
		1.670*** (0.193)	1.695*** (0.219)	1.151*** (0.245)	-0.034*** (0.013)	-0.014 (0.015)	-0.025 (0.016)
	5인	2.306*** (0.348)	0.446 (0.504)	0.431 (0.566)	-0.055** (0.023)	0.024 (0.041)	-0.097** (0.044)
점유 유형 (전세 기준)	보증금 있는 월세	3.003*** (0.101)	2.536*** (0.101)	2.482*** (0.109)	0.003 (0.009)	-0.086*** (0.009)	-0.049*** (0.009)
		- (0.573)	0.196 (0.573)	-0.354 (0.694)	- (0.052)	-0.151*** (0.052)	-0.012 (0.054)
주택 유형 (아파트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3.015*** (0.149)	-2.924*** (0.161)	-2.460*** (0.155)	0.026** (0.013)	0.085*** (0.014)	0.071*** (0.013)
		-4.652*** (0.157)	-4.587*** (0.169)	-4.557*** (0.181)	0.102*** (0.015)	0.031* (0.017)	0.104*** (0.016)
	기타주택	- (0.724)	-5.932*** (0.724)	-4.226*** (0.361)	- (0.080)	-0.057 (0.080)	-0.011 (0.036)
		-	-	-	-	-	-

〈표 IV-28〉의 계속

구분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민간 대비 공공임대료 비중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역 (경기도 기준)	서울특별시	1.062***	0.564***	0.698***	-0.117***	-0.146***	-0.122***
		(0.148)	(0.164)	(0.158)	(0.010)	(0.011)	(0.010)
	부산광역시	-0.763***	-1.030***	-1.363***	0.057***	0.086***	0.031**
		(0.167)	(0.184)	(0.218)	(0.011)	(0.013)	(0.015)
	대구광역시	-0.380**	-0.624***	-0.711***	0.069***	0.112***	0.070***
		(0.192)	(0.187)	(0.205)	(0.013)	(0.013)	(0.013)
	인천광역시	-0.210	-0.824***	-1.084***	0.012	0.013	0.055***
		(0.164)	(0.204)	(0.205)	(0.012)	(0.015)	(0.015)
	광주광역시	-0.168	-1.120***	-1.579***	0.126***	0.065***	0.099***
		(0.210)	(0.190)	(0.216)	(0.013)	(0.013)	(0.013)
	대전광역시	-0.981***	-1.096***	-0.796***	0.104***	0.069***	0.137***
		(0.200)	(0.225)	(0.214)	(0.014)	(0.017)	(0.014)
	울산광역시	-1.144***	-1.748***	-1.965***	0.011	0.035	0.126***
		(0.265)	(0.299)	(0.308)	(0.019)	(0.023)	(0.020)
	세종특별자치시	0.636***	-0.199	-0.936***	0.096***	0.192***	0.140***
		(0.188)	(0.212)	(0.263)	(0.013)	(0.015)	(0.018)
	강원도	-0.130	-0.120	-1.999***	0.089***	0.141***	0.107***
		(0.186)	(0.197)	(0.236)	(0.011)	(0.012)	(0.017)
	충청북도	-1.273***	-1.026***	-1.925***	0.121***	0.095***	0.091***
		(0.196)	(0.214)	(0.220)	(0.013)	(0.014)	(0.014)
충청남도	-1.713***	-1.744***	-2.310***	0.082***	0.183***	0.151***	
	(0.201)	(0.225)	(0.240)	(0.015)	(0.017)	(0.018)	
전라북도	-2.004***	-1.246***	-0.929***	0.057***	0.084***	0.170***	
	(0.236)	(0.222)	(0.231)	(0.017)	(0.014)	(0.014)	
전라남도	-0.730***	-1.065***	-1.605***	0.256***	0.113***	0.232***	
	(0.180)	(0.196)	(0.227)	(0.012)	(0.014)	(0.015)	
경상북도	-1.854***	-1.264***	-2.448***	0.088***	0.081***	0.240***	
	(0.219)	(0.229)	(0.290)	(0.016)	(0.016)	(0.023)	
경상남도	-1.097***	-1.136***	-1.106***	0.061***	0.022	0.152***	
	(0.205)	(0.219)	(0.211)	(0.014)	(0.016)	(0.014)	
제주특별자치도	-0.267	-0.615***	-0.931***	0.010	0.019	-0.006	
	(0.232)	(0.236)	(0.275)	(0.014)	(0.014)	(0.015)	
상수	12.810***	14.156***	14.289***	-0.947***	-0.826***	-0.741***	
	(0.660)	(0.721)	(0.749)	(0.044)	(0.051)	(0.046)	
관측치	11,591	11,220	10,429	1,943	1,734	1,441	
결정계수(R ²)	0.546	0.570	0.561	0.639	0.661	0.689	

주: 1.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률 추정의 결정계수는 의사 결정계수(pseudo-R²)

2. 괄호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20~2022)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V. 수혜·부담 추정 결과

1.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본 연구는 수혜·부담 분석의 기초자료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다. 13, 14, 15차 조사는 각각 2019, 2020, 2021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이다. 「재정패널조사」는 매년 가계를 대상으로 전년도 경제활동에 대해 조사한 후 1년간의 자료 검토 및 정제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 말에 공표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인 13차 조사의 경우 2020년에 실사가 이루어지고, 정제를 거친 자료는 2021년 말에 공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는 2020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인 14차 자료까지만 공표된 상황이고, 2021년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인 15차 자료는 2023년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5차 자료의 경우 아직 공표되지 않은 베타버전⁷⁾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2008년부터 약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재정패널조사」는 13차 조사에서 약 4,000가구의 신규표본을 추가로 구축하여 표본을 확대하였다. 다만, 14차 조사는 13차 조사 시 구축한 추가패널을 추적 조사하지 않고, 신규패널을 다시 구축하였다. 이는 13차 조사의 신규표본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2020년에 구축되었는데, 당시의 조사환경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다른 시점과 비교해 상당히 예외적으로 달랐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15차 조사는 14차 조사에서 구축한 추가 신규패널을 추적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2019~2021년 3년간의 자료가 각 횡단면에서 얼마나 대표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재정패널조사」는 13차 조사부터 표본을 크게 확대하여 횡단면의 대표성이 크게 개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매년 전년도 조사 결과에 대해 5월경 베타버전 자료를 구축하며, 베타버전 자료는 매년 개최하는 재정패널학술회의 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

선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차 조사와 14~15차 조사의 조사 대상 가구가 일부 달라졌지만, 이로 인해 횡단면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⁸⁾

「재정패널조사」의 조사 성공 관측치 중 일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 소득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서 소득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일부 관측치는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2019년 8,662가구, 2020년 8,705가구, 2021년 8,713가구이다.

〈표 V-1〉 분석대상 표본 수

(단위: 가구)

조사차수	조사대상연도	조사 성공 표본 수	분석 대상 표본 수
13차	2019년	8,792	8,662
14차	2020년	8,798	8,705
15차	2021년	8,784	8,713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조세·재정정책의 수혜·부담 분석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은 각 가구의 소득과 인적 특성이다.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규모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한 연금제도, 노인 또는 아동 지원 복지제도, 교육·보육서비스 등 일부 사회서비스 제도는 연령이 중요한 지원 대상 요건이다. 소득세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분포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 인적 특성이 다르다면 이 또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대상 가구의 소득분위별 인적 특성을 살펴보자.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수준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구의 인적 특성에 대

8) 다만 2020년에 수행된 13차 조사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표본이 구축되었고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표본설계에서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자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지역, 성별, 연령 등 표본설계 시 고려한 요소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질지라도 대면조사의 특성상 이러한 조사에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집단이 표본으로 선택되어 조사의 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본다.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는 대체로 1~2인 고령가
구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이 계층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9명으로 2명이 채 되
지 않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고령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기초연금,
의료혜택 등 고령자 대상 지원이 이 계층에 주로 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
가구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3~8분위 등 중간 소득계층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교육·보육서비스나 자녀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중간 소득계층에 더 많이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미성년 가구원 수는 다른 소득계층
보다 크게 낮아 이 소득계층의 교육·보육서비스나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혜
택 또한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2〉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단위: 명, 세)

소득분위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미성년 가구원 수			미성년 가구원 평균 연령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3.00	2.97	2.93	51.85	52.63	52.87	0.73	0.73	0.70	9.77	9.77	9.95
1분위	1.97	1.94	1.89	68.95	69.80	70.31	0.21	0.19	0.19	10.62	10.23	10.73
2분위	2.72	2.49	2.53	56.53	60.32	58.99	0.64	0.49	0.53	9.86	9.51	9.89
3분위	3.13	2.95	3.00	50.68	54.19	53.07	0.91	0.76	0.87	8.40	9.00	9.71
4분위	3.00	3.09	2.94	49.28	50.02	50.98	0.86	0.92	0.76	8.85	8.99	9.63
5분위	3.20	3.23	3.07	49.19	49.31	49.18	0.90	0.95	0.91	9.69	9.51	9.33
6분위	3.20	3.16	3.21	48.03	47.88	49.40	0.91	0.91	0.83	10.37	9.89	9.79
7분위	3.10	3.22	3.17	48.83	47.83	48.36	0.77	0.86	0.89	9.80	9.84	10.33
8분위	3.28	3.20	3.15	49.00	48.91	48.46	0.75	0.73	0.76	9.93	10.10	9.68
9분위	3.28	3.25	3.18	48.30	48.68	49.33	0.77	0.75	0.66	10.38	10.58	10.56
10분위	3.16	3.16	3.17	49.67	49.28	50.32	0.62	0.69	0.64	10.55	10.22	10.60

주: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자료의 균등화 및 실질화

본 연구는 균등화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균등화는 가계 간 소득, 조세 부담, 재정수혜 등의 금액을 비교할 때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많을수록 구매력을 고려한 실제 소득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득 등을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다. 또한 분석 단위는 개인인데, 이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지만 분석에 활용되는 가중치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하여 변환한 값을 활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등화 방식과 가중치 변환은 OECD와 한국의 통계청 등이 소득 분배지표 추정 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2019~2021년 3년간의 소득, 조세부담, 재정수혜 등을 비교할 때 실질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서로 다른 시점 간의 소득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가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명목금액을 실질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명목소득이 같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표 V-3>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모든 금액 변수들을 실질화한다.

<표 V-3>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20년=100)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99,466	100,000	102,5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2.1. 소비자물가지수」,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6. 30.

3.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가. 순수혜

[그림 V-1]~[그림 V-3]은 각각 2019~2021년의 소득분위별 평균적인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그리고 재정수혜에서 조세부담을 차감한 순수혜 규모의 추정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표 V-4>~<표 V-6>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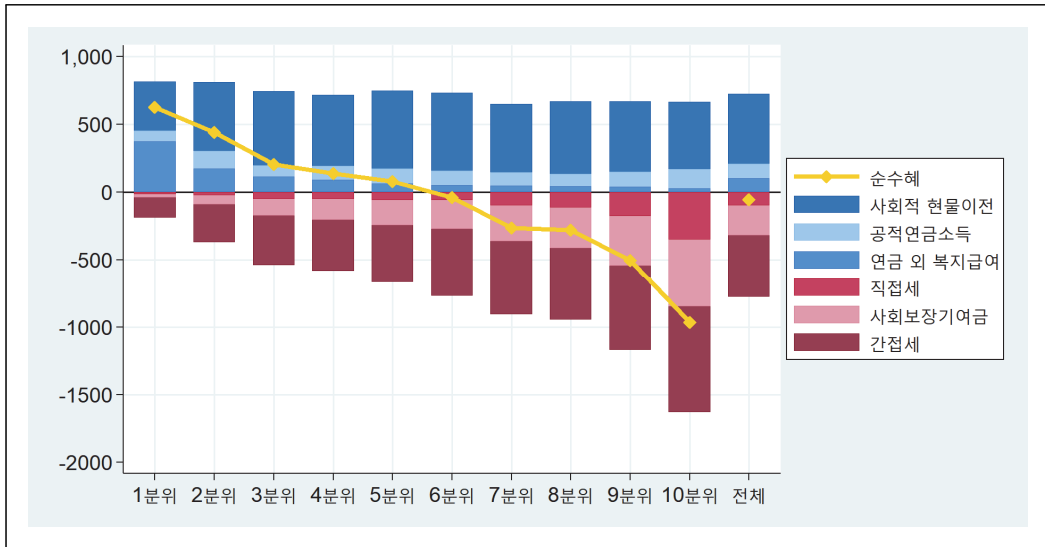
시한다.

먼저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전체 가계의 평균적인 모습을 살펴보자. 2019~2021년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가계는 2019년에는 56만원을 순부담하였지만 2020~2021년에는 각각 30만원과 23만원을 순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혜 중에는 대체로 사회적 현물이전의 비중이 높았으며, 조세부담 중에는 간접세의 비중이 컸다. 2021년 기준 평균 수혜액은 총 829만원이었는데, 이 중 62.7%인 520만원이 사회적 현물이전이였다. 연금 외 복지급여와 공적연금소득은 각각 179만원과 131만원이었다. 또한 같은 해 평균 부담액은 총 807만원이었는데, 이 중 57.8%인 466만원이 간접세였다.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인한 부담액은 각각 107만원과 233만원이었다.

2019~2021년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순수혜의 소득분위별 변화 양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소득계층 간 차이는 재정수혜보다는 조세부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재정수혜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도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재정정책에 따른 순수혜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작아졌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현물이전이 재정수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연금 외 복지급여가 재정수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수혜액은 총 944만원이었는데, 이 중 51.4%인 485만원이 연금 외 복지급여였다. 조세부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이 크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소득 9분위 이하 계층은 총 조세부담 중 간접세의 비중이 50%를 넘었지만, 소득 10분위 계층의 조세부담 중 간접세 비중은 45.7%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한편 직접세 부담은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해 소득 10분위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2021년 기준 소득 10분위 계층의 직접세 부담은 421만원으로 소득 9분위 계층의 160만원보다 260만원 많았다.

[그림 V-1]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및 순수혜(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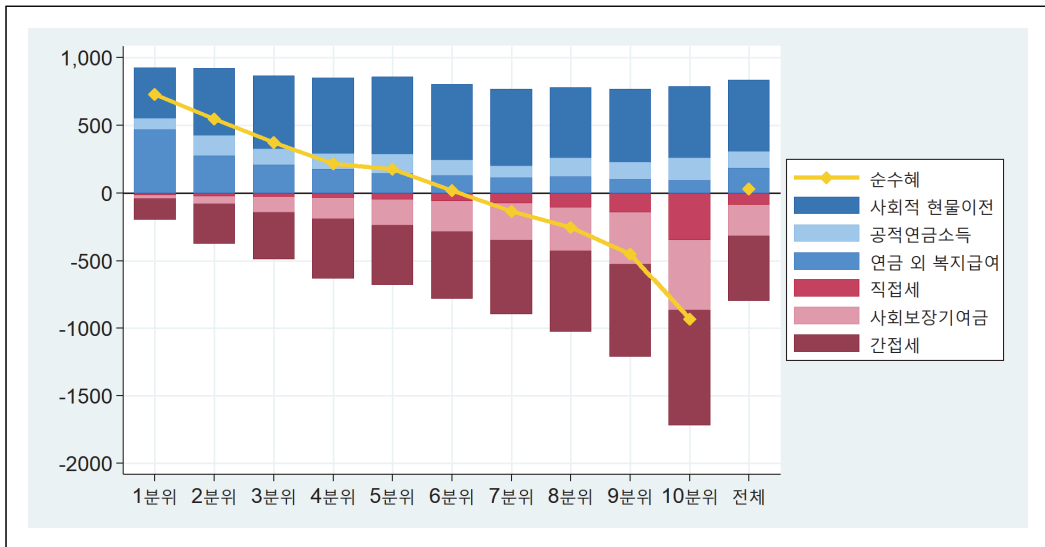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2]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및 순수혜(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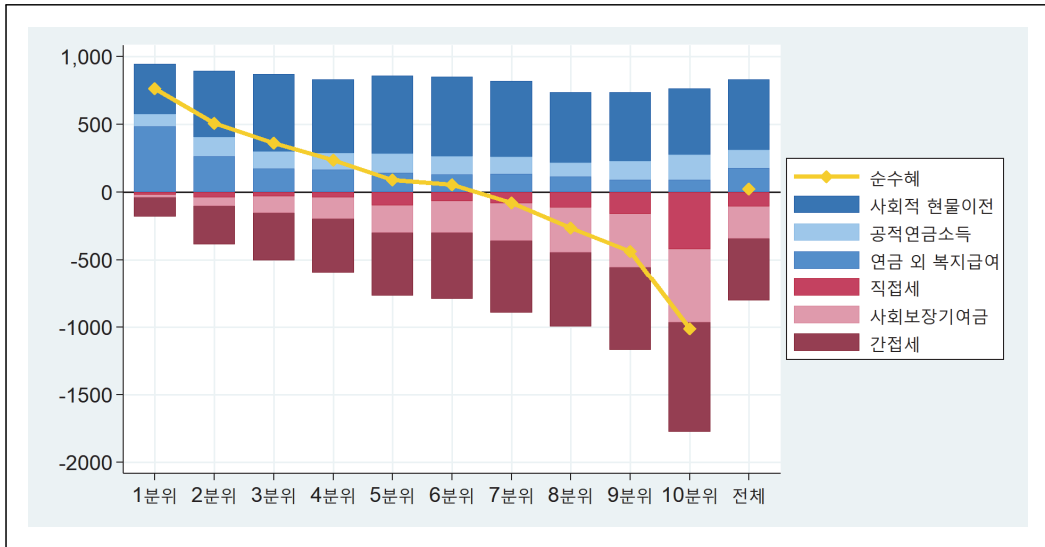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3]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및 순수혜(2021년)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4〉 소득분위별 소득, 수혜, 부담 금액(2019년)

구분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시장소득(①)	233.5	1,074.9	1,772.5	2,185.2	2,564.6	2,970.1	3,475.9	4,057.6	4,972.2	7,841.0	3,111.2
사적이전소득(②)	118.1	124.0	45.5	40.8	47.7	58.2	40.8	86.3	44.6	113.3	72.0
민간소득(③=①+②)	351.6	1,198.9	1,818.0	2,226.0	2,612.3	3,028.3	3,516.7	4,143.9	5,016.8	7,954.3	3,183.1
공직연금소득(④)	77.6	129.1	84.3	102.0	109.2	106.0	96.6	91.3	107.9	138.9	104.2
연금후소득(⑤=③+④)	429.1	1,328.0	1,902.3	2,328.0	2,721.6	3,134.3	3,613.3	4,235.1	5,124.6	8,093.2	3,287.3
연금 외 복지급여(⑥)	373.3	174.5	113.4	92.0	65.0	52.9	47.8	42.9	40.4	28.8	103.2
총소득(⑦=⑤+⑥)	802.4	1,502.5	2,015.7	2,420.0	2,786.6	3,187.2	3,661.1	4,278.0	5,165.0	8,122.0	3,390.5
직접세(⑧)	16.5	24.4	49.6	51.2	58.0	59.8	97.3	112.7	177.4	348.3	99.3
사회보장기여금(⑨)	24.3	66.3	123.1	153.4	184.2	209.6	264.7	299.0	364.6	500.5	218.7
차분가능소득(⑩=⑦-⑧-⑨)	761.6	1,411.8	1,843.0	2,215.5	2,544.4	2,917.9	3,299.1	3,866.4	4,623.1	7,273.2	3,072.5
간접세(⑪)	148.7	278.8	364.3	376.3	425.7	501.0	546.2	536.5	630.3	781.6	458.7
세후소득(⑫=⑩-⑪)	612.9	1,133.0	1,478.8	1,839.1	2,118.7	2,416.8	2,752.9	3,329.8	3,992.8	6,491.6	2,613.8
사회적 한몰이전(⑬)	364.4	504.3	544.5	522.9	573.1	572.9	502.5	535.5	519.6	496.4	513.7
최종소득(⑭=⑫+⑬)	977.3	1,637.3	2,023.2	2,362.0	2,691.9	2,989.7	3,255.4	3,865.4	4,512.4	6,988.0	3,127.5
순수혜(⑮=⑭-⑥-⑧-⑨-⑪+⑬)	625.7	438.4	205.2	136.0	79.5	-38.6	-261.3	-278.5	-504.3	-966.3	-55.6
총수혜(⑯=⑭+⑮)	815.2	807.9	742.2	716.9	747.4	731.8	646.9	669.7	667.9	664.1	721.1
비	45.8	21.6	15.3	12.8	8.7	7.2	7.4	6.4	6.0	4.3	14.3
중	9.5	16.0	11.4	14.2	14.6	14.5	14.9	13.6	16.2	20.9	14.5
사회적 한몰이전 비중(⑬/⑭)	44.7	62.4	73.4	72.9	76.7	78.3	77.7	80.0	77.8	74.7	71.2
총부담(⑰=⑮+⑯)	189.5	399.5	536.9	580.9	667.9	770.4	908.2	948.2	1,172.2	1,630.4	776.8
비	8.7	6.6	9.2	8.8	8.7	7.8	10.7	11.9	15.1	21.4	12.8
중	12.8	17.9	22.9	26.4	27.6	27.2	29.1	31.5	31.1	30.7	28.2
간접세(⑪/⑰)	78.5	75.4	67.8	64.8	63.7	65.0	60.1	56.6	53.8	47.9	59.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V-5〉 소득분위별 소득, 수혜, 부담 금액(2020년)

구분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시장소득(①)	143.3	821.0	1,559.2	2,083.0	2,494.1	2,968.9	3,528.6	4,073.9	4,997.6	8,171.7	3,080.1
사적이전소득(②)	99.9	147.9	81.6	50.9	31.1	49.1	27.9	48.7	49.6	117.0	70.5
민간소득(③=①+②)	243.2	968.9	1,640.7	2,133.9	2,525.3	3,017.9	3,556.5	4,122.7	5,047.3	8,288.7	3,150.5
공적연금소득(④)	80.4	149.3	118.9	117.0	142.2	112.0	86.5	137.8	127.7	163.8	123.6
연금후소득(⑤=③+④)	323.7	1,118.2	1,759.6	2,250.9	2,667.5	3,129.9	3,643.1	4,260.5	5,175.0	8,452.5	3,274.2
연금 외 복지급여(⑥)	469.4	276.6	207.3	175.0	146.4	129.9	112.2	120.7	101.2	93.8	183.5
총소득(⑦=⑤+⑥)	793.1	1,394.9	1,966.9	2,425.9	2,813.9	3,259.8	3,755.3	4,381.2	5,276.2	8,546.3	3,457.7
직접세(⑧)	15.0	22.2	29.1	36.1	47.8	57.8	75.7	107.8	141.4	345.2	87.7
사회보장기여금(⑨)	26.3	56.1	114.2	153.9	187.7	223.4	268.5	317.0	381.8	524.1	225.0
처분가능소득(⑩=⑦-⑧-⑨)	751.8	1,316.6	1,823.6	2,235.9	2,578.4	2,978.7	3,411.0	3,956.3	4,752.9	7,677.0	3,145.0
간접세(⑪)	155.6	294.8	345.0	445.9	447.0	504.2	555.2	604.6	690.7	851.3	489.0
세후소득(⑫=⑩-⑪)	596.2	1,021.7	1,478.5	1,789.9	2,131.5	2,474.6	2,855.8	3,351.7	4,062.2	6,825.7	2,656.0
사회적 한물이전(⑬)	372.5	494.1	537.3	558.5	569.1	561.5	565.9	518.2	538.2	529.5	524.3
최중소득(⑭=⑫+⑬)	968.8	1,515.8	2,015.8	2,348.4	2,700.6	3,036.1	3,421.7	3,869.9	4,600.4	7,355.2	3,180.3
순수혜(⑮=④+⑥-⑧-⑨+⑬)	725.5	546.9	375.1	214.5	175.3	18.2	-134.8	-252.7	-446.9	-933.5	29.8
총부담(⑯=④+⑥+⑪)	922.4	920.1	863.5	850.4	857.7	803.4	764.7	776.7	767.1	787.1	831.5
비	50.9	30.1	24.0	20.6	17.1	16.2	14.7	15.5	13.2	11.9	22.1
중	8.7	16.2	13.8	13.8	16.6	13.9	11.3	17.7	16.7	20.8	14.9
사회적 한물이전 비중(⑬/⑭)	40.4	53.7	62.2	65.7	66.4	69.9	74.0	66.7	70.2	67.3	63.1
총부담(⑯=④+⑥+⑪)	196.8	373.1	488.4	636.0	682.4	785.3	899.5	1,029.5	1,214.0	1,720.6	801.7
비	7.6	5.9	6.0	5.7	7.0	7.4	8.4	10.5	11.7	20.1	10.9
중	13.3	15.0	23.4	24.2	27.5	28.4	29.9	30.8	31.5	30.5	28.1
간접세(⑪/⑯)	79.0	79.0	70.6	70.1	65.5	64.2	61.7	58.7	56.9	49.5	61.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4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V-6〉 소득분위별 소득, 수혜, 부담 금액(2021년)

구분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시장소득(①)	176.3	935.8	1,669.8	2,151.7	2,592.9	3,036.5	3,578.5	4,216.6	5,095.1	8,833.7	3,224.8
사적이전소득(②)	109.3	147.1	64.9	63.7	36.2	57.4	31.9	73.1	39.6	50.7	67.3
민간소득(③=①+②)	285.6	1,082.8	1,734.6	2,215.4	2,629.1	3,093.9	3,610.4	4,289.7	5,134.7	8,884.5	3,292.2
공적연금소득(④)	90.8	139.3	125.8	123.1	142.8	134.0	125.1	100.6	140.7	186.6	130.9
연금후소득(⑤=③+④)	376.4	1,222.1	1,860.5	2,338.5	2,772.0	3,227.9	3,735.5	4,390.3	5,275.4	9,071.0	3,423.1
연금 외 복지급여(⑥)	484.8	265.3	171.4	163.5	140.7	129.9	134.5	114.8	88.8	89.8	178.5
총소득(⑦=⑤+⑥)	861.2	1,487.4	2,031.9	2,502.0	2,912.7	3,357.8	3,870.0	4,505.1	5,364.2	9,160.8	3,601.6
직접세(⑧)	20.3	39.6	31.2	40.9	99.4	67.8	81.1	113.5	160.4	420.6	107.3
사회보장기여금(⑨)	18.9	60.7	123.7	156.9	198.7	229.9	275.9	330.0	394.0	544.3	233.1
처분가능소득(⑩=⑦-⑧-⑨)	822.0	1,387.1	1,876.9	2,304.2	2,614.6	3,060.0	3,513.0	4,061.6	4,809.9	8,196.0	3,261.2
간접세(⑪)	141.1	282.7	349.6	397.2	470.8	497.5	539.0	555.3	618.4	812.5	466.1
세후소득(⑫=⑩-⑪)	680.9	1,104.4	1,527.3	1,907.0	2,143.8	2,562.6	2,974.0	3,506.3	4,191.4	7,383.5	2,795.1
사회적 한몰이전(⑬)	367.9	487.3	569.5	543.5	574.6	584.6	559.2	521.1	506.8	486.0	520.1
최종소득(⑭=⑫+⑬)	1,048.8	1,591.7	2,096.9	2,450.5	2,718.4	3,147.2	3,533.2	4,027.4	4,698.2	7,869.5	3,315.2
순수혜(⑮=⑭-⑧-⑨-⑩+⑬)	763.2	508.8	362.2	235.1	89.2	53.2	-77.2	-262.3	-436.5	-1,015.0	23.0
총부담(⑯=④+⑥+⑧)	943.5	891.9	866.8	830.1	858.1	848.5	818.8	736.5	736.3	762.3	829.5
비	51.4	29.7	19.8	19.7	16.4	15.3	16.4	15.6	12.1	11.8	21.5
중	9.6	15.6	14.5	14.8	16.6	15.8	15.3	13.7	19.1	24.5	15.8
사회적 한몰이전 비중(⑬/⑭)	39.0	54.6	65.7	65.5	67.0	68.9	68.3	70.7	68.8	63.7	62.7
총부담(⑯=⑥+⑧+⑩)	180.4	383.1	504.6	595.0	768.9	795.2	896.0	998.9	1,172.8	1,777.3	806.5
비	11.3	10.3	6.2	6.9	12.9	8.5	9.1	11.4	13.7	23.7	13.3
중	10.5	15.9	24.5	26.4	25.8	28.9	30.8	33.0	33.6	30.6	28.9
간접세(⑪/⑭)	78.2	73.8	69.3	66.8	61.2	62.6	60.2	55.6	52.7	45.7	57.8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배타변진)를 이용하여 저차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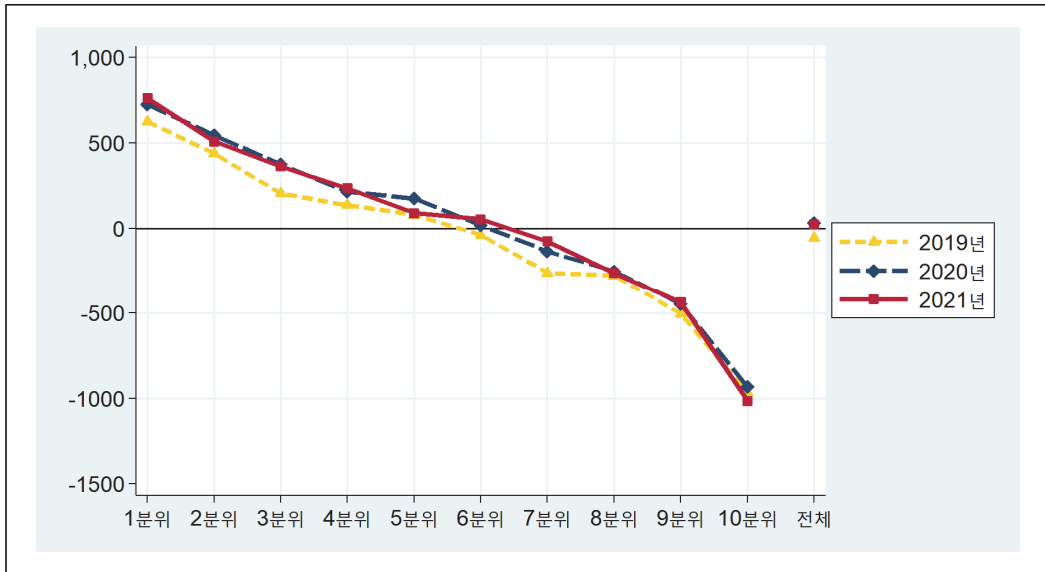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혜·부담 분석 결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순수혜 규모는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모두 소득 5분위 이하 계층은 순수혜 계층이며, 7분위 이상 계층은 순부담 계층으로 추정되었다. 소득 6분위 계층은 2019년에는 순부담 계층이었으나 2020~2021년에는 순수혜 계층으로 바뀌었다. 또한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계층의 순부담 규모는 소득 9분위 계층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이 전반적으로 가계 간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2021년 가계의 순수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확장한 2020~2021년의 순수혜 규모는 2019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의 순수혜 규모는 2019년보다 평균적으로 각각 85만원과 79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총수혜와 총부담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균적인 총수혜 규모는 2019년의 721만원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832만원과 829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평균적인 총부담 규모 또한 2019년의 777만원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802만원과 80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즉, 2019년보다 2020~2021년에 순수혜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총부담과 총수혜가 모두 증가하였지만 총부담보다 총수혜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2019~2021년의 순수혜 규모의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자. 2020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순수혜 규모가 2019년보다 증가하였다. 대체로 저소득층인 소득 1~3분위 계층의 순수혜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소득 3분위 계층의 순수혜는 170만원 정도 증가해 전체 소득계층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한 소득 7분위 계층의 순수혜 금액도 126만원 정도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소득 8분위 계층의 순수혜 금액은 26만원 증가해 다른 소득계층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소득 10분위 계층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순수혜 규모가 33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2021년의 순수혜 규모는 2020년보다 81만원가량 감소해 2021년의 순수혜 규모가 2019년보다 49만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소득계층 중 유일하게 소득 10분위 계층에서만 2021년의 순수혜 규모가 2019년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V-4] 연도별 · 소득분위별 순수혜 금액 비교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7> 연도별 · 소득분위별 순수혜 금액 비교

(단위: 만원)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폭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55.6	29.8	23.0	85.4	-6.8	78.6
1분위	625.7	725.5	763.2	99.8	37.7	137.5
2분위	438.4	546.9	508.8	108.6	-38.1	70.5
3분위	205.2	375.1	362.2	169.8	-12.8	157.0
4분위	136.0	214.5	235.1	78.5	20.6	99.1
5분위	79.5	175.3	89.2	95.8	-86.1	9.7
6분위	-38.6	18.2	53.2	56.7	35.1	91.8
7분위	-261.3	-134.8	-77.2	126.5	57.6	184.1
8분위	-278.5	-252.7	-262.3	25.8	-9.6	16.2
9분위	-504.3	-446.9	-436.5	57.4	10.4	67.8
10분위	-966.3	-933.5	-1,015.0	32.8	-81.5	-48.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지금까지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세부 제도들이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본다.

나. 조세부담

1) 직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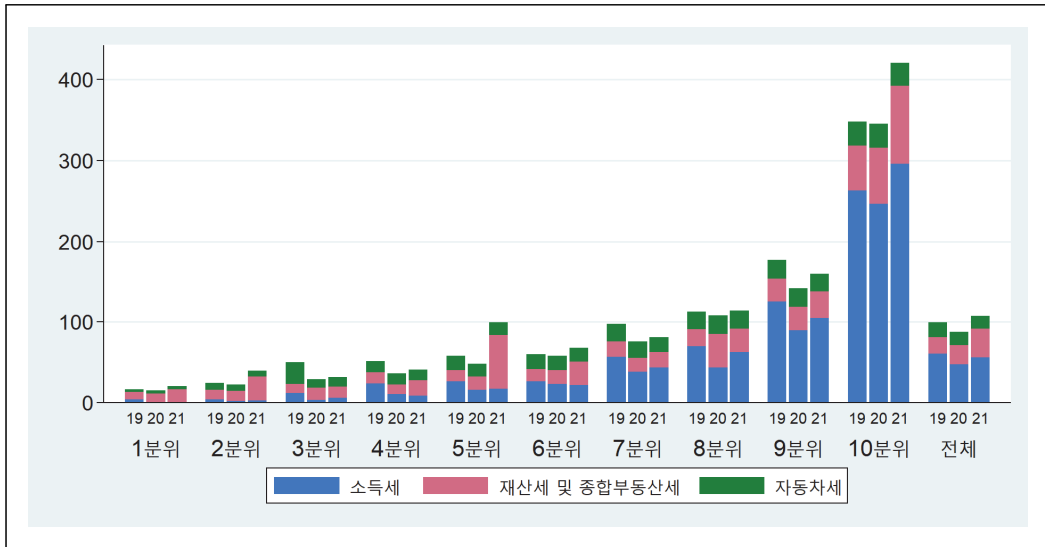
직접세 부담은 2020년에 감소한 뒤 2021년에 증가하였다.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2019년에 99만원이던 직접세 부담이 2020년에는 88만원으로 11.7%(12만원)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107만원으로 전년보다 22.4%(20만원)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의 직접세 부담은 2019년보다 컸다. 2021년의 직접세 부담이 2019년보다 커진 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증가가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관찰된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전체 평균은 2019년 20만원에서 2020년 24만원, 2021년 35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보다 2020년에는 20.9%(4만원), 2021년에는 45.7%(11만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전년 대비 소득세 부담은 2020년에는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증가했지만, 2021년의 부담이 2019년보다 크지는 않았다. 자동차세 부담은 2020~2021년에 매년 감소하였다.

2021년에 직접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소득계층은 소득 10분위와 5분위 계층이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소득 10분위 계층의 직접세 부담은 평균 75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 50만원이 소득세 부담, 그리고 27만원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 때문이었다. 소득 10분위 계층의 자동차세 부담은 1만원 감소하였다. 한편 소득 5분위 계층의 전년 대비 2021년 직접세 부담의 증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계층의 2021년 총 직접세 부담 증가는 52만원이었는데 이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49만원이었다.

직접세 부담 중 세부 항목의 비중은 소득계층별로 다르다. 은퇴연령가구의 비중이 높은 소득 1~2분위 계층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이 높고 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또한 소득 3분위 계층은 다른 소득분위와 비교해 자동차세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접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소득세의 과세기반은 현재의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의 과세기반은 현재의 소득보다는 과거의 소득을 바탕으로 축적한 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소득계층과의 연관성은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5] 연도별 · 소득분위별 직접세 세부 항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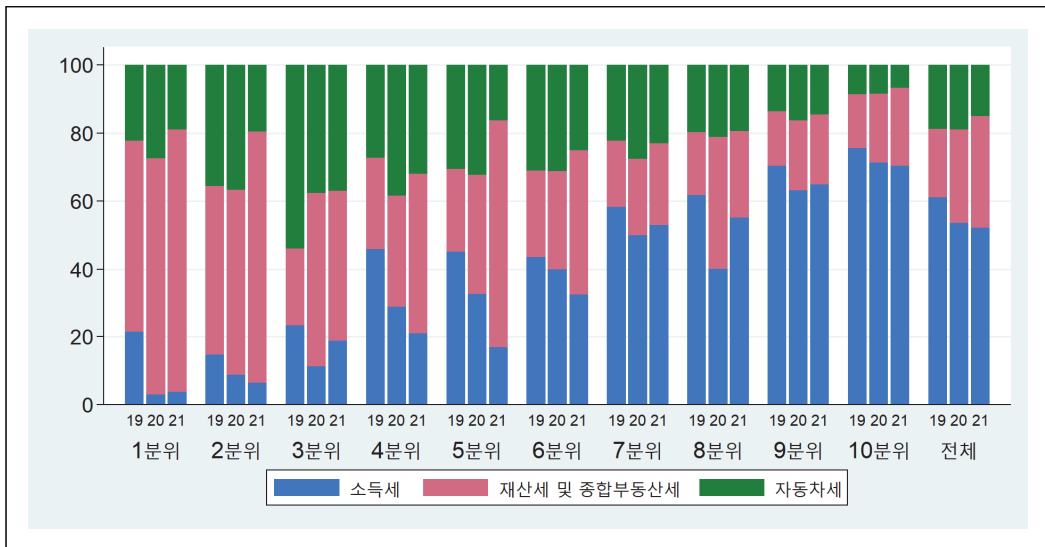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6] 연도별 · 소득분위별 직접세 세부 항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8〉 연도별 · 소득분위별 직접세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직접세 전체	전체	99.3	87.7	107.3	-11.7	19.6	-11.7	22.4
	1분위	16.5	15.0	20.3	-1.5	5.3	-9.0	35.6
	2분위	24.4	22.2	39.6	-2.2	17.4	-9.0	78.5
	3분위	49.6	29.1	31.2	-20.5	2.1	-41.3	7.3
	4분위	51.2	36.1	40.9	-15.1	4.8	-29.4	13.3
	5분위	58.0	47.8	99.4	-10.2	51.7	-17.6	108.2
	6분위	59.8	57.8	67.8	-2.0	10.1	-3.4	17.4
	7분위	97.3	75.7	81.1	-21.6	5.4	-22.2	7.1
	8분위	112.7	107.8	113.5	-4.9	5.7	-4.3	5.3
	9분위	177.4	141.4	160.4	-35.9	19.0	-20.3	13.4
	10분위	348.3	345.2	420.6	-3.1	75.4	-0.9	21.8
소득세	전체	60.7	47.1	56.1	-13.6	9.1	-22.5	19.2
	1분위	3.5	0.4	0.8	-3.1	0.3	-87.3	68.4
	2분위	3.6	1.9	2.5	-1.7	0.6	-46.2	30.2
	3분위	11.6	3.3	5.9	-8.3	2.6	-71.7	79.5
	4분위	23.5	10.4	8.6	-13.1	-1.8	-55.8	-17.2
	5분위	26.2	15.5	16.8	-10.7	1.3	-40.8	8.4
	6분위	26.1	23.1	21.9	-3.0	-1.2	-11.5	-5.1
	7분위	56.8	37.9	43.0	-18.8	5.1	-33.2	13.4
	8분위	69.6	43.3	62.7	-26.2	19.4	-37.7	44.7
	9분위	124.9	89.4	104.2	-35.5	14.8	-28.4	16.5
10분위	263.1	246.4	296.0	-16.6	49.6	-6.3	20.1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전체	19.9	24.0	35.0	4.2	11.0	20.9	45.7
	1분위	9.3	10.4	15.7	1.1	5.3	12.4	50.4
	2분위	12.2	12.2	29.4	-0.0	17.2	-0.1	141.7
	3분위	11.3	14.9	13.8	3.6	-1.1	32.3	-7.5
	4분위	13.7	11.9	19.2	-1.8	7.4	-13.4	62.3
	5분위	14.1	16.9	66.3	2.7	49.5	19.5	293.5
	6분위	15.1	16.6	28.8	1.5	12.2	10.2	73.2
	7분위	18.9	17.0	19.4	-1.9	2.4	-10.2	14.4
	8분위	20.9	41.7	28.7	20.8	-13.1	99.6	-31.3
	9분위	28.2	29.0	32.9	0.8	3.9	2.9	13.4
10분위	55.3	69.7	96.3	14.4	26.6	26.0	38.2	

〈표 V-8〉의 계속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자동차세	전체	18.8	16.6	16.2	-2.2	-0.4	-11.5	-2.4
	1분위	3.7	4.1	3.9	0.4	-0.2	12.2	-5.7
	2분위	8.7	8.1	7.8	-0.5	-0.4	-6.3	-4.4
	3분위	26.7	10.9	11.6	-15.8	0.6	-59.1	5.9
	4분위	14.0	13.9	13.1	-0.1	-0.8	-0.8	-5.7
	5분위	17.7	15.4	16.3	-2.3	0.9	-13.0	5.7
	6분위	18.6	18.0	17.0	-0.6	-0.9	-3.1	-5.2
	7분위	21.7	20.8	18.7	-0.8	-2.2	-3.8	-10.3
	8분위	22.2	22.8	22.2	0.5	-0.6	2.4	-2.6
	9분위	24.3	23.0	23.3	-1.3	0.3	-5.3	1.3
10분위	30.0	29.1	28.3	-0.9	-0.8	-2.8	-2.9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변화의 폭이 비교적 작았다. 2019년에 219만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가계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9%(6만원)와 3.6%(8만원) 증가한 225만원과 233만원을 납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보다는 중고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대비 2021년 소득 1~2분위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감소하였고, 소득 3~4분위의 사회보장기여금은 소폭 증가하였다.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계층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이 계층의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은 5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524만원으로 4.7%(24만원)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3.8%(20만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건강보험료의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10분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5만원씩 증가하였다. 한편 전년 대비 2020~2021년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소득 8분위(5.1%)와 6분위(4.8%) 계층에서 다른 계층보다 사회보장기여금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기여금 중 건강보험료와 공적연금보험료의 비중이 크

고 고용보험료의 비중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와 공적연금보험료가 각각 49.7%와 44.6%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 계층과 같이 은퇴연령가구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건강보험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은퇴가구의 경우 공적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은퇴시 건강보험의 가입 유형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절반만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가계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영향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득 10분위 계층의 공적연금보험료 비중이 소득 9분위 계층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소득 10분위 계층에서 공적연금보험료 상한에 도달한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존재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그 상한이 매우 높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월간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상한은 각각 471,600⁹⁾, 10), 11)원과 7,047,900원¹²⁾, 13)이었다.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653>, 검색일자: 2023. 9. 21.

10) 이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9%를 적용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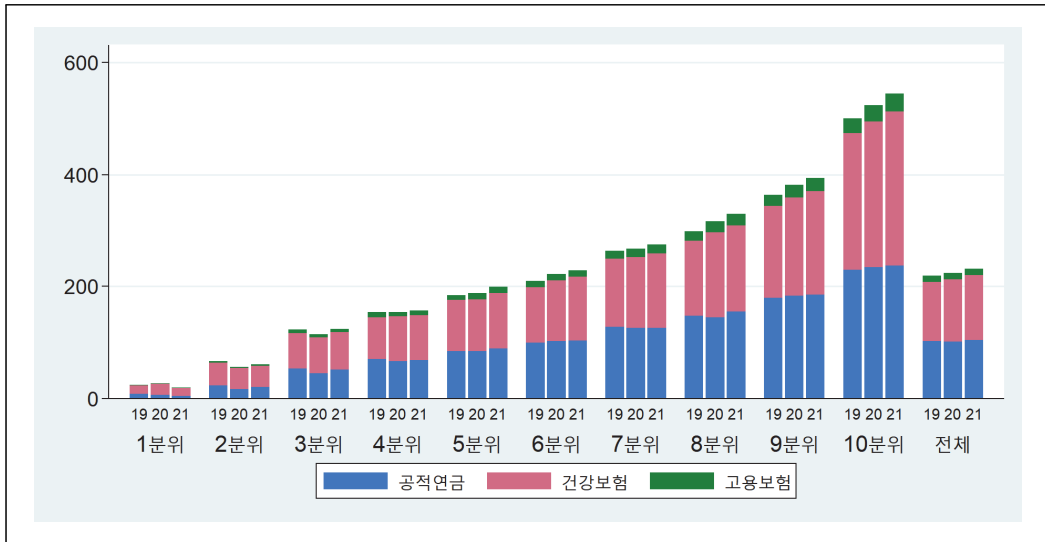
11)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 상한은 235,800원이었다.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6595>, 검색일자: 2023. 9. 21.

13)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 상한은 3,523,950원이었다.

[그림 V-7] 연도별 · 소득분위별 사회보장기여금 세부 항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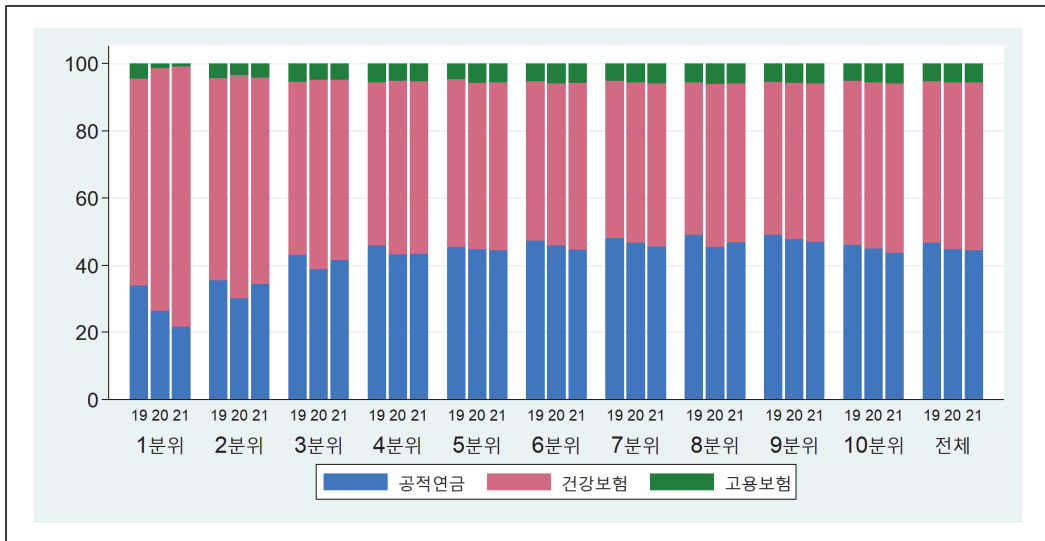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8] 연도별 · 소득분위별 사회보장기여금 세부 항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9〉 연도별 · 소득분위별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사회보장 기여금 전체	전체	218.7	225.0	233.1	6.3	8.0	2.9	3.6
	1분위	24.3	26.3	18.9	1.9	-7.3	7.9	-27.9
	2분위	66.3	56.1	60.7	-10.2	4.6	-15.4	8.2
	3분위	123.1	114.2	123.7	-8.9	9.5	-7.2	8.3
	4분위	153.4	153.9	156.9	0.5	3.0	0.4	1.9
	5분위	184.2	187.7	198.7	3.5	11.0	1.9	5.9
	6분위	209.6	223.4	229.9	13.8	6.6	6.6	2.9
	7분위	264.7	268.5	275.9	3.9	7.4	1.5	2.7
	8분위	299.0	317.0	330.0	18.1	13.0	6.0	4.1
	9분위	364.6	381.8	394.0	17.3	12.2	4.7	3.2
	10분위	500.5	524.1	544.3	23.7	20.1	4.7	3.8
공적 연금	전체	102.1	100.8	103.9	-1.3	3.1	-1.3	3.0
	1분위	8.2	6.9	4.1	-1.3	-2.8	-16.3	-40.6
	2분위	23.4	16.9	20.8	-6.6	3.9	-28.0	23.3
	3분위	53.1	44.5	51.4	-8.6	6.9	-16.2	15.4
	4분위	70.6	66.8	68.3	-3.8	1.5	-5.4	2.3
	5분위	83.9	84.2	88.6	0.3	4.4	0.3	5.2
	6분위	99.1	102.6	102.7	3.4	0.1	3.5	0.1
	7분위	127.5	125.4	126.0	-2.0	0.6	-1.6	0.5
	8분위	146.9	144.4	154.9	-2.6	10.5	-1.8	7.3
	9분위	178.9	182.4	185.2	3.6	2.8	2.0	1.5
	10분위	231.1	235.8	238.3	4.7	2.5	2.0	1.1
건강 보험	전체	104.9	111.5	115.8	6.6	4.3	6.3	3.9
	1분위	15.0	19.0	14.7	4.0	-4.3	26.7	-22.7
	2분위	39.9	37.3	37.4	-2.6	0.1	-6.6	0.2
	3분위	63.2	64.2	66.3	1.0	2.1	1.6	3.2
	4분위	74.1	79.2	80.1	5.1	1.0	6.9	1.2
	5분위	91.4	92.5	98.9	1.1	6.4	1.2	6.9
	6분위	99.2	107.4	114.0	8.1	6.7	8.2	6.2
	7분위	123.3	128.0	133.5	4.7	5.5	3.8	4.3
	8분위	135.2	153.2	155.2	18.0	2.0	13.3	1.3
	9분위	165.6	177.1	185.3	11.5	8.2	6.9	4.6
	10분위	243.0	258.5	273.7	15.5	15.3	6.4	5.9

〈표 V-9〉의 계속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고용 보험	전체	11.7	12.7	13.4	1.0	0.7	8.6	5.3
	1분위	1.1	0.4	0.2	-0.7	-0.2	-64.6	-57.0
	2분위	3.0	2.0	2.5	-1.0	0.6	-34.2	29.9
	3분위	6.8	5.5	6.0	-1.3	0.5	-19.2	9.3
	4분위	8.7	8.0	8.5	-0.7	0.5	-8.4	6.4
	5분위	8.8	11.0	11.1	2.1	0.2	23.8	1.7
	6분위	11.2	13.4	13.3	2.2	-0.2	20.1	-1.2
	7분위	13.9	15.0	16.4	1.1	1.3	8.2	8.9
	8분위	16.9	19.5	19.9	2.6	0.5	15.6	2.4
	9분위	20.1	22.3	23.5	2.2	1.2	10.9	5.2
10분위	26.3	29.8	32.2	3.5	2.4	13.2	8.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간접세

간접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2020년에는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가계는 459만원의 간접세를 부담하였는데, 2020년에는 이보다 6.6%(30만원) 증가한 489만원을 부담하였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7%(23만원) 감소한 466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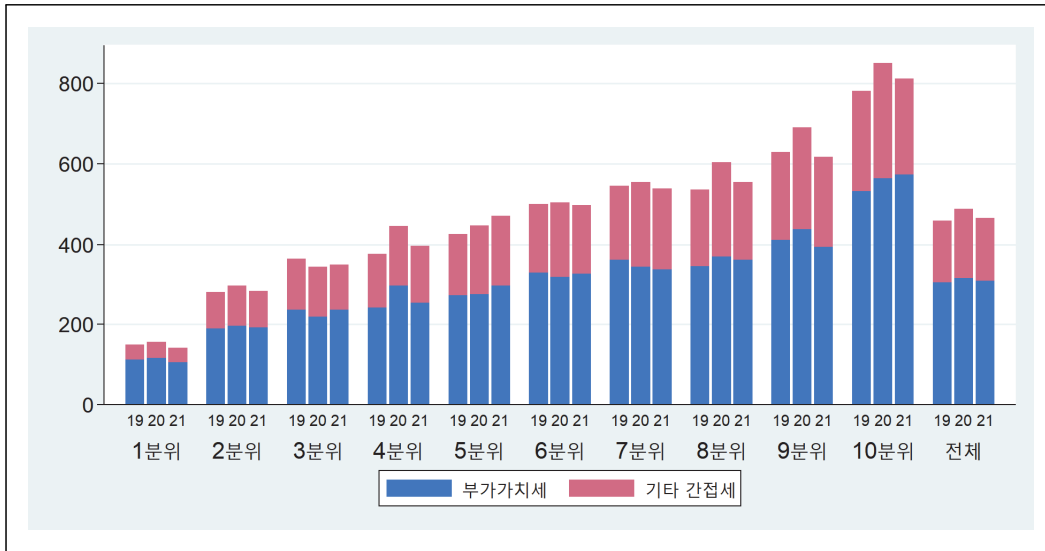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는 2019~2021년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세수 실적 추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소비세수는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소비세 귀착 시점과 실제 세수의 반영 시점 간 차이 때문이다. 가계는 소비 시점에 소비세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실제 소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세를 추정하지만 실제 세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판매자가 과세관청에 소비세를 납부하는 시점으로 그 차이가 있다. 특히, 2020~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납부를 유예한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 가계가 소비한 시점과 소비세수 반영 시점의 차이가 예년에 비해 더 컸던 시기였다.

다른 이유로는 「재정패널조사」상 소비지출 자료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 소비세수와 마찬가지로 국민계정상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한 뒤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다만 소비지출 형태에 따라 그 추세에 차이가 있는데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추세와 유사했지만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크게 증가한 후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정패널조사」에서 소비세수의 추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항목은 자동차 소비이다. 분석에서 자동차 소비를 제외하면 2019년 대비 2020년의 부가가치세수는 소폭 감소한 뒤 2021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재정패널조사」의 표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동차 소비를 잘 대변하지 못해 나타나는 오류의 가능성도 있어 간접세 부담을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간접세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4~66% 정도로 나타났다.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다. 소득 1분위 계층의 부가가치세 비중은 2021년 기준 74.7%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았다. 또한 저소득층인 소득 2~3분위 계층의 부가가치세 비중 또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유류와 자동차 등의 소비 수준이 낮아 이와 관련된 소비세 부담도 작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 10분위 계층의 부가가치세 비중도 2021년 기준 70.6%로 높았는데, 전체 소비지출에서 유류, 주류, 담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10분위 계층에서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 소비로 인한 소득 10분위 계층의 조세부담이 중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9] 연도별 · 소득분위별 간접세 세부 항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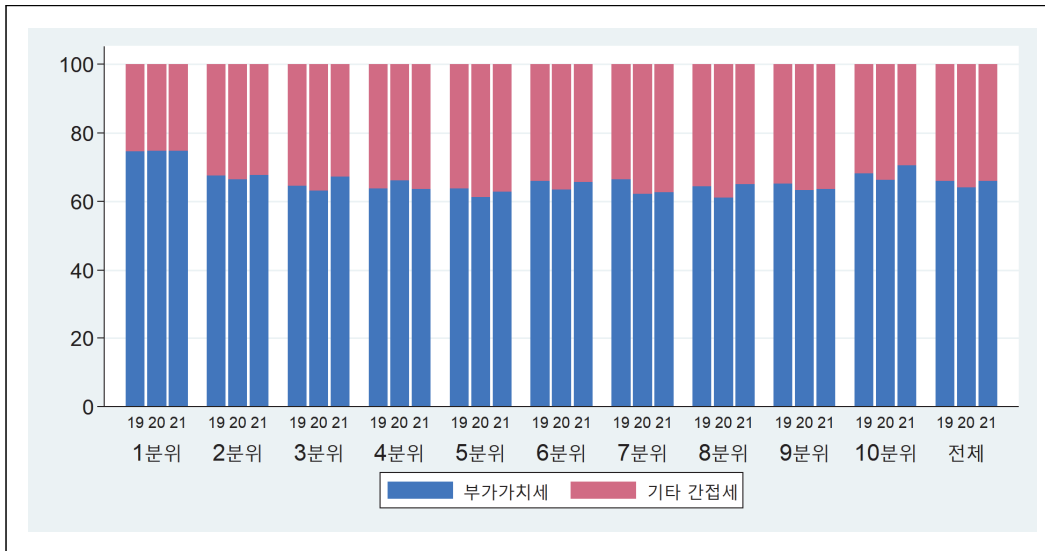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10] 연도별 · 소득분위별 간접세 세부 항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0〉 연도별 · 소득분위별 간접세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간접세 전체	전체	458.7	489.0	466.1	30.3	-22.9	6.6	-4.7
	1분위	148.7	155.6	141.1	6.9	-14.5	4.6	-9.3
	2분위	278.8	294.8	282.7	16.0	-12.1	5.7	-4.1
	3분위	364.3	345.0	349.6	-19.2	4.6	-5.3	1.3
	4분위	376.3	445.9	397.2	69.6	-48.7	18.5	-10.9
	5분위	425.7	447.0	470.8	21.3	23.8	5.0	5.3
	6분위	501.0	504.2	497.5	3.1	-6.7	0.6	-1.3
	7분위	546.2	555.2	539.0	9.0	-16.2	1.7	-2.9
	8분위	536.5	604.6	555.3	68.1	-49.3	12.7	-8.2
	9분위	630.3	690.7	618.4	60.5	-72.3	9.6	-10.5
부가 가치세	전체	302.8	313.5	307.3	10.6	-6.2	3.5	-2.0
	1분위	111.0	116.2	105.4	5.2	-10.8	4.7	-9.3
	2분위	188.4	196.0	191.6	7.5	-4.3	4.0	-2.2
	3분위	235.4	218.1	235.3	-17.3	17.2	-7.3	7.9
	4분위	240.4	294.9	252.9	54.5	-42.0	22.7	-14.2
	5분위	271.9	274.1	295.8	2.3	21.7	0.8	7.9
	6분위	330.4	319.8	326.9	-10.5	7.1	-3.2	2.2
	7분위	362.7	345.2	337.9	-17.5	-7.3	-4.8	-2.1
	8분위	346.0	369.6	361.6	23.6	-8.0	6.8	-2.2
	9분위	411.4	438.0	393.9	26.6	-44.0	6.5	-10.1
기타 간접세	전체	155.9	175.5	158.8	19.7	-16.7	12.6	-9.5
	1분위	37.7	39.4	35.7	1.7	-3.7	4.5	-9.3
	2분위	90.4	98.9	91.1	8.5	-7.8	9.4	-7.9
	3분위	128.8	126.9	114.3	-1.9	-12.6	-1.5	-9.9
	4분위	136.0	151.0	144.3	15.1	-6.7	11.1	-4.4
	5분위	153.8	172.8	175.0	19.0	2.1	12.4	1.2
	6분위	170.7	184.3	170.5	13.7	-13.8	8.0	-7.5
	7분위	183.5	210.0	201.1	26.5	-8.9	14.4	-4.2
	8분위	190.6	235.0	193.7	44.4	-41.3	23.3	-17.6
	9분위	218.9	252.7	224.5	33.9	-28.2	15.5	-11.2
10분위	249.0	286.1	239.0	37.2	-47.1	14.9	-16.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재정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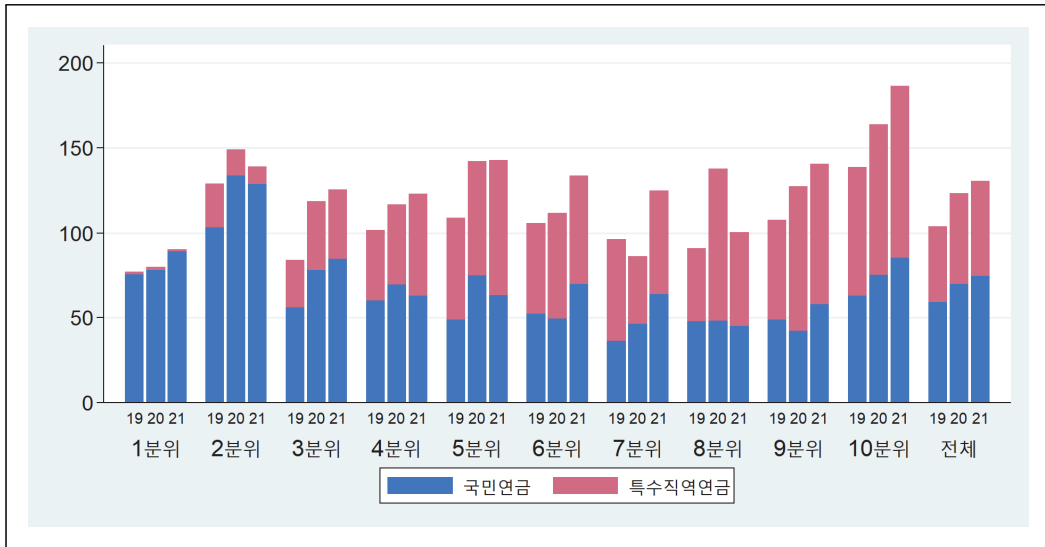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의 평균 공적연금소득은 2019년에 104만원에서 2020년에 124만원으로 18.6%(19만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도 131만원으로 전년 대비 5.8%(7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이 2020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보험료 납입액, 연령 등에 따라 과거에 정해진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경제적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다. 오히려 경제적 충격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부터 더 빠르게 이탈시켜 공적연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달리 공적연금소득은 2020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1분위 계층에 고령자가 많이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1분위 계층의 공적연금소득은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특수직역연금 때문인데, 특수직역연금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2021년 기준 평균 특수직역연금소득은 소득 1분위 계층에서 2만원이었던 반면 소득 10분위 계층에서는 101만원이었다. 특수직역연금 소득자는 연금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현재 재산소득이 발생하거나, 고령임에도 과거 경력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고소득층에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연금소득은 저소득층인 소득 1~3분위 계층과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2분위 계층의 평균 국민연금소득은 2021년 기준 129만원으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았다.

[그림 V-11] 연도별·소득분위별 공적연금소득 세부 항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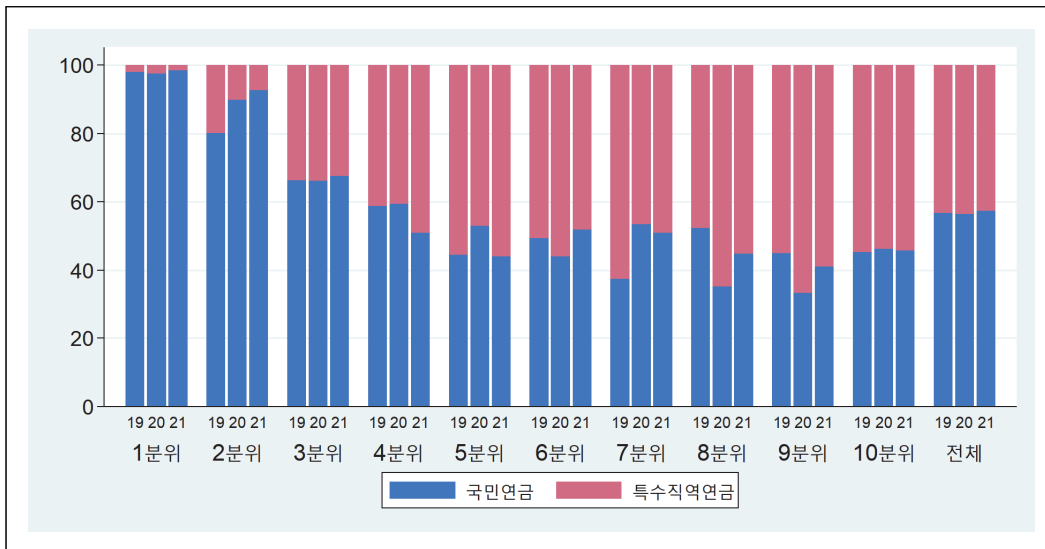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12] 연도별·소득분위별 공적연금소득 세부 항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1〉 연도별·소득분위별 공적연금소득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공적 연금소득 전체	전체	104.2	123.6	130.9	19.4	7.2	18.6	5.8
	1분위	77.6	80.4	90.8	2.8	10.4	3.7	12.9
	2분위	129.1	149.3	139.3	20.2	-10.0	15.7	-6.7
	3분위	84.3	118.9	125.8	34.6	6.9	41.0	5.8
	4분위	102.0	117.0	123.1	15.0	6.2	14.7	5.3
	5분위	109.2	142.2	142.8	33.0	0.6	30.2	0.4
	6분위	106.0	112.0	134.0	6.0	22.0	5.6	19.6
	7분위	96.6	86.5	125.1	-10.1	38.6	-10.4	44.6
	8분위	91.3	137.8	100.6	46.6	-37.2	51.0	-27.0
	9분위	107.9	127.7	140.7	19.9	13.0	18.4	10.2
10분위	138.9	163.8	186.6	24.9	22.8	18.0	13.9	
국민 연금	전체	59.2	69.8	75.2	10.6	5.4	17.9	7.7
	1분위	76.0	78.4	89.3	2.4	10.9	3.1	13.9
	2분위	103.4	134.0	129.0	30.6	-5.1	29.6	-3.8
	3분위	56.0	78.6	85.1	22.7	6.4	40.5	8.2
	4분위	60.0	69.5	62.8	9.5	-6.7	15.9	-9.6
	5분위	48.7	75.3	63.0	26.6	-12.3	54.6	-16.3
	6분위	52.3	49.5	69.6	-2.9	20.2	-5.5	40.8
	7분위	36.2	46.2	63.8	10.0	17.6	27.6	38.0
	8분위	47.8	48.2	45.1	0.4	-3.1	0.9	-6.4
	9분위	48.6	42.2	57.9	-6.4	15.6	-13.1	37.0
10분위	63.0	75.8	85.5	12.9	9.7	20.4	12.8	
특수 직역 연금	전체	45.0	53.9	55.7	8.8	1.9	19.6	3.4
	1분위	1.6	2.1	1.5	0.5	-0.5	31.3	-26.1
	2분위	25.7	15.3	10.4	-10.4	-5.0	-40.3	-32.4
	3분위	28.3	40.3	40.8	11.9	0.5	42.0	1.3
	4분위	42.0	47.5	60.3	5.5	12.8	13.0	27.0
	5분위	60.5	66.9	79.8	6.4	12.9	10.5	19.3
	6분위	53.7	62.5	64.3	8.8	1.8	16.5	2.9
	7분위	60.4	40.3	61.3	-20.1	21.0	-33.2	52.2
	8분위	43.5	89.6	55.5	46.1	-34.1	106.2	-38.1
	9분위	59.3	85.5	82.9	26.2	-2.6	44.2	-3.1
10분위	75.9	88.0	101.0	12.1	13.1	15.9	14.9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연금 외 복지급여

연금을 제외한 현금성 복지급여는 2020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2019년 가계에 이전된 현금성 복지급여는 평균적으로 103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84만원으로 77.9%(80만원) 증가한 것이다. 2021년에는 현금성 복지급여가 179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에 크게 증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과 2021년에 현금성 복지급여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인한 것이다. 2019년에는 없었던 코로나19 지원금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평균 61만원과 51만원씩 가계에 지급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지원금이 저소득층 등 특정 소득계층에 편중되어 지급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지원금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보편적인 지원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코로나19 지원금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1만원과 35만원으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적었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1분위 계층의 수혜 금액 또한 낮았고,¹⁴⁾ 소상공인 등 과거와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에 피해가 발생한 계층이 지원 대상이었던 제도들은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소득 1분위 계층에 비교적 적게 지원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0~2021년 코로나19 지원금은 전체 연금 외 복지급여 중 30% 정도를 차지했다. 그 비중이 2020년에는 33.0%였으며, 2021년에는 28.7%였다. 다만 다른 연금 외 복지급여 수준이 높은 저소득층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던 반면 다른 복지급여 수준이 낮은 고소득층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0년 기준 전체 연금 외 복지급여 중 코로나19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1분위 계층에서 10.8%, 소득 10분위 계층에서 64.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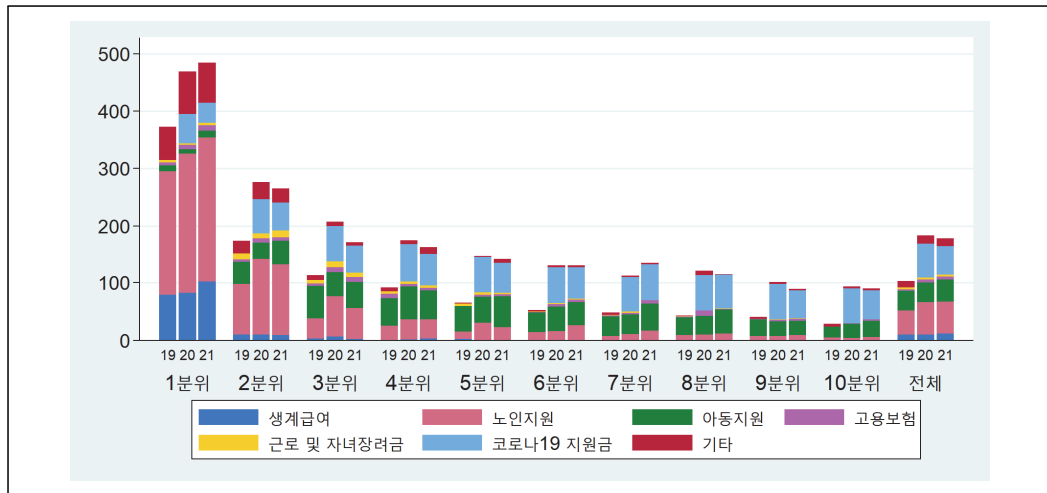
다양한 복지급여 중 노인지원 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지원금이 없었던 2019년에는 전체 연금 외 복지급여 중 40.7%가 노인지원 급여였다. 그다음으로는 아동지원 급여가 3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계급여는 9.2%를 차지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은 노인지원 급여와 생계급여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중고소득층은 아동지원 급여의 비중이 높았다. 2019년 기준 소득

14)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으로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균등화를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많아진다.

1분위 계층에서 노인지원 급여와 생계급여가 각각 57.9%와 21.1%를 차지한 반면 아동지원 급여는 2.8%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3분위 이상 계층에서는 전체 연금 외 복지급여 중 절반 이상이 아동지원 급여였으며, 특히 소득 7~9분위 계층에서는 그 비중이 70%를 상회했다.

[그림 V-13] 연도별 · 소득분위별 연금 외 복지급여 세부 항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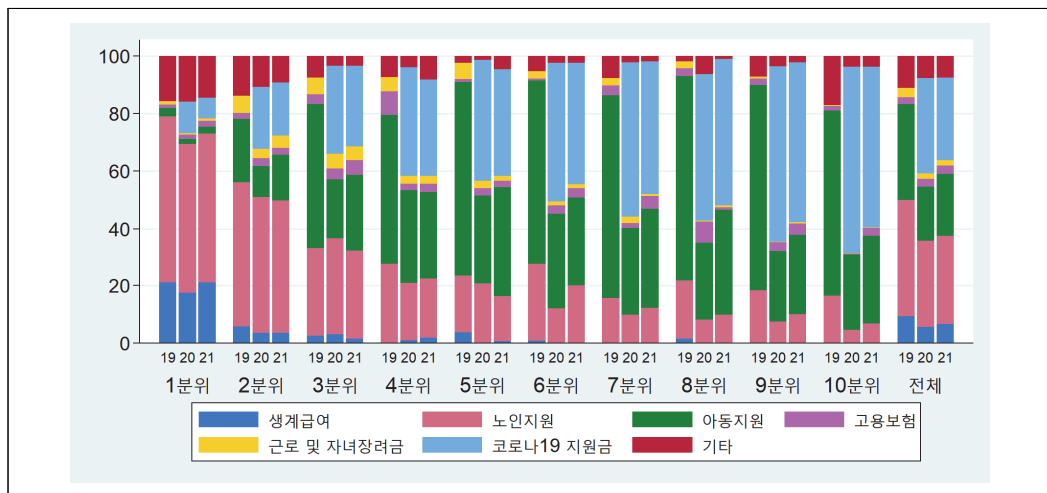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14] 연도별 · 소득분위별 연금 외 복지급여 세부 항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2〉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 외 복지급여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연금 외 복지급여 전체	전체	103.2	183.5	178.5	80.4	-5.0	77.9	-2.7
	1분위	373.3	469.4	484.8	96.1	15.4	25.8	3.3
	2분위	174.5	276.6	265.3	102.1	-11.3	58.5	-4.1
	3분위	113.4	207.3	171.4	93.9	-35.9	82.9	-17.3
	4분위	92.0	175.0	163.5	83.1	-11.5	90.3	-6.6
	5분위	65.0	146.4	140.7	81.4	-5.7	125.2	-3.9
	6분위	52.9	129.9	129.9	77.0	0.0	145.4	0.0
	7분위	47.8	112.2	134.5	64.4	22.2	134.7	19.8
	8분위	42.9	120.7	114.8	77.8	-5.9	181.4	-4.8
	9분위	40.4	101.2	88.8	60.8	-12.4	150.7	-12.2
	10분위	28.8	93.8	89.8	65.0	-4.1	225.5	-4.3
생계 급여	전체	9.5	10.1	11.8	0.6	1.8	5.9	17.4
	1분위	78.9	82.5	102.1	3.6	19.7	4.5	23.9
	2분위	9.9	9.6	9.1	-0.4	-0.4	-3.8	-4.4
	3분위	2.8	6.2	2.5	3.5	-3.7	125.4	-59.6
	4분위	0.0	1.7	3.0	1.7	1.3	9,942.5	77.1
	5분위	2.4	0.1	0.9	-2.3	0.8	-95.3	708.8
	6분위	0.4	0.0	0.1	-0.4	0.1	-100.0	0.0
	7분위	0.0	0.1	0.0	0.1	-0.1	0.0	-100.0
	8분위	0.6	0.0	0.0	-0.6	0.0	-100.0	0.0
	9분위	0.0	0.0	0.0	0.0	0.0	0.0	0.0
	10분위	0.0	0.0	0.0	0.0	0.0	0.0	0.0
노인 지원	전체	42.0	55.9	55.3	13.9	-0.6	33.1	-1.1
	1분위	216.1	243.2	252.2	27.0	9.0	12.5	3.7
	2분위	88.1	131.5	122.9	43.4	-8.6	49.2	-6.5
	3분위	35.1	70.0	53.1	34.9	-16.9	99.7	-24.2
	4분위	25.3	34.9	33.5	9.6	-1.4	37.8	-4.0
	5분위	12.8	30.1	21.9	17.3	-8.2	135.8	-27.1
	6분위	14.2	15.5	25.9	1.4	10.3	9.8	66.3
	7분위	7.5	10.9	16.3	3.5	5.4	46.2	49.1
	8분위	8.7	9.9	11.2	1.2	1.3	14.0	13.6
	9분위	7.4	7.6	8.8	0.1	1.3	1.9	16.6
	10분위	4.8	4.2	6.1	-0.5	1.8	-11.0	43.2

〈표 V-12〉의 계속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아동 지원	전체	34.3	34.2	38.4	-0.1	4.2	-0.2	12.2
	1분위	10.4	8.1	11.5	-2.3	3.4	-22.3	42.4
	2분위	38.3	29.7	42.1	-8.6	12.4	-22.4	41.6
	3분위	56.6	42.2	45.1	-14.4	2.8	-25.4	6.7
	4분위	47.7	57.0	49.6	9.2	-7.3	19.4	-12.9
	5분위	43.9	45.3	53.8	1.4	8.5	3.1	18.8
	6분위	33.8	43.3	40.1	9.5	-3.2	28.0	-7.3
	7분위	33.8	34.2	46.9	0.4	12.7	1.1	37.2
	8분위	30.6	32.6	42.2	2.0	9.6	6.6	29.5
	9분위	28.9	25.1	24.9	-3.8	-0.1	-13.2	-0.5
10분위	18.6	24.7	27.7	6.1	3.0	32.7	12.3	
고용 보험	전체	2.5	4.9	5.0	2.4	0.1	96.7	1.7
	1분위	4.8	7.7	9.5	2.9	1.8	60.2	23.3
	2분위	3.6	7.6	6.5	3.9	-1.1	108.2	-14.7
	3분위	3.7	7.8	8.7	4.1	0.9	109.6	12.0
	4분위	7.6	3.9	4.9	-3.7	1.0	-49.0	26.0
	5분위	0.6	3.7	2.9	3.1	-0.8	530.3	-21.3
	6분위	0.4	3.7	4.2	3.3	0.5	790.6	13.3
	7분위	1.6	2.1	5.9	0.4	3.9	27.4	187.0
	8분위	1.2	8.8	1.0	7.6	-7.7	650.6	-88.1
	9분위	0.9	3.2	3.4	2.3	0.2	264.3	6.1
10분위	0.5	0.4	2.4	-0.1	2.1	-25.3	587.2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전체	3.3	3.6	3.5	0.3	-0.1	7.9	-3.0
	1분위	4.4	2.3	4.3	-2.1	1.9	-46.9	82.1
	2분위	10.1	9.1	11.4	-1.0	2.3	-10.4	25.8
	3분위	6.7	10.7	8.1	4.0	-2.6	59.8	-24.0
	4분위	4.5	4.8	4.4	0.4	-0.5	7.8	-9.4
	5분위	3.7	3.7	2.6	0.0	-1.1	0.6	-29.6
	6분위	1.3	1.9	1.7	0.6	-0.2	43.4	-9.5
	7분위	1.2	2.4	0.9	1.2	-1.6	96.5	-64.0
	8분위	1.0	0.6	0.7	-0.5	0.2	-45.6	33.5
	9분위	0.3	0.2	0.5	-0.1	0.3	-27.7	175.0
10분위	0.1	0.4	0.2	0.3	-0.2	264.7	-44.6	

〈표 V-12〉의 계속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지원금	전체	0.0	60.6	51.2	60.6	-9.5	0.0	-15.6
	1분위	0.0	50.9	34.7	50.9	-16.2	0.0	-31.8
	2분위	0.0	59.4	48.8	59.4	-10.6	0.0	-17.8
	3분위	0.0	63.1	47.9	63.1	-15.1	0.0	-24.0
	4분위	0.0	65.9	54.5	65.9	-11.3	0.0	-17.2
	5분위	0.0	61.5	52.0	61.5	-9.5	0.0	-15.4
	6분위	0.0	62.3	54.7	62.3	-7.6	0.0	-12.2
	7분위	0.0	60.0	61.8	60.0	1.9	0.0	3.1
	8분위	0.0	61.3	58.3	61.3	-3.0	0.0	-4.9
	9분위	0.0	61.5	49.1	61.5	-12.4	0.0	-20.2
	10분위	0.0	60.6	50.0	60.6	-10.6	0.0	-17.6
기타	전체	11.5	14.2	13.3	2.7	-0.8	23.2	-5.8
	1분위	58.6	74.7	70.5	16.2	-4.2	27.6	-5.7
	2분위	24.3	29.8	24.4	5.5	-5.4	22.4	-18.0
	3분위	8.5	7.2	5.9	-1.2	-1.3	-14.5	-18.5
	4분위	6.8	6.9	13.6	0.0	6.7	0.7	96.9
	5분위	1.6	2.0	6.5	0.4	4.5	22.4	230.3
	6분위	2.8	3.1	3.2	0.3	0.1	9.9	2.9
	7분위	3.7	2.6	2.7	-1.1	0.0	-29.2	1.9
	8분위	0.8	7.6	1.3	6.8	-6.3	833.9	-83.1
	9분위	2.9	3.6	2.0	0.7	-1.6	24.3	-43.7
10분위	4.9	3.6	3.4	-1.3	-0.2	-26.4	-5.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 현물이전은 전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가계에 이전된 평균적인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는 2019년 514만원에서 2020년에 524만원으로 2.1%(11만원)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0.8%(4만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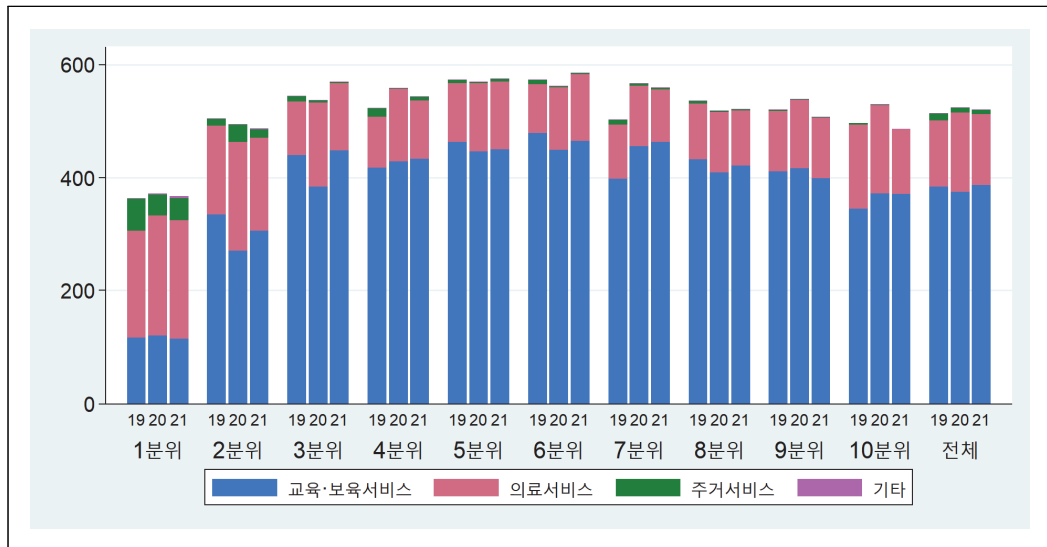
사회적 현물이전 규모는 소득 1분위 계층에서 가장 낮으며, 대체로 소득 5~6분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계층의 사회적 현물이전 수혜가

낮은 이유는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가구원의 비중이 작아 교육·보육서비스 혜택이 작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교육·보육혜택은 388만원 정도였는데,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혜택은 115만원으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의료혜택은 소득 1분위 계층에서 가장 높았다.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의료혜택은 125만원이었는데,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혜택은 211만원이었다.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소득 1분위 계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교육·보육과 의료혜택이 사회적 현물이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중 74.5%가 교육·보육혜택이었으며, 23.9%가 의료혜택이었다. 다만 같은 해 은퇴연령가구의 비중이 높은 소득 1분위 계층에서는 의료혜택의 비중이 57.4%로 교육·보육혜택의 비중인 31.1%보다 높았다. 한편 2021년 기준 교육·보육혜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소득계층은 소득 7분위 계층으로 그 비중이 80.9%였다.

[그림 V-15] 연도별·소득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세부 항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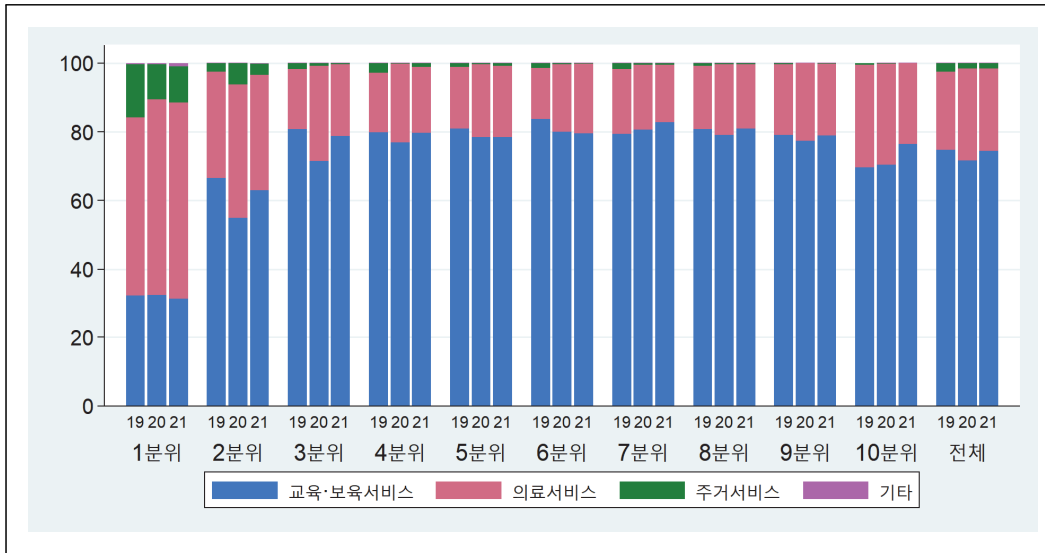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16] 연도별 · 소득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세부 항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3> 연도별 · 소득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전체	전체	513.7	524.3	520.1	10.6	-4.2	2.1	-0.8
	1분위	364.4	372.5	367.9	8.1	-4.7	2.2	-1.2
	2분위	504.3	494.1	487.3	-10.2	-6.8	-2.0	-1.4
	3분위	544.5	537.3	569.5	-7.2	32.2	-1.3	6.0
	4분위	522.9	558.5	543.5	35.5	-15.0	6.8	-2.7
	5분위	573.1	569.1	574.6	-4.0	5.5	-0.7	1.0
	6분위	572.9	561.5	584.6	-11.3	23.0	-2.0	4.1
	7분위	502.5	565.9	559.2	63.4	-6.7	12.6	-1.2
	8분위	535.5	518.2	521.1	-17.3	2.9	-3.2	0.6
	9분위	519.6	538.2	506.8	18.6	-31.4	3.6	-5.8
10분위	496.4	529.5	486.0	33.1	-43.5	6.7	-8.2	

〈표 V-13〉의 계속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전체	384.3	375.4	387.6	-8.8	12.1	-2.3	3.2
	1분위	116.9	120.2	114.5	3.3	-5.6	2.8	-4.7
	2분위	335.3	271.4	307.0	-63.9	35.5	-19.1	13.1
	3분위	439.9	384.3	448.3	-55.6	64.0	-12.6	16.7
	4분위	417.5	429.3	433.5	11.9	4.2	2.8	1.0
	5분위	463.6	446.9	450.8	-16.8	3.9	-3.6	0.9
	6분위	479.5	449.2	465.2	-30.2	16.0	-6.3	3.6
	7분위	398.7	455.8	463.1	57.1	7.3	14.3	1.6
	8분위	432.8	409.8	421.8	-23.0	12.0	-5.3	2.9
	9분위	411.0	416.8	399.8	5.7	-17.0	1.4	-4.1
10분위	346.0	372.7	371.9	26.7	-0.9	7.7	-0.2	
의료 서비스	전체	116.8	140.2	124.5	23.5	-15.7	20.1	-11.2
	1분위	189.7	213.1	211.0	23.4	-2.1	12.4	-1.0
	2분위	156.4	191.8	163.5	35.4	-28.3	22.6	-14.8
	3분위	94.8	148.6	118.8	53.8	-29.7	56.8	-20.0
	4분위	90.4	127.6	103.4	37.2	-24.3	41.1	-19.0
	5분위	103.1	120.0	119.1	16.9	-1.0	16.4	-0.8
	6분위	85.4	110.6	117.7	25.2	7.1	29.5	6.4
	7분위	95.2	106.8	93.4	11.6	-13.4	12.2	-12.6
	8분위	98.3	106.5	97.6	8.1	-8.9	8.3	-8.4
	9분위	106.8	121.0	106.2	14.1	-14.7	13.2	-12.2
10분위	147.9	155.8	113.8	7.9	-42.0	5.3	-27.0	
주거 서비스	전체	12.4	8.3	7.4	-4.1	-0.9	-32.9	-11.4
	1분위	56.8	37.8	38.6	-19.0	0.9	-33.5	2.3
	2분위	12.1	30.7	15.4	18.6	-15.3	154.3	-49.7
	3분위	9.2	4.2	2.1	-5.0	-2.0	-54.7	-48.9
	4분위	14.7	1.3	6.4	-13.4	5.2	-91.5	411.3
	5분위	6.4	1.9	4.6	-4.6	2.8	-71.1	149.6
	6분위	7.9	1.5	1.5	-6.4	-0.0	-80.9	-3.3
	7분위	8.5	3.2	2.7	-5.3	-0.6	-62.0	-17.7
	8분위	4.3	1.7	1.7	-2.6	-0.0	-60.9	-2.0
	9분위	1.8	0.2	0.6	-1.5	0.3	-86.5	139.5
10분위	2.4	0.7	0.2	-1.8	-0.5	-72.3	-69.2	

〈표 V-13〉의 계속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금액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기타	전체	0.3	0.3	0.6	0.1	0.3	24.6	83.6
	1분위	1.1	1.5	3.7	0.4	2.2	38.9	145.2
	2분위	0.5	0.2	1.4	-0.4	1.3	-70.7	826.9
	3분위	0.6	0.3	0.3	-0.4	0.0	-57.7	2.1
	4분위	0.3	0.2	0.2	-0.1	-0.0	-26.7	-0.9
	5분위	0.0	0.4	0.1	0.3	-0.2	4,170.8	-63.4
	6분위	0.1	0.2	0.2	0.1	-0.0	61.0	-7.5
	7분위	0.1	0.0	0.1	-0.0	0.0	-49.7	122.7
	8분위	0.0	0.2	0.1	0.2	-0.2	734.9	-66.4
	9분위	0.0	0.2	0.2	0.2	-0.0	1,909.2	-13.7
10분위	0.0	0.2	0.1	0.2	-0.2	0.0	-69.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4. 단계별 소득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소득과 민간소득 모두 평균적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에는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이 각각 4.7%와 4.5% 증가하여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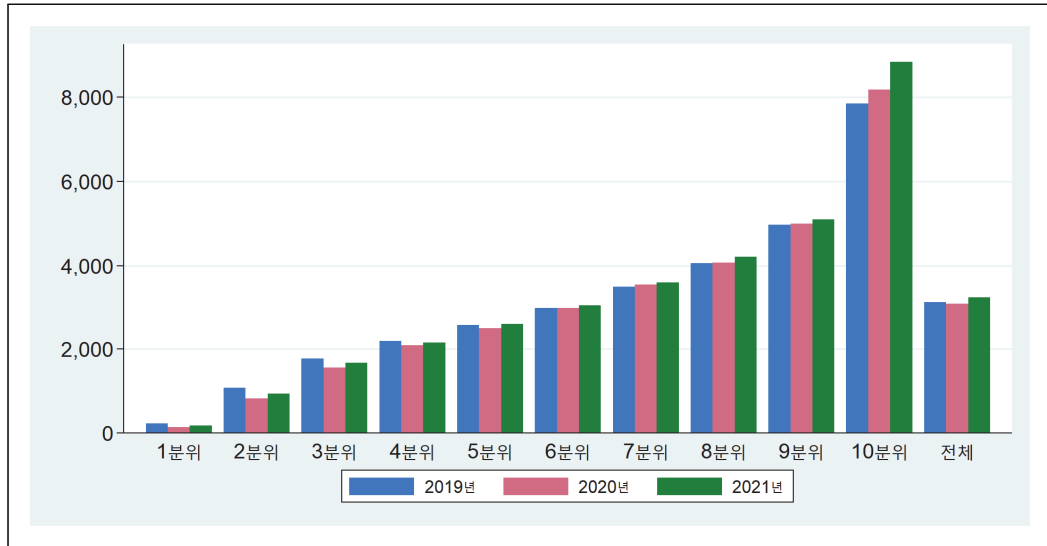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충격은 저소득층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소득 6분위 이하 계층의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이 모두 감소하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율도 더 컸다. 특히 2020년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시장소득은 38.6% 감소하였으며, 민간소득 또한 30.8% 감소하였다. 반면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소득 7분위 이상 계층의 시장소득은 증가하였으며, 민간소득 또한 소득 7분위와 9~10분위 계층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에 소득 10분위 계층의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은 4.2%씩 증가하여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1년에는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이 회복세를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저소득층에서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은 2020년의 충격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 2021년의 시장소득

과 민간소득이 2019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계층은 2020년에 시장소득과 민간소득이 모두 4.2%가량 증가한 데 이어 2021년에도 각각 8.1%와 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V-17] 연도별·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4> 연도별·소득분위별 시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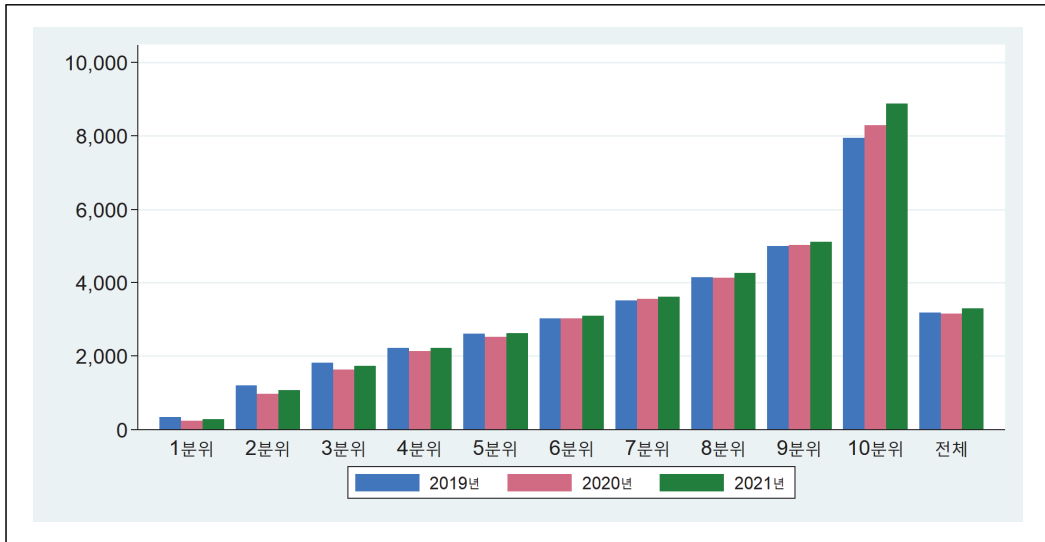
(단위: 만원, %)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3,111.2	3,080.1	3,224.8	-31.1	144.8	-1.0	4.7
1분위	233.5	143.3	176.3	-90.1	32.9	-38.6	23.0
2분위	1,074.9	821.0	935.8	-253.9	114.8	-23.6	14.0
3분위	1,772.5	1,559.2	1,669.8	-213.4	110.6	-12.0	7.1
4분위	2,185.2	2,083.0	2,151.7	-102.2	68.7	-4.7	3.3
5분위	2,564.6	2,494.1	2,592.9	-70.4	98.8	-2.7	4.0
6분위	2,970.1	2,968.9	3,036.5	-1.2	67.6	-0.0	2.3
7분위	3,475.9	3,528.6	3,578.5	52.7	49.9	1.5	1.4
8분위	4,057.6	4,073.9	4,216.6	16.4	142.7	0.4	3.5
9분위	4,972.2	4,997.6	5,095.1	25.5	97.5	0.5	2.0
10분위	7,841.0	8,171.7	8,833.7	330.7	662.0	4.2	8.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V-18] 연도별 · 소득분위별 민간소득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5] 연도별 · 소득분위별 민간소득

(단위: 만원, %)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3,183.1	3,150.5	3,292.2	-32.6	141.7	-1.0	4.5
1분위	351.6	243.2	285.6	-108.3	42.3	-30.8	17.4
2분위	1,198.9	968.9	1,082.8	-230.0	113.9	-19.2	11.8
3분위	1,818.0	1,640.7	1,734.6	-177.3	93.9	-9.8	5.7
4분위	2,226.0	2,133.9	2,215.4	-92.1	81.5	-4.1	3.8
5분위	2,612.3	2,525.3	2,629.1	-87.1	103.9	-3.3	4.1
6분위	3,028.3	3,017.9	3,093.9	-10.3	76.0	-0.3	2.5
7분위	3,516.7	3,556.5	3,610.4	39.8	53.9	1.1	1.5
8분위	4,143.9	4,122.7	4,289.7	-21.2	167.0	-0.5	4.1
9분위	5,016.8	5,047.3	5,134.7	30.5	87.4	0.6	1.7
10분위	7,954.3	8,288.7	8,884.5	334.3	595.8	4.2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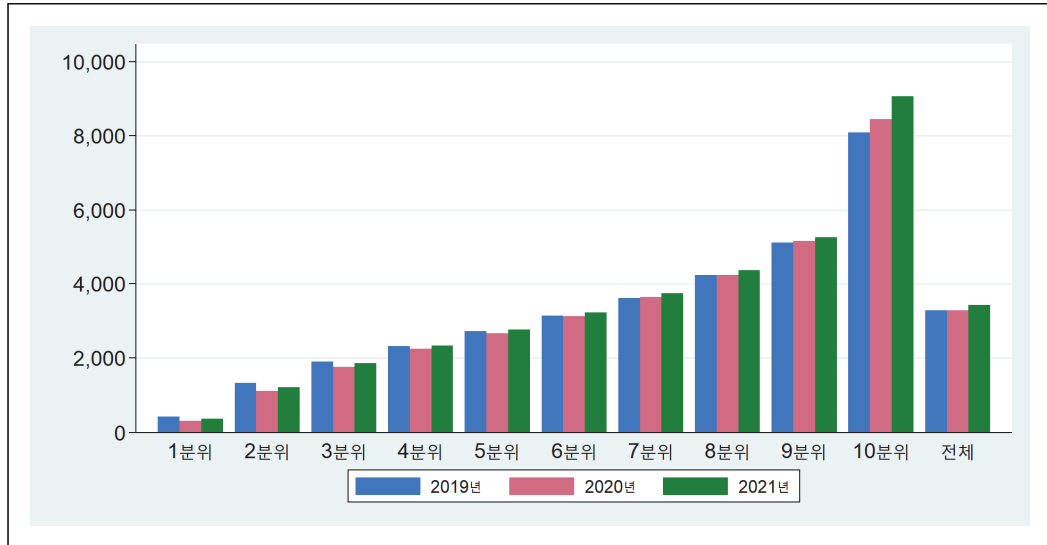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민간소득에 공적연금소득을 더한 연금후소득은 민간소득보다 2020년의 소득 감소율이 축소되었다. 전체적으로 연금후소득은 전년 대비 2020년에는 0.4%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4.5% 증가하였다. 시장소득 및 민간소득과 유사하게 2020년에는 소득 6분위 이하 계층에서 연금후소득이 감소하였지만 소득 7분위 이상 계층에

서는 연금후소득이 증가하였다. 또한 2021년의 연금후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 계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소득 2분위와 10분위 계층도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3분위 이하 계층의 연금후소득은 2019년보다 2021년에 더 낮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림 V-19]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후소득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6> 연도별·소득분위별 연금후소득

(단위: 만원, %)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3,287.3	3,274.2	3,423.1	-13.2	148.9	-0.4	4.5
1분위	429.1	323.7	376.4	-105.5	52.7	-24.6	16.3
2분위	1,328.0	1,118.2	1,222.1	-209.8	103.9	-15.8	9.3
3분위	1,902.3	1,759.6	1,860.5	-142.7	100.8	-7.5	5.7
4분위	2,328.0	2,250.9	2,338.5	-77.2	87.7	-3.3	3.9
5분위	2,721.6	2,667.5	2,772.0	-54.1	104.5	-2.0	3.9
6분위	3,134.3	3,129.9	3,227.9	-4.3	97.9	-0.1	3.1
7분위	3,613.3	3,643.1	3,735.5	29.8	92.5	0.8	2.5
8분위	4,235.1	4,260.5	4,390.3	25.4	129.8	0.6	3.0
9분위	5,124.6	5,175.0	5,275.4	50.4	100.4	1.0	1.9
10분위	8,093.2	8,452.5	9,071.0	359.3	618.5	4.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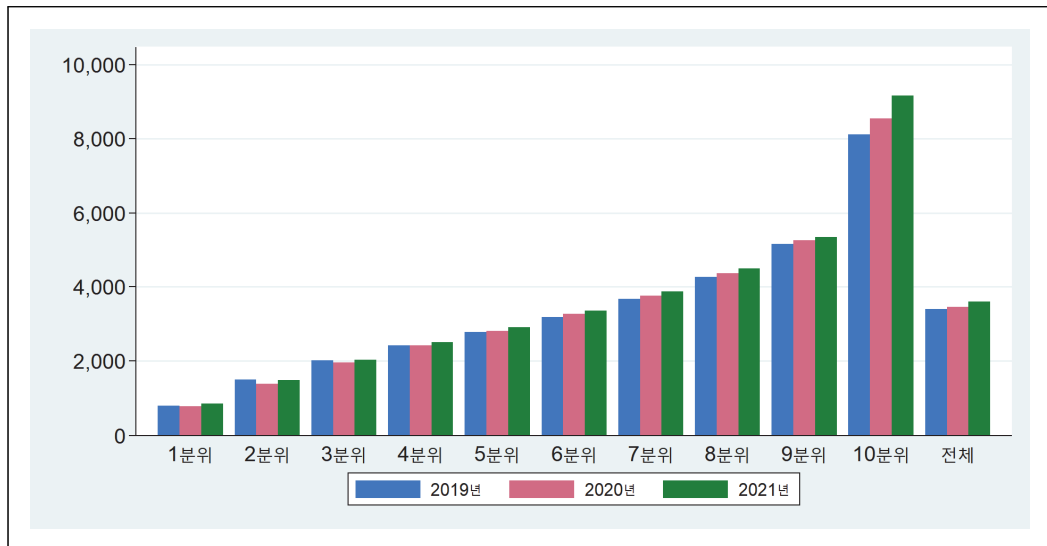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연금후소득에 연금 외 복지급여를 더한 총소득은 2020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의 전년 대비 총소득 증가율은 2.0%였다. 다만 소득 3분위 이하 계층의 2020년 총소득은 여전히 감소한 모습이다. 특히 2020년 소득 2분위 계층의 총소득은 전년 대비 7.2% 감소해 전체 소득계층 중 감소율이 가장 컸다.

2021년의 전년 대비 총소득 증가율은 4.2%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계층의 총소득 증가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7.2%를 기록한 소득 10분위 계층이었다. 그리고 소득 2분위 계층의 총소득 증가율도 6.6%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다만 소득 2분위 계층의 2021년 총소득은 2020년의 충격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외 다른 소득계층의 총소득은 모두 2019년보다 2021년에 더 높았다.

[그림 V-20] 연도별 · 소득분위별 총소득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7〉 연도별 · 소득분위별 총소득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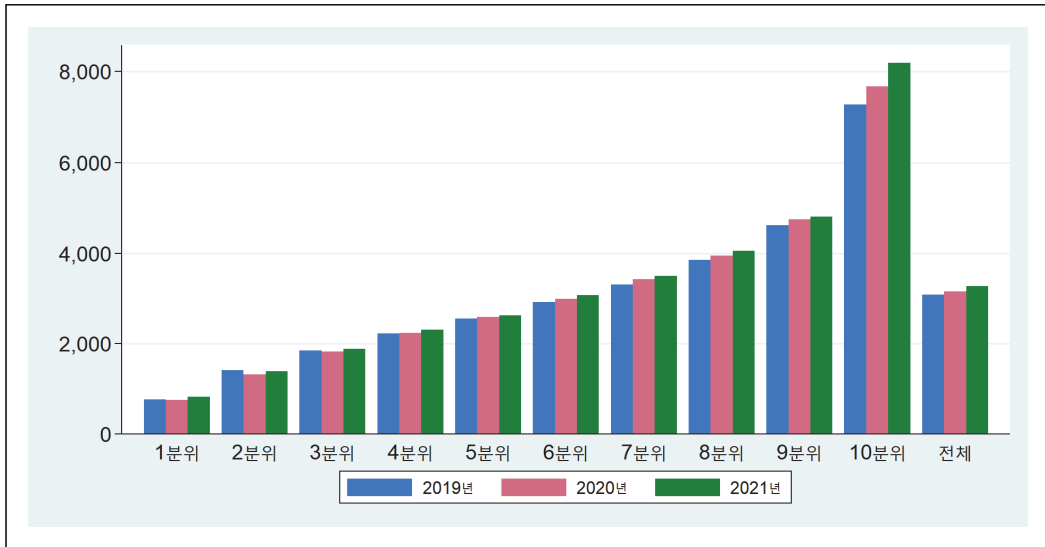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3,390.5	3,457.7	3,601.6	67.2	143.9	2.0	4.2
1분위	802.4	793.1	861.2	-9.3	68.2	-1.2	8.6
2분위	1,502.5	1,394.9	1,487.4	-107.7	92.6	-7.2	6.6
3분위	2,015.7	1,966.9	2,031.9	-48.8	65.0	-2.4	3.3
4분위	2,420.0	2,425.9	2,502.0	5.9	76.1	0.2	3.1
5분위	2,786.6	2,813.9	2,912.7	27.3	98.8	1.0	3.5
6분위	3,187.2	3,259.8	3,357.8	72.6	97.9	2.3	3.0
7분위	3,661.1	3,755.3	3,870.0	94.2	114.7	2.6	3.1
8분위	4,278.0	4,381.2	4,505.1	103.2	124.0	2.4	2.8
9분위	5,165.0	5,276.2	5,364.2	111.2	88.0	2.2	1.7
10분위	8,122.0	8,546.3	9,160.8	424.3	614.5	5.2	7.2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 또한 총소득과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그 증가율이 2020년에는 2.4%로 총소득보다 높았지만 2021년에는 3.7%로 총소득보다 낮았다. 총소득과 마찬가지로 2020년의 처분가능소득이 소득 3분위 이하 계층에서만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2021년의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2분위 계층을 제외하곤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림 V-21] 연도별 ·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8> 연도별 ·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단위: 만원, %)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3,072.5	3,145.0	3,261.2	72.5	116.2	2.4	3.7
1분위	761.6	751.8	822.0	-9.8	70.2	-1.3	9.3
2분위	1,411.8	1,316.6	1,387.1	-95.2	70.5	-6.7	5.4
3분위	1,843.0	1,823.6	1,876.9	-19.5	53.4	-1.1	2.9
4분위	2,215.5	2,235.9	2,304.2	20.4	68.3	0.9	3.1
5분위	2,544.4	2,578.4	2,614.6	34.0	36.1	1.3	1.4
6분위	2,917.9	2,978.7	3,060.0	60.9	81.3	2.1	2.7
7분위	3,299.1	3,411.0	3,513.0	111.9	102.0	3.4	3.0
8분위	3,866.4	3,956.3	4,061.6	90.0	105.3	2.3	2.7
9분위	4,623.1	4,752.9	4,809.9	129.9	56.9	2.8	1.2
10분위	7,273.2	7,677.0	8,196.0	403.8	518.9	5.6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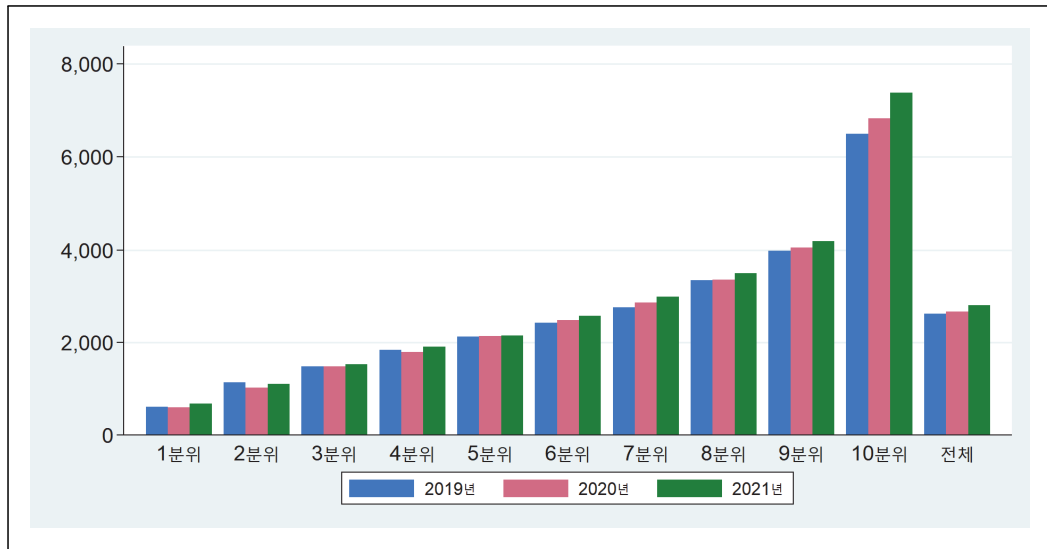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처분가능소득에서 간접세를 차감한 세후소득도 평균적으로는 전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의 세후소득 증가율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낮았지만 2021년의 세후소득 증가율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는 2020년에 간접세가 크게 증가한 뒤 2021년에는 크게 감소하

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 4분위 계층까지 세후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소득 2분위 계층은 2021년까지 2019년의 세후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림 V-22] 연도별 ·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9> 연도별 ·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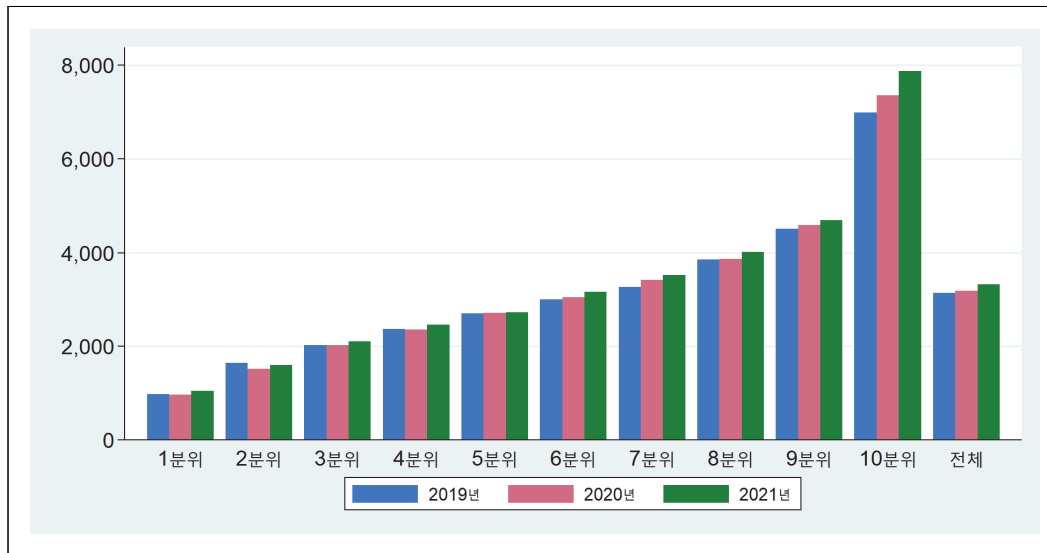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2,613.8	2,656.0	2,795.1	42.2	139.1	1.6	5.2
1분위	612.9	596.2	680.9	-16.7	84.7	-2.7	14.2
2분위	1,133.0	1,021.7	1,104.4	-111.3	82.6	-9.8	8.1
3분위	1,478.8	1,478.5	1,527.3	-0.2	48.8	-0.0	3.3
4분위	1,839.1	1,789.9	1,907.0	-49.2	117.0	-2.7	6.5
5분위	2,118.7	2,131.5	2,143.8	12.7	12.3	0.6	0.6
6분위	2,416.8	2,474.6	2,562.6	57.7	88.0	2.4	3.6
7분위	2,752.9	2,855.8	2,974.0	102.9	118.2	3.7	4.1
8분위	3,329.8	3,351.7	3,506.3	21.9	154.6	0.7	4.6
9분위	3,992.8	4,062.2	4,191.4	69.4	129.2	1.7	3.2
10분위	6,491.6	6,825.7	7,383.5	334.1	557.8	5.1	8.2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세후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최종소득은 전년 대비 2020년에 1.7%, 2021년에 4.2% 증가하였다. 2020년의 최종소득은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에서 감소하였으며, 소득 5분위 이상 계층의 최종소득은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에 소득 2분위 계층의 최종소득은 7.4%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 계층의 최종소득은 5.3%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소득 2분위 계층은 2021년에도 2019년의 최종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계층의 최종소득이 2019~2021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도 다른 소득계층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림 V-23] 연도별 · 소득분위별 최종소득

(단위: 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0> 연도별 · 소득분위별 최종소득

(단위: 만원, %)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전체	3,127.5	3,180.3	3,315.2	52.8	134.9	1.7	4.2
1분위	977.3	968.8	1,048.8	-8.5	80.0	-0.9	8.3
2분위	1,637.3	1,515.8	1,591.7	-121.5	75.8	-7.4	5.0
3분위	2,023.2	2,015.8	2,096.9	-7.4	81.1	-0.4	4.0
4분위	2,362.0	2,348.4	2,450.5	-13.6	102.1	-0.6	4.3
5분위	2,691.9	2,700.6	2,718.4	8.7	17.8	0.3	0.7
6분위	2,989.7	3,036.1	3,147.2	46.4	111.1	1.6	3.7

〈표 V-20〉의 계속

(단위: 만원, %)

구분	평균소득			전년 대비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7분위	3,255.4	3,421.7	3,533.2	166.3	111.5	5.1	3.3
8분위	3,865.4	3,869.9	4,027.4	4.6	157.4	0.1	4.1
9분위	4,512.4	4,600.4	4,698.2	88.0	97.8	1.9	2.1
10분위	6,988.0	7,355.2	7,869.5	367.2	514.3	5.3	7.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5. 소득 분배지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시장소득에 미친 충격은 소득계층별로 비대칭적이었다. 이로 인해 2020년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었다. 모든 소득단계에서 2020년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그리고 5분위 및 10분위 배수 모두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분배지표의 악화 정도가 시장소득보다 처분가능소득이나 최종소득 등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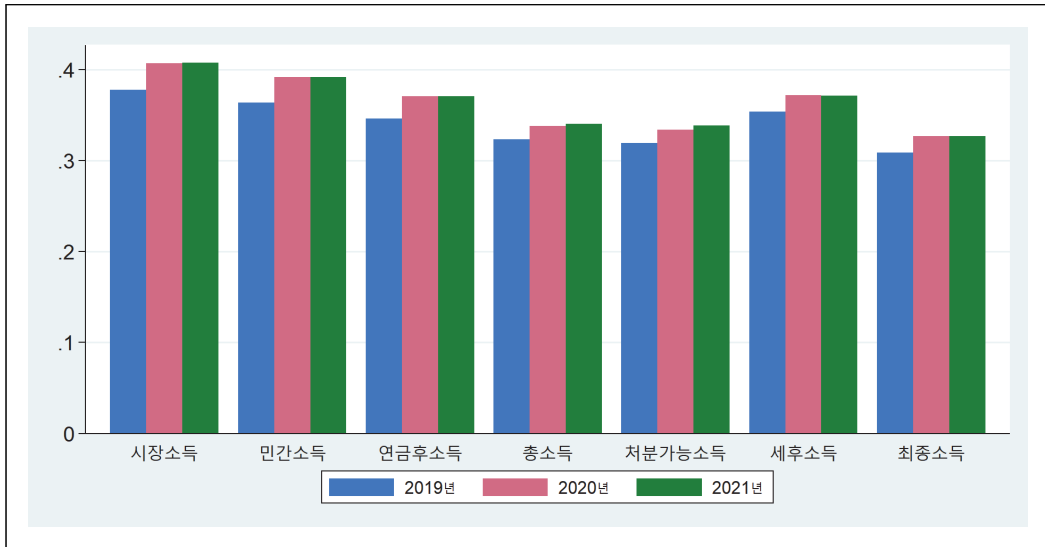
2021년에는 소득불평도 변화의 방향이 소득 분배지표 간에 상이했다. 시장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의 지니계수는 더욱 악화되었지만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및 10분위 배수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소득 분배지표의 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로 해석된다. 지니계수는 소득분포 전체의 정보를 이용한 분배지표이지만 10분위 분배율은 소득분포 양극단의 60%, 5분위 배수는 40%, 10분위 배수는 20%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양극단보다는 중간 소득계층을 포함한 전체 소득계층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그 외 다른 분배지표는 소득분포의 양극단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표 V-14〉를 보면, 2021년에 소득 1~3분위와 10분위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그 중간에 위치한 계층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니계수와 다른 소득 분배지표의 변화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득 1~2분위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소득 10분위보다 높았는데, 이로 인해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및

10분위 배수는 2021년에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대체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 단계 소득 대비 소득 분배지표의 개선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 연금후소득과 총소득, 처분가능소득, 최종소득에서 공통적으로 지니계수 등 모든 소득 분배지표가 전 단계보다 개선되었다. 이는 각각 공적연금소득과 연금 외 복지급여,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세후소득의 분배지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악화되었는데, 이는 간접세가 소득에 역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비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간접세는 소득에 역진적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 분배지표 개선 정도는 분배지표마다 차이가 있다.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의 경우 다른 소득 단계보다 최종소득의 분배지표 개선율이 가장 커 사회적 현물이전이 소득 분배지표 개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5분위 배수의 경우 2019년에는 소득 분배지표 개선에 사회적 현물이전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2020~2021년에는 연금 외 복지급여의 역할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분위 배수의 경우에는 2020~2021년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총소득의 분배지표 개선율이 가장 커 연금 외 복지급여가 소득 불평등도의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또한 각 소득 분배지표의 특성에 따른 것인데, 연금 외 복지급여는 주로 최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1분위와 10분위 계층의 소득만을 비교하는 10분위 배수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회적 현물이전은 전체적으로 다른 제도들보다 지원 규모가 크고 전 소득계층을 골고루 지원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향상을 통해 분배지표를 개선한다. 이로 인해 양극단이 아닌 소득분포의 중간 계층을 반영하는 소득 분배지표에서는 사회적 현물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24] 연도별 ·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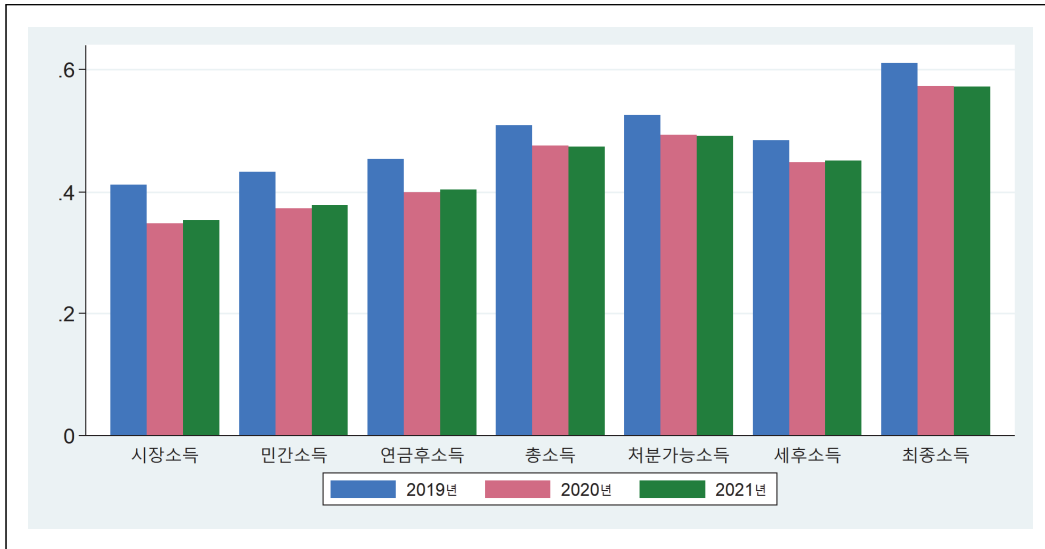
<표 V-21> 연도별 ·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단위: %)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소득단계별 분배지표	시장소득	0.3774	0.4069	0.4076	7.8109	0.1793
	민간소득	0.3635	0.3916	0.3919	7.7200	0.0780
	연금후소득	0.3460	0.3705	0.3708	7.0947	0.0873
	총소득	0.3234	0.3379	0.3404	4.4824	0.7393
	처분가능소득	0.3194	0.3340	0.3385	4.5473	1.3601
	세후소득	0.3536	0.3716	0.3714	5.0763	-0.0361
	최종소득	0.3091	0.3270	0.3267	5.8036	-0.1053
전 단계 대비 증가율	민간소득	-3.6767	-3.7579	-3.8552		
	연금후소득	-4.8266	-5.3790	-5.3702		
	총소득	-6.5115	-8.7919	-8.1977		
	처분가능소득	-1.2384	-1.1771	-0.5681		
	세후소득	10.7011	11.2613	9.7287		
	최종소득	-12.5876	-11.9826	-12.043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V-25] 연도별 · 소득단계별 10분위 분배율



주: 10분위 분배율 = (소득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2〉 연도별 · 소득단계별 10분위 분배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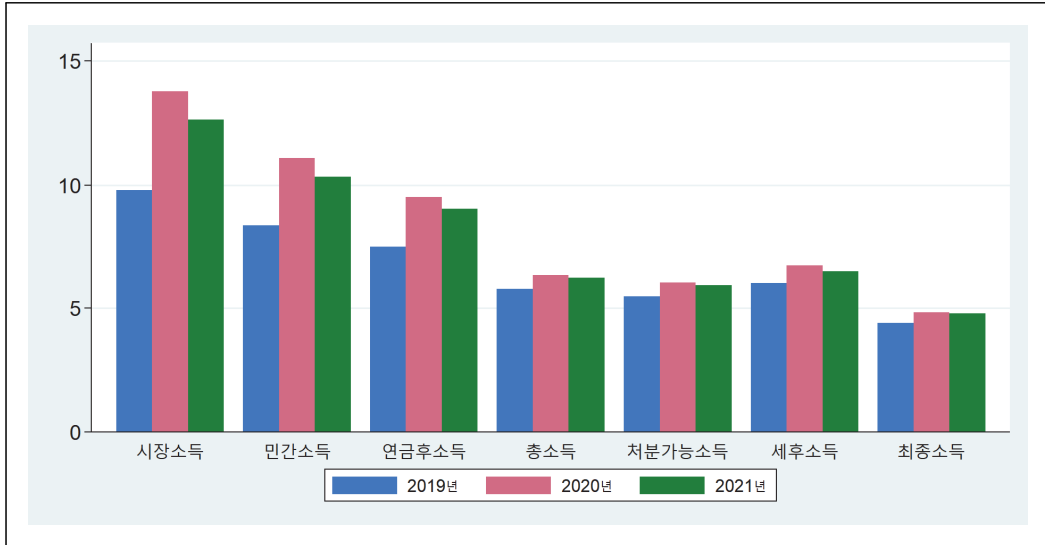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소득단계별 분배지표	시장소득	0.4123	0.3495	0.3539	-15.2173	1.2510
	민간소득	0.4327	0.3737	0.3792	-13.6264	1.4513
	연금후소득	0.4545	0.3999	0.4040	-11.9978	1.0114
	총소득	0.5090	0.4762	0.4740	-6.4543	-0.4603
	처분가능소득	0.5256	0.4931	0.4915	-6.1905	-0.3207
	세후소득	0.4845	0.4489	0.4511	-7.3604	0.4844
	최종소득	0.6108	0.5731	0.5724	-6.1829	-0.1109
전 단계 대비 증가율	민간소득	4.9514	6.9208	7.1322	-	-
	연금후소득	5.0292	7.0095	6.5455	-	-
	총소득	12.0105	19.0664	17.3316	-	-
	처분가능소득	3.2601	3.5514	3.6966	-	-
	세후소득	-7.8180	-8.9677	-8.2323	-	-
	최종소득	26.0658	27.6681	26.9117	-	-

주: 10분위 분배율 = (소득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V-26] 연도별 · 소득단계별 5분위 배수

(단위: 배)



주: 5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3> 연도별 · 소득단계별 5분위 배수

(단위: 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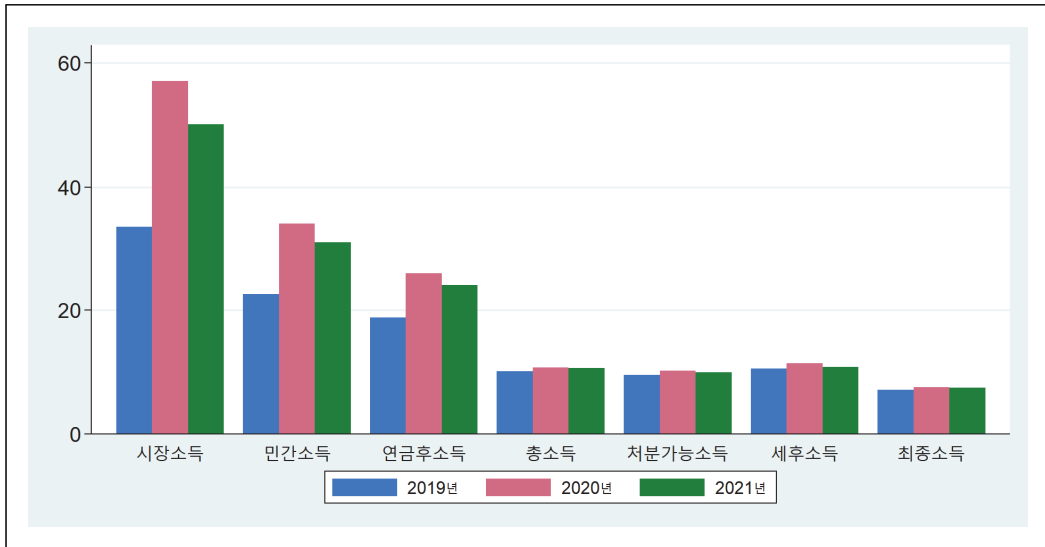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소득단계별 분배지표	시장소득	9.8039	13.7691	12.6327	40.4444	-8.2531
	민간소득	8.3745	11.0868	10.3272	32.3866	-6.8508
	연금후소득	7.5299	9.5214	9.0446	26.4488	-5.0076
	총소득	5.7700	6.3556	6.2245	10.1487	-2.0621
	처분가능소득	5.4788	6.0456	5.9255	10.3465	-1.9875
	세후소득	6.0108	6.7696	6.5248	12.6229	-3.6154
	최종소득	4.4027	4.8395	4.7892	9.9214	-1.0391
전 단계 대비 증가율	민간소득	-14.5796	-19.4805	-18.2497	-	-
	연금후소득	-10.0862	-14.1190	-12.4196	-	-
	총소득	-23.3716	-33.2495	-31.1798	-	-
	처분가능소득	-5.0476	-4.8771	-4.8046	-	-
	세후소득	9.7111	11.9744	10.1147	-	-
	최종소득	-26.7543	-28.5112	-26.6004	-	-

주: 5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V-27] 연도별 · 소득단계별 10분위 배수

(단위: 배)



주: 10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10%의 평균소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4> 연도별 · 소득단계별 10분위 배수

(단위: 배, %)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년 대비 증감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소득단계별 분배지표	시장소득	33.5861	57.0174	50.1199	69.7647	-12.0972
	민간소득	22.6255	34.0777	31.1111	50.6162	-8.7055
	연금후소득	18.8587	26.1153	24.1006	38.4788	-7.7147
	총소득	10.1221	10.7764	10.6370	6.4644	-1.2938
	처분가능소득	9.5501	10.2116	9.9713	6.9258	-2.3525
	세후소득	10.5918	11.4484	10.8442	8.0876	-5.2771
	최종소득	7.1504	7.5924	7.5036	6.1822	-1.1695
전 단계 대비 증감률	민간소득	-32.6343	-40.2328	-37.9267		
	연금후소득	-16.6485	-23.3654	-22.5337		
	총소득	-46.3269	-58.7354	-55.8643		
	처분가능소득	-5.6503	-5.2414	-6.2577		
	세후소득	10.9069	12.1120	8.7542		
	최종소득	-32.4912	-33.6812	-30.8054		

주: 10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10%의 평균소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6. 제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앞에서는 소득단계별 분배지표 비교를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대략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세부 제도별로 살펴보자. 이는 해당 제도를 전 단계 소득에 반영하였을 경우의 조정소득이 지니계수 등의 소득 분배지표를 개선시키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가령,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 단계 소득인 총소득의 소득 분배지표를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의 분배지표와 비교하여 그 변화율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한 제도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표 V-25>~<표 V-28>에 제시되어 있다.

2020~2021년의 독특한 특징인 코로나19 지원금은 가계의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후소득에 코로나19 지원금을 반영하면 2021년과 2022년의 지니계수는 각각 1.73%와 1.23% 개선되었다.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및 10분위 배수도 2020년에는 각각 3.47%, 6.29%, 12.97% 개선되었고, 2021년에도 각각 2.51%, 4.32%, 7.94% 개선되었다. 소득분포 중 양극단의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클수록(10분위 배수 > 5분위 배수 > 10분위 분배율 > 지니계수) 코로나19 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제도들 중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교육·보육서비스, 의료서비스, 기초연금(노인지원 복지급여)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교육·보육서비스는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각각 7.84%와 17.20% 개선시켰으며, 의료서비스 또한 두 분배지표를 각각 3.97%와 9.39%를, 그리고 기초연금은 각각 4.02%와 7.90%를 개선시켰다. 다만 소득분포 양극단의 정보에 의존한 5분위 및 10분위 배수는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제도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분위 및 10분위 배수를 이용할 경우 의료서비스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비교적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 1분위 계층에 고령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10분위 배수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추정되었다.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기타 간접세 등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가 그렇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소득 분배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정도는 기타 간접

세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에 역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이 대부분의 소비 품목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일수록 더욱 그렇다. 한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 같은 자산 관련 세금도 모든 분배지표에서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세 또한 소득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은퇴가구와 같이 현재의 소득은 낮더라도 과거에 축적한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한 가구의 경우 자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표 V-25〉 제도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

(단위: %)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 단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소득	0.3635	0.3916	0.3919	-		
(+ 국민연금)	0.3528	0.3781	0.3785	-2.9439	-3.4395	-3.4010
(+ 특수직역연금)	0.3561	0.3833	0.3837	-2.0405	-2.0998	-2.0963
연금후소득	0.3460	0.3705	0.3708	-		
(+ 생계급여)	0.3426	0.3669	0.3668	-0.9680	-0.9785	-1.0809
(+ 노인지원)	0.3339	0.3546	0.3559	-3.4810	-4.2971	-4.0166
(+ 아동지원)	0.3423	0.3671	0.3673	-1.0516	-0.9243	-0.9546
(+ 고용보험)	0.3455	0.3698	0.3701	-0.1328	-0.1825	-0.1917
(+ 근로 및 자녀장려금)	0.3452	0.3697	0.3700	-0.2238	-0.2189	-0.2237
(+ 코로나19 지원금)	0.3460	0.3641	0.3663	0.0000	-1.7341	-1.2264
(+ 기타 복지급여)	0.3431	0.3674	0.3678	-0.8346	-0.8438	-0.8182
총소득	0.3234	0.3379	0.3404	-		
(-) 직접세	0.3205	0.3349	0.3394	-0.8992	-0.8930	-0.3098
(-) 소득세	0.3193	0.3338	0.3354	-1.2859	-1.2244	-1.4910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0.3237	0.3386	0.3440	0.0799	0.1827	1.0368
(-) 자동차세	0.3244	0.3384	0.3409	0.3028	0.1309	0.1270
(-) 사회보장기여금	0.3223	0.3369	0.3393	-0.3530	-0.3026	-0.3264
(-) 공적연금	0.3223	0.3367	0.3395	-0.3603	-0.3650	-0.2847
(-) 건강보험	0.3235	0.3382	0.3404	0.0093	0.0906	-0.0108
(-) 고용보험	0.3233	0.3377	0.3402	-0.0349	-0.0598	-0.0568
처분가능소득	0.3194	0.3340	0.3385	-		
(-) 부가가치세	0.3406	0.3567	0.3584	6.6243	6.8112	5.8784
(-) 기타 간접세	0.3273	0.3426	0.3470	2.4601	2.5812	2.4980
세후소득	0.3536	0.3716	0.3714	-		
(+) 교육·보육서비스	0.3242	0.3424	0.3423	-8.3217	-7.8387	-7.8422
(+) 의료서비스	0.3398	0.3560	0.3567	-3.9186	-4.1846	-3.9729
(+) 주거서비스	0.3514	0.3708	0.3695	-0.6236	-0.2062	-0.5251
(+) 기타 현물이전	0.3535	0.3715	0.3712	-0.0266	-0.0245	-0.0579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V-26〉 제도별 10분위 분배율 변화 효과

(단위: %)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 단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소득	0.4327	0.3737	0.3792	-		
(+ 국민연금)	0.4517	0.3973	0.4013	4.3862	6.3001	5.8303
(+ 특수직역연금)	0.4357	0.3767	0.3822	0.6937	0.7964	0.7979
연금후소득	0.4545	0.3999	0.4040	-		
(+ 생계급여)	0.4614	0.4073	0.4122	1.5324	1.8477	2.0286
(+ 노인지원)	0.4817	0.4349	0.4359	6.0020	8.7426	7.8953
(+ 아동지원)	0.4644	0.4085	0.4128	2.1960	2.1408	2.1872
(+ 고용보험)	0.4559	0.4018	0.4059	0.3193	0.4697	0.4735
(+ 근로 및 자녀장려금)	0.4564	0.4019	0.4059	0.4278	0.4902	0.4838
(+ 코로나19 지원금)	0.4545	0.4138	0.4141	0.0000	3.4663	2.5051
(+ 기타 복지급여)	0.4616	0.4085	0.4118	1.5815	2.1341	1.9394
총소득	0.5090	0.4762	0.4740	-		
(- 직접세)	0.5189	0.4859	0.4843	1.9298	2.0361	2.1674
(- 소득세)	0.5211	0.4869	0.4862	2.3652	2.2409	2.5690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0.5087	0.4760	0.4728	-0.0606	-0.0368	-0.2473
(- 자동차세)	0.5071	0.4753	0.4732	-0.3840	-0.1862	-0.1730
(- 사회보장기여금)	0.5148	0.4825	0.4802	1.1397	1.3154	1.3141
(- 공적연금)	0.5132	0.4810	0.4780	0.8081	1.0055	0.8437
(- 건강보험)	0.5102	0.4768	0.4754	0.2317	0.1220	0.2862
(- 고용보험)	0.5093	0.4768	0.4746	0.0579	0.1365	0.1334
처분가능소득	0.5256	0.4931	0.4915	-		
(- 부가가치세)	0.4999	0.4641	0.4657	-4.9032	-5.8749	-5.2539
(- 기타 간접세)	0.5126	0.4804	0.4790	-2.4733	-2.5657	-2.5544
세후소득	0.4845	0.4489	0.4511	-		
(+ 교육·보육서비스)	0.5689	0.5217	0.5286	17.4192	16.2306	17.2020
(+ 의료서비스)	0.5227	0.4989	0.4934	7.8813	11.1397	9.3909
(+ 주거서비스)	0.4932	0.4557	0.4564	1.7910	1.5104	1.1955
(+ 기타 현물이전)	0.4848	0.4491	0.4515	0.0503	0.0402	0.1062

주: 10분위 분배율 = (소득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V-27〉 제도별 5분위 배수 변화 효과

(단위: 배, %)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 단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소득	8,3745	11,0868	10,3272	-		
(+) 국민연금	7,5702	9,5148	8,9954	-9,6044	-14,1785	-12,8959
(+) 특수지역연금	8,3157	11,0723	10,3728	-0,7024	-0,1304	0,4409
연금후소득	7,5299	9,5214	9,0446	-		
(+) 생계급여	7,1673	8,9465	8,4522	-4,8146	-6,0384	-6,5499
(+) 노인지원	6,4240	7,5572	7,3273	-14,6867	-20,6297	-18,9878
(+) 아동지원	7,3528	9,3118	8,7830	-2,3510	-2,2019	-2,8928
(+) 고용보험	7,4945	9,4236	8,9583	-0,4696	-1,0280	-0,9543
(+) 근로 및 자녀장려금	7,4683	9,4471	8,9573	-0,8172	-0,7808	-0,9661
(+) 코로나19 지원금	7,5299	8,9228	8,6542	0,0000	-6,2868	-4,3170
(+) 기타 복지급여	7,1949	8,8798	8,5388	-4,4488	-6,7386	-5,5929
총소득	5,7700	6,3556	6,2245	-		
(-) 직접세	5,6418	6,2379	6,1321	-2,2218	-1,8520	-1,4849
(-) 소득세	5,6189	6,2079	6,0614	-2,6193	-2,3243	-2,6203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5,7876	6,3761	6,2899	0,3052	0,3230	1,0496
(-) 자동차세	5,7774	6,3672	6,2333	0,1271	0,1827	0,1409
(-) 사회보장기여금	5,6152	6,1713	6,0266	-2,6826	-2,8992	-3,1799
(-) 공적연금	5,6698	6,2309	6,1076	-1,7368	-1,9628	-1,8791
(-) 건강보험	5,7291	6,3178	6,1644	-0,7098	-0,5943	-0,9663
(-) 고용보험	5,7601	6,3385	6,2078	-0,1716	-0,2699	-0,2684
처분가능소득	5,4788	6,0456	5,9255	-		
(-) 부가가치세	5,8499	6,5458	6,3366	6,7748	8,2729	6,9375
(-) 기타 간접세	5,5929	6,1974	6,0619	2,0823	2,5108	2,3021
세후소득	6,0108	6,7696	6,5248	-		
(+) 교육·보육서비스	5,1192	5,8463	5,6317	-14,8335	-13,6383	-13,6886
(+) 의료서비스	5,1383	5,5505	5,4943	-14,5156	-18,0083	-15,7940
(+) 주거서비스	5,7849	6,4946	6,3328	-3,7582	-4,0614	-2,9428
(+) 기타 현물이전	6,0053	6,7628	6,5062	-0,0924	-0,0996	-0,2861

주: 5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V-28〉 제도별 10분위 배수 변화 효과

(단위: 배, %)

구분	연도별 분배지표			전 단계 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소득	22,6255	34,0777	31,1111	-		
(+) 국민연금	18,7503	26,0087	23,9287	-17,1278	-23,6783	-23,0861
(+) 특수지역연금	22,7402	34,1508	31,2984	0,5066	0,2145	0,6021
연금후소득	18,8587	26,1153	24,1006	-		
(+) 생계급여	15,9304	20,8129	18,9560	-15,5276	-20,3038	-21,3463
(+) 노인지원	12,5493	14,9194	14,4412	-33,4564	-42,8710	-40,0795
(+) 아동지원	18,4539	25,5519	23,4552	-2,1468	-2,1573	-2,6781
(+) 고용보험	18,6500	25,5068	23,5111	-1,1070	-2,3300	-2,4459
(+) 근로 및 자녀장려금	18,6668	25,9284	23,8304	-1,0176	-0,7159	-1,1212
(+) 코로나19 지원금	18,8587	22,7295	22,1880	0,0000	-12,9650	-7,9360
(+) 기타 복지급여	16,6044	21,2266	20,3075	-11,9540	-18,7197	-15,7386
총소득	10,1221	10,7764	10,6370	-		
(-) 직접세	9,8911	10,5404	10,3940	-2,2815	-2,1899	-2,2843
(-) 소득세	9,8375	10,4716	10,3023	-2,8111	-2,8282	-3,1465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0,1709	10,8311	10,7206	0,4827	0,5081	0,7867
(-) 자동차세	10,1309	10,7955	10,6520	0,0874	0,1777	0,1415
(-) 사회보장기여금	9,7955	10,4621	10,2300	-3,2260	-2,9168	-3,8261
(-) 공적연금	9,9358	10,5708	10,4096	-1,8400	-1,9081	-2,1372
(-) 건강보험	10,0062	10,7068	10,4981	-1,1448	-0,6455	-1,3054
(-) 고용보험	10,1035	10,7442	10,6017	-0,1839	-0,2988	-0,3319
처분가능소득	9,5501	10,2116	9,9713	-		
(-) 부가가치세	10,3611	11,1895	10,6377	8,4915	9,5771	6,6824
(-) 기타 간접세	9,7032	10,3742	10,1200	1,6029	1,5922	1,4907
세후소득	10,5918	11,4484	10,8442	-		
(+) 교육·보육서비스	9,3698	10,0484	9,7504	-11,5369	-12,2283	-10,0870
(+) 의료서비스	8,2731	8,6267	8,4062	-21,8913	-24,6473	-22,4821
(+) 주거서비스	9,6972	10,7673	10,2623	-8,4459	-5,9494	-5,3660
(+) 기타 현물이전	10,5729	11,4197	10,7853	-0,1783	-0,2509	-0,5435

주: 10분위 배수 = (소득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소득 최하위 10%의 평균소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3~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15차는 베타버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19~2021년 3년간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세부담은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포함한다. 재정수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급여,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그리고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한다. 모든 간접세와 대부분의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정보는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나타난 관련 정보와 기타 이용 가능한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소득분위별 순수혜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와 순수혜 규모는 뚜렷한 역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모든 분석 대상 기간에서 소득 1~5분위는 순수혜 집단이고 소득 7~10분위는 순부담 집단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9분위와 10분위 간의 순부담 격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6분위 계층은 2019년에는 순부담 집단으로 나타났지만 2020~2021년에는 순수혜 집단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소득 6분위 계층의 순부담 또는 순수혜 규모는 크지 않았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수혜가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반면, 총부담은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조세부담보다 재정수혜에 포함된 제도들 중 교육서비스와 같이 정책 대상 선별에 있어 소득이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아니거나 소득의 반영 정도가 약한 제도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가계는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2019년에는 순부담하였지만 2020~2021년에는 순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혜, 부담 등을 2020년

소비자물가수준으로 실질화하고 가구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균등화 기준으로 살펴 보면 2019년의 순부담 규모는 56만원 정도였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만원과 23만원을 순수혜하였다. 이는 2019년에 없던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이 2020년과 2021년에 가계에 지급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과 2021년에 가계에 지급된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의 평균 금액은 각각 61만원과 51만원 정도였다.

2019년과 비교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1년의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수, 10분위 배수로 살펴본 모든 분배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대체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후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과 최종소득의 분배지표 개선 정도가 2019년과 비교해 2020~2021년에 더 커졌다. 이 또한 본 연구가 검토한 모든 소득 분배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처분가능소득과 최종소득의 절대적인 소득 분배지표 수준은 2019년보다 2020~2021년에 악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제도들 중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교육·보육서비스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분배지표 중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이용해 분석할 때 교육·보육서비스의 효과가 크게 측정되었다. 반면 5분위 배수와 10분위 배수를 이용해 제도별 소득 분배지표 개선 효과를 측정하면 노인지원 복지급여(기초연금)와 의료서비스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와 소득 분배지표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분배지표 산출 시 지니계수는 전체 소득분포의 정보를 이용한다. 하지만 10분위 분배율은 소득분포 중 중간에 위치한 40%의 소득변화 정보를 반영하지 않으며, 5분위 배수와 10분위 배수 또한 각각 소득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60%와 80% 계층의 소득변화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위소득 계층의 소득변화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지니계수를 크게 개선시키지만, 소득분포의 양 끝단에 위치한 계층의 소득변화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들은 지니계수보다는 10분위 배수를 크게 개선시킨다. 교육·보육서비스는 대체로 영유아 또는 취학 자녀가 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제도로 해당 계층은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 해당한다. 반면 노인지원 복지급

여의 수혜 대상은 노인이며 의료서비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데, 은퇴연령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에 분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로 측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10분위 배수로 측정하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초연금보다는 작지만 다른 현금성 복지급여보다는 대체로 크게 추정되었다. 다만 이 또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10분위 배수로 측정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보다 코로나19 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는 최저소득층에 지급된 반면 코로나19 지원금은 상당부분 넓은 소득계층에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제도들도 있다. 간접세인 소비세제와 직접세 중 재산세제이다. 소비세제와 재산세제의 과세기반은 소득이 아닌 각각 소비와 재산이다. 소비세는 비례세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소득에 역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재산 또한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은퇴연령계층의 경우 현재의 소득수준은 낮지만 과거의 소득으로 축적한 재산수준은 높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세제와 재산세제가 소득에 역진적이라도 해당 세제의 주된 목적이 소득재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세제와 재산세제를 직접적으로 소득에 누진적이도록 개편하기보다는 복지제도 등 다른 제도들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다만 「재정패널조사」는 표본조사이며 또한 많은 부분이 회상에 의한 응답에 기초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만약 소득, 자산, 복지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자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기초한 소비지출 자료 등으로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보완되거나, 또는 이러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와 같은 수혜·부담 분석은 양질의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향후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21. 3.
_____,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22. 3.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9』, 2019. 11.
_____, 『교육통계연보 2020』, 2020. 11.
_____, 『교육통계연보 2021』, 2021. 11.
- 교육청(각 지방자치단체), 『2019 교육통계연보』(각 교육청별로 제목은 상이할 수 있음), 2019.
_____, 『2020 교육통계연보』(각 교육청별로 제목은 상이할 수 있음), 2020.
_____, 『2021 교육통계연보』(각 교육청별로 제목은 상이할 수 있음), 202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0.
_____,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0.
_____,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1.
_____,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
_____,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3.
_____,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2.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의료급여통계』, 2020. 10.
_____, 『2020 의료급여통계』, 2021. 10.
_____, 『2021 의료급여통계』, 2022. 10.
-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교육부)』, 2020.
- 박명호·정재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15-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박연서·김효경·박지원·문석휘,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2. 6.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년 12월 말 기준』, 2020.
- _____, 『보육통계: 2020년 12월 말 기준』, 2021.
- _____, 『보육통계: 2021년 12월 말 기준』, 2022.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너지통계연보』, 2020.
- _____, 『2020 에너지통계연보』, 2021.
- _____, 『2021 에너지통계연보』, 2022.
- 성명재·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8. 2., pp. 63~94.
- 성명재·전병목·전병힐, 『조세·재정모의실험 모형: KIPFSIM08 모형의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12.
- 성명재·송헌재·전병목,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10 모형의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12.
- 오종현, 「최근 조세제도 변화로 인한 소득분위별 세부담 변화: 2015년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정포럼』, 제26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7., pp. 30~56.
- _____,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재정포럼』, 제286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4., pp. 34~63.
- 오종현·김우현·권성오,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2.
- 오종현·윤성주·한중석·신상화·김문정,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1.
- 유경준·김서영·홍경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통계연구』, 제23권 제1호, 2018.
- 유승동·김주영, 「공공임대 주택의 편익: 임대료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8., pp. 205~223.
- 정재호·정다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연구보고서 22-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5차년도 재정패널 통합 설문지』, 2023.

European Commission, *EUROMOD baseline report*, 2023.

Gottfried, Peter, and Wolfgang Wiegard, “Exemption versus zero rating: A hidden problem of VA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3), 1991, pp. 307~328.

HM Treasury, Impact on households: distributional analysis to accompany Spring Budget 2023, March 20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f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29 July 2022.

OECD, The OECD tax-benefit database for Korea - Description of policy rules for Korea 2022, January 2022.

〈통계자료 및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34&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10. 10.

_____, 「건강보험통계」,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약국 소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9&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6. 17.

_____, 「건강보험통계」,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외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8&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6. 17.

_____, 「건강보험통계」,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입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7&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6. 17.

국세청, 「국세통계」, 10.1.1 주세 신고 현황[200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188&conn_path=I2, 검색

일자: 2023. 9. 1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19~2021년도에 대한 일반가구 조사 원자료, 통계청 MDIS 다운로드서비스, 요청일: 2023. 6. 21.

_____, 「주거실태조사」 파일설계서, 2019~2021년도 일반가구 조사에 대한 엑셀자료, 통계청 MDIS 다운로드서비스, 요청일: 2023. 6. 21.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lang=ko>, 검색일자: 2023. 6.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개별소비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개별소비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공무원보수규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공무원%20보수규정#undefined>, 검색일자: 2023. 6. 26.

_____, 「교육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교육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교통에너지환경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국민건강증진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국민건강증진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653>, 검색일자: 2023. 9. 21.

_____,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담배사업법%20시행규칙#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부가가치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부가가치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9. 11.

_____,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부가가치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9. 11.

_____,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6595>, 검색일자: 2023. 9. 21.

_____,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자원의%20절약과%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조세특례제한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9. 11.

_____, 「주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주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주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주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지방세법」,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지방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_____, 「지방세법 시행령」, 연혁법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지방세법%20시행령#undefined>, 검색일자: 2023. 8. 10.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교육재정, 결산공시, 누리과정지원, <https://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ClsgPage.do>, 검색일자: 2023. 6. 26.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 이후)」,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2, 검색일자: 2023. 6. 17.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요금표」, <http://www.citygas.or.kr/index.jsp>, 검색일자:

2023. 4. 25.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뷰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동향,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통합지수,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 검색일자: 2023. 4. 23.

_____,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 검색일자: 2023. 6. 21.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 「국내석유통계」, <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검색일자: 2023. 4. 25.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https://www.price.go.kr/tprice/portal/main/main.do>, 검색일자: 2023. 5. 1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1.2.2.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_____, 「2.1.7.2.3.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_____, 「4.2.1. 소비자물가지수」,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6. 30.

_____, 「8.3.7. 제조업 평균가동률」,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_____, 「8.6.9. 실업급여수급실적」,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3. 10. 1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구매자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_____,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기초가격 기본부문, 한국은행 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13~15차 연도 조사 원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제공, 제공일: 2023. 4. 29.

_____, 「재정패널조사」 통합코드북, 엑셀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제공, 제공일: 2023. 4. 29.

e-나라지표, 「추경편성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6, 검색일자: 2023. 10. 10.

■ 저자약력

오종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세 · 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 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27일 인쇄

2023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I S B N 979-11-6655-263-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